단기과제 2017-01

단기연구과제 I

유호선 | 김헌수 | 이재은 | 정인영 | 김아람 | 김혜진 | 유현경

NPS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단기과제 2017-01

단기연구과제 I

유호선 | 김헌수 | 이재은 | 정인영 | 김아람 | 김혜진 | 유현경

NPS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CONTENTS

국민연금연구원•단기과제 I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제한 검토 ---- 01

유호선

외국인에 대한 반환일시금제도 개선 방안 검토 ---- 51

김헌수 | 이재은

소재불명자 등에 대한 지급정지제도 개선방안 검토 ---- 101

정인영 | 김아람

사망일시금 지급액 산출기준의 적정성 ---- 151

김혜진 | 유현경

단기과제 2017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제한 검토

2017. 06

유호선

NPS 국민연금연구원

목 차

Ⅰ. 서 론 ····· 5

Ⅱ. 공적연금에서 유족연금의 의의 및 특성 ····· 6

Ⅲ.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현황 및 수급조건에서의 문제 ····· 13
1. 유족연금제도의 현황 ····· 13
2. 유족연금 수급조건에서의 문제 ····· 18

Ⅳ. 공무원연금의 유족연금 유족범위 및 수급조건 ····· 20
1. 공무원연금제도 개요 ····· 20
2. 공무원연금의 유족연금 ····· 21

Ⅴ. 주요 선진국들의 유족연금 유족범위 및 수급조건 ····· 24
1. 스위스의 유족연금제도 ····· 24
2. 프랑스의 유족연금제도 ····· 28
3. 독일의 유족연금제도 ····· 33
4. 미국의 유족연금제도 ····· 38
5. 일본의 유족연금제도 (후생연금) ····· 42
6. 주요 선진국의 유족연금제도로부터의 함의 ····· 43

Ⅵ.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유족범위 및 수급조건 개선방안 ····· 44
1. 유족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규정 ····· 44
2. 유족범위에 이혼한 배우자 추가 ····· 45

참고문헌 ····· 47

표 목차

〈표 Ⅱ- 1〉 생계유지 대상자별 인정기준 ····· 16
〈표 Ⅱ-2〉 유족연금액 산정기준 ····· 17
〈표 Ⅳ-1〉 사망연령에 따른 백분율 할증 ····· 27
〈표 Ⅳ-2〉 프랑스의 노령연금 급여산식 ····· 30
〈표 Ⅳ-3〉 프랑스의 유족연금 급여산식 ····· 31
〈표 Ⅳ-4〉 독일 유족 배우자 연령조건의 상향조정 계획안 ····· 35
〈독일의 노령연금 급여산식〉 ····· 36
〈독일의 유족연금 급여산식〉 ····· 37
〈표 Ⅳ-5〉 출생연도별 유족연금액 수준 비교 ····· 41

Ⅰ. 서 론

○ 현재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를 최우선 순위 유족으로 적용하고 있음

– 유족연금의 유족 범위 : 배우자, 자녀(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손자녀(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조부모(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중 최우선 순위의 유족

○ 따라서 오랜 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다 사망 전 이혼한 경우는 유족연금의 유족 범위에서 배제됨

○ 반면,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을 위하여, 악의적인 의도로 혹은 협의하에, 국민연금 가입자(혹은 수급자)의 생애 마지막에 동거 혹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유족연금의 유족범위 및 수급조건 중 위와 같이 제기되고 있는 형평성 및 타당성에 초점을 맞추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그러나 본 연구에서 유족의 범위는 이혼한 전 배우자를 유족의 범위에 포함할지 여부이며, 또한

– 유족연금의 수급조건은 일정기간의 혼인 기간을 유족연금 수급조건에 포함할지 여부에 한정하여 살펴볼 것임

○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선, 유족연금의 의의 및 특성을 검토한 후,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 및 해외사례를 살펴본 후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임

Ⅱ. 공적연금에서 유족연금의 의의 및 특성

1. 공적연금에서 유족연금의 의의 및 특성

○ 사회보장의 개념은 국가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사회보장은 한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령, 질병, 사망, 그리고 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을 국가에 의한 사회제도를 통하여 보장해야한다는 것임

○ 이러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유족연금은 사회보험의 연금제도에 포함되는 제도로써, 가구주의 사망 시 남겨진 유족의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러한 유족연금의 의의에 관하여 언급한 대표적인 학자로는 Rejda (1994)와 James (2009)가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유족연금의 의의

○ Rejda (1994)는 「사회보험과 경제적 보장(Social Insurance and Economic Security)」에서 경제적 보장을 야기하는 경제적 불안정의 본질 네 가지와 그 원인 여덟 가지를 제시하고 있음

○ 이 중 경제적 불안정(economic insecurity)의 네 가지 본질은 소득의 상실, 질병 등에 의한 추가지출, 최저생계비 이하의 불충분한 소득, 그리고 만성적 실업 등으로 인한 소득의 불확실성임

○ Rejda (1994)에 의하면, 이러한 경제적 불안정을 야기하는 여덟 가지 원인 중 첫 번째 원인은 가구주의 조기 사망임.

– 즉, 남성 생계부양자/여성 전업주부 가구에서 생계부양자인 남성의

조기사망은 부양해야 할 가족들에게 소득의 상실 혹은 불충분한 소득을 야기하여 빈곤의 위험에 처하게 함

○ 이와 같이 Rejda가 처음에 언급한 가구주의 조기 사망은 연금제도에서 유족연금을 통하여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음

– 연금제도가 보편화된 20세기 중반까지 지배적인 가족형태는 남성 생계부양자/여성 전업주부의 유형이었으며, 이 때 남성 생계부양자의 조기 사망은 남겨진 유족 배우자와 자녀의 소득상실로 빈곤을 야기하는 큰 사회적 위험이었음

– 특히, 가구주가 오랜 기간의 투병생활 후 사망하게 된다면, 질병의 치료를 위한 추가 비용의 지출로 이미 빈곤하게 된 후 가구주의 사망을 경험하게 될 것임

– 연금제도는 이러한 경우 유족연금을 제공함으로써 남겨진 유족들의 소득을 보장하고 있음

○ 그렇다면 이러한 유족연금을 왜 사회보험에서 보장해야 하는가?[1)]

1)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Rejda, 1994). Rejda는 여섯 가지의 공통점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두 가지 보험은 모두 위험의 이전(risk transfer)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의 공동 분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둘째, 두 가지 보험은 적용범위, 급여, 그리고 재정에 관한 모든 조건을 구체적이고 완전하게 적시하고 있다. 셋째, 두 보험은 모두 급여의 수급조건과 급여수준에 관한 정확한 수리적 계산을 필요로 한다. 넷째, 두 보험은 프로그램의 비용을 충족시키는 데 충분한 기여(contribution)와 보험료 지불(payment of premiums)을 필요로 한다. 다섯째, 드러난 욕구에 기초하지 않고 사전에 결정된 급여를 제공한다. 여섯째, 전체 사회에 경제적 안정을 제공한다.
반면,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사회보험	민영보험
강제 가입	임의 가입
최저수준의 소득보장	개인의 지불능력에 따른 보장
사회적 적절성(social adequacy)의 강조 사회복지적 요소	개인적 형평성의 강조 보험 요소
법에 규정된 급여(법 규정의 변경 가능)	계약에 의한 급여

경제학적 시각에서 살펴본 사회보험으로서 유족연금의 의의는 시장 실패의 관점에서 두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음(James, 2009).

○ 첫째,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를 추구하는 시장에서 수요측면의 실패에서 야기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함임

– 자발적 시장에서 개인들의 근시안적 특성으로 인한 수요측면에서의 실패는 강제가입인 사회보험으로서의 유족연금의 의의 및 그 필요성을 잘 반영하고 있음

• 즉, 남성생계부양자/여성전업주부의 가족모델이 지배적인 사회라는 가정 하에서[2], 남성생계부양자의 사망은 남겨진 유족의 소득 상실을 야기하게 됨

• 특히, 사망한 남성 생계부양자가 젊은 경우, 남겨진 유족 배우자 역시 젊으며 지속적인 돌봄을 필요로 하는 어린 자녀를 양육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임

• 이 경우 유족 배우자는 젊은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돌보아야 할 어린 자녀로 경제활동이 어려울 수 있으며, 소득이 상실된 상황에서 어린 자녀에게 소요되는 비용 또한 점차 증가하여 생계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음

사회보험	민영보험
정부 독점	자유 경쟁
지출의 예상이 어려움 (사회 경제적 변화에 영향을 받기 때문)	지출의 예상이 가능함
완전적립방식 불필요	완전적립방식 필요
서명의 불필요	서명 필요
보험료와 급여수준 등에 대한 이견 존재	보험료와 급여수준 등에 대한 이견 없음
정부에 의한 투자 결정	민간에 의한 투자 결정
인플레이션에 적절한 대응	인플레이션에 취약

2) 맞벌이 부부의 가족형태에서도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배우자의 사망은 가족의 소득감소에 따른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아직까지 여성의 소득수준은 남성의 소득수준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남성 배우자의 사망은 가족의 심각한 소득감소를 야기하고 있다.

- 또한 사망한 남성생계부양자가 중년 이상인 경우, 비록 자녀들이 성장하였을지라도 현재의 자녀들은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지 않는 추세이므로 자녀에게 부모 부양의 의무를 지울 수 없는 것이 현실임. 또한 50대 이상으로 노동시장의 참여 경험이 없는 유족 배우자는 경제적으로 남성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이고 새롭게 경제활동을 시작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장벽이 있을 수 있음
- 더불어 여성들의 예상 수명이 일반적으로 남성에 비하여 길기 때문에 남성생계부양자의 사망은 유족 배우자들의 장기간의 소득 상실을 야기하여 노후 빈곤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 누구나 이러한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근시안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은 자발적으로 생명보험의 가입을 하지 않으려 할 것임

○ 둘째, 공급자들의 자유경쟁을 추구하는 시장에서 공급측면의 실패를 야기하는 역선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임 (James 2009 : 5)

– 즉, 시장에서의 경제주체들이 불완전한 정보에 기초하여 행동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써, 사회보험이 아닌 민간 보험에 유족연금을 맡겨둔다면, 위험이 높은 개인들만 생명보험에 가입하려할 것임

– 따라서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보험회사는 보험에 가입한 고위험의 가입자들로 인하여 손해를 보게 되고, 이는 이익을 추구하는 보험회사들이 보험료를 전체적인 인상할 것임

– 따라서 사람들은 예상할 수 없는 위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료가 높은 민간 보험에 가입하려하지 않을 것임

– 즉, 결과적으로 실제로 보다 많은 보장을 받아야할 저소득층의 고위험군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게 되며,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고소득층의 저위험군은 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게 되고 평균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 일부만 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하게 될 것임

– 그 결과 생계부양자가 조기 사망하는 위험에 직면한 개인들은 빈곤하게 되어 공공부조의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임

□ 유족연금의 특성

○ 노령연금과 구별되는 유족연금의 특성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 첫째, 연금의 가입자와 급여의 수급자가 다름. 따라서 유족연금의 수급조건은 사망한 가입자의 조건과 유족인 수급자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수급이 가능하므로 그 수급조건이 타 급여에 비하여 복잡함

– 둘째, 기여와 급여의 연계 강화 보다 사회보험의 특성인 사회적 적절성을 보다 강조해야하는 특성이 있음. 유족연금은 연금의 가입자와 급여의 수급자가 서로 다르며, 유족연금의 목적이 가입자 혹은 수급자의 사망 시 남겨진 유족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이므로 일반적으로 유족연금은 보험료의 기여 보다 급여가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일반적으로 유족연금 내에서는 기여와 급여의 연계를 보다 강화하거나, 민영보험에서와 같이 개인적 차원에서 수지상등의 원칙을 강화할 수 없는 급여임

• 즉, 젊은 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일반적으로 유족연금은 40년 이상 보험료를 기여한 완전가입을 가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함.

• 이는 조기 사망이라는 사회적 위험 상황에서 유족들의 소득 상실 문제를 완화하려는 유족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임

• 즉, 전체 가입자들의 위험을 공유한 후, 고위험군인 전업주부로 어린 자녀를 돌보는 유족배우자의 소득 보장을 위한 책임을 함께 하려는 의도임

- 또한 노령연금을 수급하던 수급자의 사망으로 노년의 유족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역시, 일반적으로 그 유족 배우자는 여성이며 여성의 기대여명은 남성의 기대 여명 보다 길기 때문에 민영연금과 같이 개인적 차원에서 수지상등의 원칙을 고수할 수 없음
- 따라서 유족연금은 기여와 급여의 연계 강화보다 가족들 간의 교차보조(cross-subsidies)로[3] 사회복지 차원에서 사회적 적절성을 보다 강화해야하는 급여라고 판단됨
- 이렇게 유족연금은 노령연금에 비하여 위험의 공동분담(risk-sharing)과 사회적 적절성을 보다 더 강화해야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급여임.

– 셋째, 유족연금은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 등 타 급여에 비하여 환경의 변화에 보다 많은 영향을 받는 급여임

- 즉, 남성생계부양자/ 여성전업주부의 가족형태가 지배적이었던 시기에 도입된 유족연금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맞벌이 가정이 점차 증가하는 오늘날 많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음
-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가장 높고 아동양육을 위한 사회서비스의 제도화 역시 가장 잘 되어 있는 북유럽국가들의 경우 유족연금은 더 이상 필요 없는 제도가 되었음[4]

3) 동일 산업 내에서 한 부문의 결손을 다른 부문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내부보조(internal subsidization)라고도 한다. 예를 들면, 시내전화 사용자에게 더 값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외전화 사용자에게 평균비용보다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그 수익으로 시내전화 부문의 결손을 충당하는 것과 같다. 포스너(Richard Posner)는 정부규제의 과세(taxation by regulation) 이론에서 정부규제는 이러한 교차보조를 통해 보조가 없이는 서비스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불충분한 부문에 서비스 공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익을 실현하는 기능을 한다고 주장한다.

4) 남녀 간 소득 격차가 크지 않은 맞벌이 부부 가족의 경우 부부 중 한 명의 사망은 남은 가족들의 소득 상실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감소를 야기하게 된다. 그러나 가구원의 사망은 전체 가구의 소비 수준 역시 감소시키므로 심각한

- 즉, 여성의 경제활동 수준이 일정수준으로 높으며 연금제도가 이미 성숙한 유럽 국가들은 연금의 재정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족연금의 축소 혹은 개선을 추구하고 있음
-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 수준이 이미 높은 국가들은 유족연금을 단기지급으로 개선하였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수준이 중간 정도인 국가들은 유족연금 대신 연금의 기여분할(contribution splitting) 혹은 부부형 연금(joint annuities)으로 개선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함

○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성의 경제활동 수준이 낮은 국가군에 속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은 1999년 전 국민으로 확대되어 아직 성숙하지 않은 제도임. 또한 현재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급여수준은 매우 낮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급여 수준의 적정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 유럽 국가들과 같이 유족연금의 급여수준을 더욱 낮추거나 제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유족연금제도를 보다 선진화시켜서 대상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현재 유족연금을 악용하는 사례들을 차단하기 위한 급여수급 조건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유족연금의 급여 적정성 개선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사회적 위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배적인 가족형태가 맞벌이 가구인 북유럽국가들은 변화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족연금을 1-2년 정도만 단기로 지급하고 있다.

Ⅲ.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현황 및 수급조건에서의 문제

1. 유족연금제도의 현황

가. 유족범위

□ 유족범위

○ 유족범위에서 우선순위는 신분요건, 연령과 장애요건, 그리고 생계유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배우자, 자녀(25세 미만)[5], 부모(연금 수급연령 이상), 손자녀(19세 미만), 그리고 조부모(연금 수급연령 이상)의 순서

○ 위의 유족범위에서 최우선 순위자에게 우선 지급하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연금액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 유족연금 수급 대상자인 유족에 관한 조건에서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류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부모, 손자녀, 그리고 조부모 등의 경우는 국민연금 시행령 제 47조와 제 53조에 의한 생계유지조건을 함께 준용

– 즉,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주거는 달리하나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리고 생계비를 지원한 경우는 생계유지 조건에 부합

5)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

나. 수급조건

□ 사망한 가입자 조건

○ 사망한 가입자 조건은 다음과 같음[6)]

① 노령연금 수급권자

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③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④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제외

⑤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 또한 연금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에 유족연금의 지급이 제한되고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음

- 보험료 미납에 따른 유족연금의 지급제한은 지급사유 발생일이 2000.1.1 이후인 경우에 한정하며,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당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 당연히 유족연금의 지급이 제한됨. 또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당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그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7)]을 합산한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역시 유족연금의 지급이 제한됨. 그러나 이 경우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8)]

6)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

7)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에서 다음의 기간은 제외한다. 즉, 초진일(장애연금) 또는 사망(유족연금) 당시를 기준으로 납부기한으로부터 1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은 제외한다. 또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기간 역시 제외한다.

8) 또한 노령연금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사망 시의

□ 유족인 수급자 조건

○ 유족의 수급요건은 신분요건, 연령(혹은 장애)조건, 그리고 생계유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신분조건

– 신분조건 중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이며, 위의 순서 중 최우선 순위자를 우선으로 지급. 그러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연금액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

–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포함하나,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자녀는 양자 및 태아를 인정하나, 계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음

– 부모는 친부모 및 양부모를 포함하고 배우자의 부모(친부모 및 양부모)도 포함

– 손자녀는 친손자녀 및 외손자녀를 포함하며, 조부모는 외조부모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도 포함

○ 연령조건

– 자녀인 유족은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당시 25세[9] 미만이어야 하며, 손자녀인 유족은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당시 19세 미만이어야 함. 부모 및 조부모는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당시 노령연금수급연령 이상이어야 함 (2017년 현재 61세)

○ 생계유지조건

–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는 가족관계증명 서류만으로 인정

– 부모, 손자녀, 그리고 조부모 등의 경우는 국민연금 시행령 제 47조와 제 53조에 의한 생계유지조건을 함께 준용. 즉,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주거는 달리하나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리고 생계비를 지원한 경우는 생계유지 조건에 부합

유족연금은 미납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9)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

〈표 Ⅱ- 1〉 생계유지 대상자별 인정기준

(제38조, 제39조, 제47조, 제53조 관련)

대상자	인정기준	입증자료
배우자 · 자녀	○ 인정. 다만, 가출 · 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류 ○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류 - 재학증명서 등 ○ 특수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장애인 증명서 등
부모	○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 인정	
	○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1. 당사자의 학업 · 취업 · 요양 · 사업 · 주거의 형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	
손자녀	○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 손자녀의 부모가 없거나, 있더라도 특수한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	
	○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1. 당사자의 학업 · 취업 · 요양 · 사업 · 주거의 형편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고, 손자녀의 부모가 없거나, 있더라도 특수한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	
조부모	○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 조부모와 주거를 같이하는 조부모의 자녀가 없거나, 있더라도 특수한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	
	○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1. 당사자의 학업 · 취업 · 요양 · 사업 · 주거의 형편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주거를 달리 하고 조부모와 주거를 같이 하는 조부모의 자녀가 없거나, 있더라도 특수한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	

자료 : 국민연금법

비고 : 1. "부 또는 모의 배우자"란 계부 또는 계모를 말한다.

2. "주거의 형편"이란 가옥의 협소 등으로 사실상 주거를 같이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3. “특수한 사유”란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나. 단기하사 이하로 군에 입대한 경우
   다. 교도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라. 행방불명의 경우
   마.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이하의 학교 재학생인 경우
   바. 60세 이상이거나 19세 미만인 경우
   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다. 급여수준

□ 유족연금 지급률

○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40%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50%
- 가입기간이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의 60%

○ 2016년 12월 현재 유족연금의 평균 급여액은 263,100원이며, 최고액은 933,450원임

〈표 Ⅱ-2〉 유족연금액 산정기준

가입기간	유족연금액
1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 연금액
10년 이상 ~ 2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 연금액
20년 이상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 연금액

○ 또한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자녀와 손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액의 경우 그 액수가 적으면 사망일시금과의 차액을 지급
- 즉, 25세 미만의 자녀 또는 19세 미만의 손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25세 혹은 19세 도달 월까지 지급받은 유족연금 총액[10]과 사망일시금액을 비교하여 유족연금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일시에 지급

- 그러나 25세 혹은 19세(손자녀) 도달 전 다른 사유로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하며 25세 혹은 19세에 도달하였으나 장애 2급 이상이어서 수급권이 소멸되지 않는 경우에도 지급하지 아니함

2. 유족연금 수급조건에서의 문제

○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본 연구에서는 유족연금의 유족 범위 중 이혼한 전 배우자를 유족의 범위에 포함할지 여부 및 일정기간의 혼인 기간을 유족연금 수급조건에 포함할지 여부에 한정하여 살펴볼 것임

가. 유족연금 유족범위에서의 형평성

○ 현행 국민연금에서 유족연금의 범위는 신분요건, 연령과 장애요건, 그리고 생계유지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배우자, 자녀(25세 미만)[11], 부모(연금 수급연령 이상), 손자녀(19세 미만), 그리고 조부모(연금 수급연령 이상)의 순서이며, 위의 유족 범위 중 최 우선자에게 지급

○ 따라서 오랜 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다 사망 전 이혼한 경우는 유족연금의 유족 범위에서 배제됨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금선진국들은 유족연금의 유족 범위에 이혼한 배우자를 포함하기도 하며, 분할연금으로 이를 대체하고 있기도 함

10) 부양가족연금액 및 물가상승률을 포함한다.
11)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

나. 유족연금 수급조건에서의 타당성

○ 또한 현행 유족연금은 신분, 연령, 그리고 생계유지조건을 수급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혼인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음

○ 따라서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을 위하여, 악의적인 의도로 혹은 협의하에, 국민연금 가입자(혹은 수급자)의 생애 마지막에 동거 혹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선진 외국에서는 유족연금의 수급 조건에 일정 기간의 혼인기간을 규정하고 있기도 함

Ⅳ. 공무원연금의 유족연금 유족범위 및 수급조건

1. 공무원연금제도 개요

가. 목적 및 재정

○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애 발생 시 적절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공무원의 노령·장애·사망 등 소득상실사유 발생 시에 적절한 급여를 실시할 뿐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종합사회복지기능을 수행하고 퇴직연금급여 이외에 재해보상급여, 부조급여, 퇴직수당 및 후생복지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종합복지제도임

○ 재정

– 공무원연금의 비용부담은 기여제 방식으로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

– 즉, 공무원이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8%~9%를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수예산의 8%~9%를 부담금으로 납부

– 다만, 사용자 책임급여인 재해보상급여 및 퇴직수당과 부조적 성격의 급여인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매년 부담

나. 급여종류

○ 공무원연금 급여는 크게 단기급여와 장기급여로 나누어짐

– 단기급여는 공무상요양비·재해부조금·사망조위금 등 3종이 있고,

- 장기급여로는 퇴직급여 4종, 유족급여 6종, 장해급여 2종 순직유족급여 2종 및 퇴직수당 등 15종이 있음
  - 퇴직급여 : 퇴직연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 유족급여 : 유족연금 ,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 특별부가금, 유족일시금, 유족보상금
  - 장해급여 :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 순직유족급여 :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보상금

2. 공무원연금의 유족연금

가. 급여종류 및 유족범위

□ 급여종류

○ 유족연금
○ 유족연금부가금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유족연금일시금
○ 유족일시금

□ 유족의 범위

○ 공무원 또는 퇴직(장해)연금수급자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자로,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및 조부모임
○ 배우자
- 공무원 재직 시 혼인한 배우자 (사실혼 포함)
- 단,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퇴직(장해)연금수급자의 경우 연금수급 중 혼인한 배우자도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사실혼) 했다면 유족연금 수급 가능

○ 자녀 : 만 19세 미만이거나 만 19세 이상인 자녀 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장해 1~7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 손자녀 : 만 19세 미만이거나 만 19세 이상인 손자녀 중 부(父)가없거나, 부(父)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장해 1~7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 부모 및 조부모 : 친부모 및 친조부모, 양부모 및 양조부모도 가능(퇴직일 이후 입양된 부모 및 조부모 제외)

※ 만 19세 미만 손자녀 및 조부모는 사망한 공무원 또는 퇴직(장해)연금수급자가 실제 부양한 경우 유족으로 인정

□ 유족의 우선 순위

○ 직계비속이 직계존속보다 우선
○ 배우자는 최우선 순위 유족과 동순위이며, 동순위 유족이 없을 경우 단독으로 유족연금 승계
○ 동순위 유족이 다수인 경우 등분하여 유족연금 지급

나. 급여 수급조건

○ 유족연금
–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때, 혹은 퇴직연금이나 장해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때
○ 유족연금부가금
–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여 유족연금을 청구한 때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퇴직연금수급권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망한 때
○ 유족연금일시금
–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여 유족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퇴직연금일시금”과 동일한 금액 지급

○ 유족일시금

–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이 사망한 때, ‘퇴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 지급

다. 급여수준

○ 유족연금의 급여수준은 (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액의 60%임

구 분	‘16년 이후 산식
유족연금	(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액 × 60/100
유족일시금	**○ 5년미만** (기준소득월액×총재직연수×975/1,000)×이후기간/총재직기간
	○ 5년이상 (기준소득월액×총재직연수×975/1,000)+(기준소득월액×총재직연수×5년초과재직연수×65/10,000)×(이후기간/총재직연수)
유족연금일시금	((기준소득월액×총재직연수×975/1000)+(기준소득월액×총재직연수×5년초과재직연수×65/10,000))×(이후기간/총재직연수)
유족연금부가금	퇴직연금일시금의 1/4
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당시 퇴직연금일시금×1/4×(36-퇴직연금수급월수)×1/36

Ⅴ. 주요 선진국들의 유족연금 유족범위 및 수급조건

1. 스위스의 유족연금제도

가. 급여종류 및 유족범위

○ 스위스의 연금체계는 일반연금(AHS/AVS)인 1층의 공적연금과 2층의 퇴직연금이 의무가입으로 되어 있으며, 1층의 공적연금과 2층의 퇴직연금에서 모두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음. 본 절에서는 1층 공적연금의 유족연금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임

○ 스위스 공적연금에서 유족연금의 급여 종류는 유족남편연금(widowers' pension), 유족아내연금(widows' pension), 유족자녀연금(orphans' pension)으로 구성

○ 이러한 유족연금의 유족범위는 유족남편연금(widowers' pension)과 유족아내연금(widows' pension) 모두 배우자와 이혼한 전 배우자 그리고 사실혼까지 포함. 또한 동성간의 인정된 혼인관계를(civil partnership) 맺고 있는 배우자도 포함. 유족자녀연금의 유족범위는 자녀임

나. 수급조건

□ 유족남편연금(widowers' pension)

○ 유족남편연금의 수급조건 중 사망한 가입자의 조건은 1년의 가입기간 조건만 필요

– 1년의 가입기간은 다음의 세 가지 경우를 모두 포함

– 첫째, 사망한 가입자가 실제로 보험금을 납입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둘째, 사망한 배우자가 보험에 가입했고 그 배우자가 최소 1년간 최저분담금액의 두 배를 납부한 경우
- 셋째, 사망한 가입자가 1년 이상 양육 등의 크레딧을 받은 경우[12)]

○ 그리고 유족인 남편(혹은 전 남편)의 수급조건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야 함

□ 유족아내연금(widows' pension)

○ 유족아내연금의 수급조건 중 사망한 가입자의 조건은 유족남편연금의 수급조건과 동일하게 1년의 가입기간 조건만 갖추면 됨

- 첫째, 사망한 가입자가 실제로 보험금을 납입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둘째, 사망한 배우자가 연금에 가입했고 그 배우자가 최소 1년간 최저분담금액의 두 배를 납부한 경우
- 셋째, 사망한 가입자가 1년 이상 양육 등의 크레딧을 받은 경우임.

○ 그리고 유족인 아내의 수급조건은 자녀가 있거나(연령불문) 혹은, 자녀가 없는 경우 배우자 사망 시 45세 이상이고 최소 5년 이상의 결혼 생활을 유지했어야 하는 조건이 있음

○ 특히, 유족연금 수급자가 이혼한 아내인 경우 좀 더 엄격한 수급조건을 요구

- 즉, 이혼한 아내가 전 남편 사망 시 유족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수급조건은 다음의 세 가지 조건들 중 하나를 충족해야 가능
- 첫째, 자녀가 있고 10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했었거나 둘째, 이혼 시점에 45세 이상이고 10년 이상의 혼인 관계를 유지했었거나, 셋째, 이혼한 아내가 45세가 된 이후 가장 어린 자녀가 18세에 도달하는 경우
- 그리고 이혼한 아내가 위의 수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장 어린 자녀가 18세에 도달할 때 까지만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음

12) 2014, Hinterlassenenrenten der AHV
https://www.ahv-iv.ch/de/Startseite/lang/fr

□ 유족자녀연금(orphans' pension)

○ 유족자녀연금은 부(父) 혹은 모(母) 사망 시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임

○ 이 경우 자녀는 18세 이하이어야 하며, 학생 혹은 직업훈련생(apprenticeship)의 경우 25세까지 지급이 가능

○ 또한 부모 양친 모두 사망한 경우 편친 사망 시 보다 추가된 연금을 받을 수 있음

다. 급여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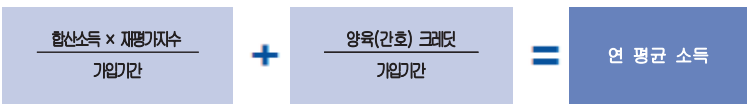
□ 유족남편연금 및 유족아내연금

○ 유족남편연금 및 유족아내연금의 급여액은 사망한 가입자 노령연금액[13]의 80%임

13) 노령연금 수급권 및 연금액 산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연금액은 소득과 가입기간에 기초해 산정되며, 최대 가입기간을 충족한 경우, 연금액은 연 평균 소득에 의하여 결정된다. (최대 산입 가입기간은 남성 44년, 여성은 43년. 미충족시 감액된 연금 지급) 연 평균 소득은 가입기간 중 생애 합산 소득을 재평가지수(revaluation factor)를 이용, 물가와 임금 상승 수준에 맞춰 조정 후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이다. 이는 가입자가 최초 근로를 개시한 연도의 재평가지수를 이용하는 것이다. 또한 16세 미만 자녀 양육 또는 가까운 친척을 돌보는 기간은 크레딧으로 인정되며, 이는 가입기간으로 나눈 후 연평균 소득에 합산된다. (양육크레딧은 자녀의 수와는 상관없이, 자녀를 양육한 기간을 인정해주는 것이며, 복수의 자녀를 동시에 양육한 기간은 중복 배제하며, 가장 어린 자녀가 16세가 되는 해는 인정하고 있다). 크렛딧은 최저 연금액의 3배(3 × 14,040 프랑 = 42,120 프랑, 2013년 기준)에 해당된다.

※ 재평가지수와 연평균 소득에 기초한 연금액은 〈재평가지수 및 연평균 소득에 기초한 연금월액표〉를 가지고 결정

〈연평균 소득 산정식〉



그리고 연금액은 하이브리드 지수에 기초하여 조정된다. 이때 하이브리드 지수는 연방 통계청이 산정하는 명목 임금지수 50%와 스위스 소비자물가지수 50%를 이용하여 산정하고, 연금은 매 2년 주기로, 1월 1일 시점으로 조정된다.

○ 또한 이 경우 최소 급여액과 최대 급여액이 있으며, 2014년 현재 최소 급여액은 CHF 936이고 최대 급여액 CHF 1,872임

○ 또한 사망자가 전체 분담금기간을 채운 경우, 다시 말해서 만 20세 이후 첫 1월 1일부터 사망시점까지 전체 분담금기간을 채운 경우 유족연금은 전액연금 (연금등급 44)을 받음

○ 그리고 사망한 가입자의 사망 시 연령이 만 45세 이하인 경우 그 평균 소득수입은 다음과 같이 연령에 따른 백분율 할증을 받게 됨

〈표 Ⅳ-1〉 사망연령에 따른 백분율 할증

사망 연령		평균소득의 백분율 할증
만 ~세 이후	만 ~세 이전	
	23	100
23	24	90
24	25	80
25	26	70
26	27	60
27	28	50
28	30	40
30	32	30
32	35	20
35	39	10
39	45	5

※ 스위스 정부는 두 가지 종류의 재원을 통하여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재정을 지원

① 첫째, 스위스 정부는 매년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지출의 19.55%를 국고로 보충

② 두 번째, 매년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거둬들인 부가가치세의 13.3%를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재원을 위하여 사용

2. 프랑스의 유족연금제도

가. 급여종류 및 유족범위

□ 급여종류

○ 프랑스의 연금체계는 일반연금(RGAVTS)인 1층과 퇴직연금[14](ARRCO & AGIRC)인 2층의 연금이 의무(혹은 유사 의무)가입으로 되어 있으며, 1층의 일반연금과 2층의 퇴직연금 모두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음. 본 절에서는 1층 공적연금의 유족연금을 중심으로 살펴 볼 것임

○ 프랑스의 1층 공적연금에 있는 유족관련 급여들은 55세 이상 유족을 위한 유족연금(pension de réversion)[15], 55세 이하이고 장애가 있는 유족을 위한 유족연금(pension d'invalidité de veuf ou de veuve), 그리고 55세 이상이고 장애가 있는 유족을 위한 노령연금 (pension de vieillesse de veuf ou de veuve)[16]으로 다소 복잡하게 구성

○ 또한 사망의 발생 시 지급하는 일시금(death grant ; capital deces)이 있음. 특히, 프랑스의 일반연금에서는 유족자녀연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으나,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당 정액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음. 또한 가족급여에서 유족자녀연금과 유사한 추가 급여(allocation de soutien familial)를 지급함

14) 프랑스의 퇴직연금은 의무가입이며 직업에 따라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 진다. 즉, 육체노동자를 위한 ARRCO과 사무직 근로자를 위한 AGIRC으로 나뉘어져 있다.

15) pension de réversion은 55세 이상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연금이었으나, 2011년부터 연령 제한이 폐지될 예정이었으며, 프랑스의 유족연금 급여체계는 수급자의 소득조사(최저임금 미만)를 주요 기준으로 단순화 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후 연금법의 재개정으로 유족연금의 수급연령 기준은 다시 55세 이상으로 재조정되었다.

16) 장애가 있는 유족을 위한 유족연금(pension d'invalidité de veuf ou de veuve)은 수급자가 55세가 되면 자동으로 55세 이상이고 장애가 있는 유족을 위한 노령연금 (pension de vieillesse de veuf ou de veuve)으로 수급권이 전환된다.

□ 유족범위

○ 프랑스의 일반연금(RGAVTS)에서 유족의 범위는 55세 이상 유족 배우자와 55세 이상의 이혼한 배우자로 구분

– 즉, 합법적인 결혼관계를 전제로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동거인 혹은 동성 결혼의 경우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없음

나. 수급조건

□ 유족연금(pension de réversion)

○ 사망한 가입자의 조건

– 노령연금 혹은 장애연금의 수급자 혹은 사망 시 노령연금[17] 혹은 장애연금의 급여 수급조건을 충족했어야 함

○ 유족 배우자의 수급조건

– 합법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과거에 유지했으며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자산조사를 거쳐서 일정 수준 이하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함

○ 이러한 프랑스 유족연금에서 그 수급조건은 연금의 재정안정화를 목적으로 개선

– 즉, 2011년 1월부터 폐지예정이었던 55세 이상인 연령조건을 다시 지속하는 것으로 개혁하였을 뿐 아니라, 유족연금의 수급 여부는 거의 자산조사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개선

17) 프랑스 일반연금에서 노령연금의 수급조건은 최소 1쿼터 이상의 기여를 했어야 하는 것이다. 1쿼터 이상의 기여는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수준으로 150시간 이상 근로를 했을 경우 충족할 수 있다. 2014년 현재 프랑스 최저임금 기준은 €1,429.50이다. 즉, €1,429.50는 150시간 × €9.53(최저 시급)으로 계산된다.

□ 장애가 있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연금 (pension d'invalidité de veuf ou de veuve)

○ 사망한 가입자의 조건

– 노령연금 혹은 장애연금의 수급자 혹은 사망 시 노령연금 혹은 장애연금의 급여 수급조건을 충족

○ 유족 배우자의 수급조건

– 첫째, 연령은 55세 미만이어야 하며,

– 둘째, 근로능력을 2/3 이상 상실해야 함

○ 본 급여는 장애가 있는 유족 배우자가 수급할 수 있으며 55세 이상부터는 장애 있는 유족의 노령연금(pension de vieillesse de veuf ou de veuve)으로 급여가 대체

다. 급여수준

□ 유족연금(pension de réversion)

○ 실제 혹은 예상 노령연금의 54%

〈표 Ⅳ-2〉 프랑스의 노령연금 급여산식

노령연금 급여식 = 노령연금 계수 × 기여기간 × 평균 임금
※ 노령연금 계수 (Coeff) –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연령과 보험료의 기여 기간에 비례하는 계수임. 최근 개정법에 의하면 1955년~1957년 코호트는 약 42년 (166쿼터) 동안 모두 연금에 가입한 경우, 노령연금 계수는 최대치인 50%가 됨. 또한 노령연금을 법적 수급연령 보다 일찍 수급하는 경우 일정비율씩 감액되며, 늦게 수급할수록 일정 비율씩 증액됨
※ 기여기간 – (실제 기여 쿼터)/(완전연금 수급을 위한 기여기간 쿼터)로 계산하며, 완전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기여기간은 1955년~1957년 코호트의 경우 166쿼터임
※ 평균 임금 (SAM) – 보험료를 기여한 기간 중 소득이 가장 많았던 25년간의 소득을 평균하여 계산함 (1947년생 이후 코호트)

〈표 Ⅳ-3〉 프랑스의 유족연금 급여산식

〈노령연금 수급 중 사망〉 ① 유족연금 급여식 = 노령연금 × 54% 〈노령연금 수급 전 사망〉 ② 유족연금 급여식 = 기본 노령연금 (retraite de base) × 54%
※ 기본 노령연금 (retraite de base) = 50% x (기여쿼터/완전연금 수급을 위한 기여기간 쿼터) x 평균임금 (SAM)
※ 사망한 가입자의 연금 가입 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노령연금 계수는 50%로 계산. 그러나 15년 미만인 경우 일정 비율로 감면

- 그러나 사망한 배우자가 여러 번 혼인을 하였다면, 현재 배우자 그리고 이혼한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나누어 수급

○ 2010년 1월부터 유족 배우자의 연령이 완전 노령연금 수급연령(출생 코호트에 따라 65세~67세) 이상인 경우 일정조건 하에서 유족연금의 금액이 최대 11.1%까지 증액되어 지급

○ 그러나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합이 쿼터 당(3개월) €2,557.18을 넘을 경우 일정 수준만큼 감액

○ 또한 유족 배우자의 연령이 완전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지 않고 16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 당 정액(€96.21)이 추가된 급여 수급. 그리고 세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10%의 추가 증액이 이루어짐

□ 장애가 있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연금 (pension d'invalidité de veuf ou de veuve)

○ 실제 혹은 예상 장애연금이나 노령연금의 54%

○ 특히,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 가입기간이 15년(60쿼터) 이상인 경우 최소 유족연금액은 년 €3,403.07(월 €283.58)임. 그러나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 가입기간이 15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위의 최소 유족연금액은 일정 비율로 감액

- 또한 유족연금은 1년에 최대 €10,137.96(월 €844.83) 이상 받을 수 없음. 또한 1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매달 €96.21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

○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프랑스 유족연금 수급조건의 가장 큰 특징은 자산조사임

- 자산조사의 기준액은 싱글 가구인 경우 1년 기준 €19,822.40[18]이고 커플 가구인 경우 1년 기준 €31,715.80임
- 자산조사를 하는 시점은 유족연금을 신청한 때부터 그 이전 3개월의 소득을 평균하며, 만약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유족연금을 신청한 때부터 그 이전 12개월의 소득을 재조사하여 결정

○ 2층의 퇴직연금인 ARRCO과 AGIRC에서도 유족연금을 지급

- ARRCO는 연금 가입 중 혹은 노령연금을 수급하던 중 사망하는 경우 55세 이상의 유족 배우자에게 노령연금의 60%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지급
- 그러나 유족 배우자가 장애가 있거나 부양할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경우 이러한 연령조건은 필요 없음
- AGIRC는 연금 가입 중 혹은 노령연금을 수급하던 중 사망하는 경우 60세 이상의 유족 배우자에게 노령연금의 60%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지급
- 그러나 유족 배우자가 장애가 있거나 부양할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경우 이러한 연령조건은 필요 없음

18) 자산조사의 기준액은 최저임금(시급)의 2,080배로 규정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최저임금(per hour)은 €9.53이다. 이러한 비율은 1인 가구 최저임금의 약 1.3배에 해당하며, 배우자 재산으로부터의 소득이나 2층의 퇴직연금으로부터의 유족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본인의 노령연금은 포함)

※ 유족연금의 재원은 RGAVTS 보험료에서 충당

○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위한 전체 보험료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소득이 월 €3,129 (년 €37,548) 미만까지의 보험료는 15.25%이고 근로자가 6.80% 고용주가 8.45%를 분담

– 소득이 월 €3,129 (년 €37,548) 이상일 경우 1.95%의 보험료를 추가로 기여. 이 경우 근로자는 0.25%를 분담하고 고용주는 1.75%를 분담

○ 또한 유족연금(pension de réversion)의 지출액은 전체 연금 지출의 약 13% (30 billion euros)를 차지[19)]

3. 독일의 유족연금제도

가. 급여종류 및 유족범위

○ 독일의 유족급여 종류는 장기 유족연금(major widow(er)'s pension) 또는 단기 유족연금(minor widow(er)'s pension), 유족자녀연금(Waisenrente) 및 자녀양육연금(Kindererziehung)이 있음

○ 유족범위는 시민권자인 유족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이혼한 배우자, 그리고 자녀(입양자녀, 재혼자녀, 양자자녀 모두 포함)임

19) COR, Assurance Retraite, AGIRC-ARRCO
http://votreargent.lexpress.fr/retraite/retraite-bientot-du-changement-pour-les-pensions-de-reversion_1583410.html

나. 수급조건

□ 사망한 가입자의 조건

○ 사망 당시 가입자 혹은 수급자였거나 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유족인 수급자의 수급조건

○ 장기 유족연금

– 최소 1년간의 결혼생활을 유지했어야 하며,[20]

– 45세 이상 (2012년부터 점차 증가하여, 2029년에 47세까지 상향 조정)이거나, 근로능력이 감소하였거나, 18세 이하 자녀(장애가 있는 자녀의 경우에는 자녀의 연령제한이 없음)를 양육하는 경우

○ 단기 유족연금

– 위의 장기 유족연금 조건 미충족 자

– 최대 24개월 지급

○ 유족자녀연금

– 연금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부모가 사망한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에게 지급되는 급여

– 자녀가 학생 또는 직업교육생인 경우에는 27세까지 수급이 가능. 또한, 연방사회봉사단활동 중인 경우에도 해당기간동안에는 수급이 가능하며, 장애로 근로능력이 없을 경우에도 수급 가능

20) 민법상 배우자 등록(신고)된 최소한의 1년 요건이 필요.

〈표 Ⅳ-4〉 독일 유족 배우자 연령조건의 상향조정 계획안

연금 가입자의 사망연도	상향조정 개월 수	연령 기준	
		년	개월
2012	1	45	1
2013	2	45	2
2014	3	45	3
2015	4	45	4
2016	5	45	5
2017	6	45	6
2018	7	45	7
2019	8	45	8
2020	9	45	9
2021	10	45	10
2022	11	45	11
2023	12	46	0
2024	14	46	2
2025	16	46	4
2026	18	46	6
2027	20	46	8
2028	22	46	10
2029년부터	24	47	0

자료 : Deutsche Rentenversicherung(2014.7), Hinterbliebenrente: Hilfe in schweren Zeiten, 〈Anhebung der Altersgrenze auf 47 Jahre〉(p.10) 인용.

다. 급여수준

○ 장기 유족연금

– 예상 노령연금의 55%

– 2015년 7월 1일 현재, 독일 유족연금의 월평균 급여액은 전체 €439이며, 여성 €450 남성 €315임[21)]

21) Aktuelle Daten 2016

○ 단기 유족연금
- 예상노령연금의 25%
- 수급기간은 최대 24개월

○ 유족자녀연금
- 한 부모 사망 : 예상 노령연금의 10% (양 부모 사망 시 20%)
- 2014년 말 기준, 유족자녀연금의 월평균 급여액은 한 부모 사망 시 유족자녀연금과 양부모 사망 시 유족자녀연금 각각 월평균 €167와 €333임[22)]

※ 재원 : 독일의 국민연금은 '보험료'와 '정부지원금'으로 운영
- 국민연금 전체 수입에서 정부보조금의 비율은 1970년 이후 18~27%로 유지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약 24.7%임

〈독일의 노령연금 급여산식〉

노령연금 급여액 = 개인소득점수(PEP)[23)] × 연금지급률(RA)[24)] × 연금가치 (AR)[25)]
※ 개인소득점수 : 수급자의 보험료 납부이력에 의해 결정, 납입자의 보험료 기준소득이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에 상응할 때 1년 납입 시 1점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음
※ 연금지급률 : 연금종류별로 다른 점수를 받음, 노령연금인 경우 1점, 유족연금 0.55 혹은 0.25 (사망 후 3개월까지는 1), 고액, 저액 고아연금은 0.2/0.1
※ 연금가치 : 평균소득자가 1년간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월 연금액 (2015년 현재 구 서독 €29.21, 구 동독 €27.05)

자료 : Sozialgesetzbuch (SGB) Sechstes Buch (VI) -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 Missoc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가 작성

22) http://www.deutsche-rentenversicherung.de/Bund/de/Inhalt/5_Services/03_broschueren_magazine/01_broschueren/geschaeftsbericht download.pdf?__blob=publicationFile&v=28
23) Personal Remuneration Points (persönliche Entgeltpunkte)
24) Factor of pension type (Rentenartfaktor)
25) Current pension value (aktueller Rentenwert)

〈독일의 유족연금 급여산식〉

유족연금 급여식 = 예상노령연금액 × 55%

* 예상 노령연금

= 가산기간을 포함한 개인소득점수 x 연금지급률 × 연금가치

※ 연금 가입자가 60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 수급자의 보험료 납부이력에 의해 결정되는 개인소득점수의 계산 시 가산기간(zurechnungszeit)을 추가하여 노령연금을 계산함. 즉, 60세[26] 이전에 사망한 경우라 할지라도 60세까지 연금을 가입한 것으로 추정하여 연금을 계산함 (§ 59 SGB VI Zurechnungszeit)

자료 : Sozialgesetzbuch (SGB) Sechstes Buch (VI) –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 Informationsportal für Soziale Altersvorsorge (www.rententips.de) ; Missoc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가 작성

〈독일의 유족연금 계산 사례〉

유족연금 계산 사례 ;

1960년 12월 12일 태어난 A는 2006년 2월 13일 질병으로 사망하였다. A는 1980년 4월 1일부터 2006년 2월 13일까지 연금에 보험료를 납입하였으며, A의 평균소득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과 같았다.

※ A는 60세(2020. 12. 11)가 되기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유족연금 계산 시 가산기간(Zurechnungszeit)이 고려되어야 한다. 가산기간은 A의 사망일인 2006년 2월13일부터 A가 60세가 되는 때인 2020년 12월 11일까지 148개월[27]이다.

※ 148개월의 가산기간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2006.02.13 (사건 발생일) ~ 2015.12.11 (만 55세 달성일) = 119개월
2016. 01.01 ~ 2020.12.11 (만 60세 달성일) = 30개월[28]
149개월 중 1개월은 보험료 감액기간으로 가산기간은 148개월이 된다.

※ 가산기간 동안의 기준소득은 가입자 개인의 평균 소득으로 계산

A의 유족연금액 (월) = 38.16 × 0.55 × € 29.21[29]
= €613.059

자료 : Sozialgesetzbuch (SGB) Sechstes Buch (VI) –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 Informationsportal für Soziale Altersvorsorge (www.rententips.de)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가 작성

26)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55세까지를 가산기간으로 고려하였으나, 2004년 1월1일부터 60세까지 5년을 추가하여 가산기간으로 고려하고 있음. 따라서 2001년부터 2003년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과도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27) 가산기간의 과도규정이 적용되어, 149개월 중 한 달은 연금보험료 감액기간

4. 미국의 유족연금제도

가. 급여종류 및 유족범위

○ OASDI의 유족연금에서 지급되는 급여의 종류
- 유족연금, 고아연금(Orphan's pension), 부양부모연금(Dependent parent's pension),
- 특별 사망일시금(Special Lump-sum death benefit) (정액 $225)

○ 유족연금 종류별로 유족이 정해짐

나. 수급조건

□ 유족연금

○ 사망한 가입자 조건
- 노령연금 수급(권)자[30] 혹은 장애연금 수급자이거나,
- 사망 직전 3년간 적어도 1년 내지는 1년 반 동안의 사회보장세(6 credits)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경우

○ 배우자인 유족 조건
- 유족연금을 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사망한 배우자와 적어도 1년 이상의 혼인기간
- 단, 이혼한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와 최소 10년 이상의 결혼생활을 유지한 경우에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음

이므로 실제적인 가산기간은 148개월이다.

28) 과도규정의 적용으로 55세부터 60세까지의 기간은 27/54까지만 가산기간으로 인정됨. 따라서 55세부터 60세까지 기간의 가산기간은 30개월임 (60개월 × 27/54 = 30 개월)

29) 2015년 값으로 계산

30) 적어도 40 credits (10년의 가입기간)이 필요

□ 고아연금

○ 사망한 가입자 조건

– 노령연금 수급(권)자[31] 혹은 장애연금 수급자이거나,

– 사망 직전 3년간 적어도 1년 내지는 1년 반 동안의 사회보장세(6 credits)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자녀인 유족 조건

– 양부모가 사망한 때, 18세 이전 (또는 초중등 학교 학생인 경우 19세) 자녀나 22세 이전 장애를 입고 장애상태를 지속한 자녀

– 또한 특정한 요건 하, 계자녀(Stepchildren), 손자녀, 손계자녀 또는 입양자녀에게도 연금 지급이 가능

□ 부양부모연금

○ 사망한 가입자 조건

– 노령연금 수급(권)자[32] 혹은 장애연금 수급자이거나,

– 사망 직전 3년간 적어도 1년 내지는 1년 반 동안의 사회보장세(6 credits)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경우

○ 부모인 유족 조건

– 유족 배우자가 부양하는 부모의 나이가 62세 이상일 경우, 부양부모연금이 지급

–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양자가 적어도 이들의 부양비 절반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함

31) 적어도 40 credits (10년의 가입기간)이 필요
32) 적어도 40 credits (10년의 가입기간)이 필요

다. 급여수준

□ 연령, 자녀유무, 소득에 따른 유족연금의 급여수준

○ 연령 조건

– 유족 (이혼한) 배우자가 정상연금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 연금액의 100%를 수급

– 그러나 유족 배우자의 연령이 60세 이상 정상연금수급개시연령 미만일 경우, 사망한 배우자 연금액의 71.5~99%를 수급

○ 자녀 유무

– 유족 배우자가 1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혹은 자녀가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유족 배우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사망한 배우자 연금액의 75%를 수급

○ 장애 유무

– 50~59세 장애 있는 유족배우자 71.5%

※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가입자 노령연금액의 100~180% (장애연금액의 100~150%)를 넘지 못함

□ 고아연금

– 또한 고아연금의 경우 사망한 부모 연금액의 75%를 지급

□ 부모부양연금

–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 연령이 62세 이상이고 부모가 한 명만 생존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 연금액의 82.5%를 수령하게 되고, 만약 양 부모가 생존한 경우, 각각 사망한 배우자 연금액의 75%를 지급

□ 소득조사

○ 완전연금을 위한 수급연령 이전

– 유족배우자의 소득이 $16,920(2017년 기준) 이상이면, 유족연금액은 소득 $2당 $1의 비율로 감액되는데, 위와 같은 비율은 유족배우자가 정상 연금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적용

○ 완전연금을 위한 수급연령 이후

– 유족배우자의 소득이 $44,880(2017년 기준) 이상이면, 유족연금액은 소득 $3당 $1의 비율로 감액

〈표 Ⅳ-5〉 출생연도별 유족연금액 수준 비교

출생년도[1]	100% 유족연금 수급가능 연령[2]	62세 수령 시[3] $1000 유족연금 당 감액수준	60세-정상연금수급개시연령 사이 개월 수	월당 감액수준(%)[4]
1939년 이하	65세	$829	60	0.475
1940	65세 2개월	$825	62	0.460
1941	65세 4개월	$822	64	0.445
1942	65세 6개월	$819	66	0.432
1943	65세 8개월	$816	68	0.419
1944	65세 10개월	$813	70	0.407
1945-1956	66세	$810	72	0.396
1957	66세 2개월	$807	74	0.385
1958	66세 4개월	$805	76	0.375
1959	66세 6개월	$803	78	0.365
1961	66세 8개월	$801	80	0.356
1962	66세 10개월	$798	82	0.348
1962 이후	67세	$796	84	0.339

주 1) 1월 1일에 출생한 유족 배우자는 급여지급은 전년도 정보를 기준임.
2) 만약 월 1일에 출생한 유족 배우자는 전월에 태어난 것으로 간주함.
3) 60세부터 유족급여를 받을 경우, 급여수준은 $715부터 시작함.
4) 급여상한은 사망배우자의 급여수준에 따라 결정됨. 유족 배우자가 급여를 60세부터 수령할 경우, 100% 유족급여의 28.5%가 감액됨

자료 : 미국 사회보장청(SSA).

○ 특별 사망일시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활동 중 사망한 배우자와 동일한 주거에서 생활한 경우에만 지급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서 서로 다른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에도 지급이 가능
- 근로활동 중 사망한 배우자의 기록에 따라 이미 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 근로활동 중 사망한 배우자가 유족급여를 받을 자격을 갖춘 경우

5. 일본의 유족연금제도 (후생연금)

가. 급여종류 및 유족범위

○ CPP의 유족연금에서 지급되는 급여의 종류
- 유족연금
- 사망일시금(death benefit)

나. 수급조건

□ 유족연금

○ 사망한 가입자 조건
- 노령연금 수급(권)자 혹은 장애연금 수급자

○ 배우자인 유족 조건
- 가입자 사망 당시 배우자 혹은 사실혼 관계자

다. 급여수준

□ 수급하는 연금의 종류, 연령, 자녀유무, 장애유무에 따른 유족연금의 급여수준

○ 연령 조건
- 65세 이상 : 사망한 가입자 노령연금의 60%
- 65세 미만 & 장애가 있거나 미성년 자녀 있는 경우 : 사망한 가입자 노령연금의 37.5% + 정액의 연금
- 45세 미만 & 장애 없고 미성년 자녀 없는 경우

6. 주요 선진국의 유족연금제도로부터의 함의

□ 대다수 국가의 경우 유족연금 수급 조건으로 유족 배우자와 일정기간(1년) 이상의 혼인관계를 조건화

○ 일본 제외

□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유족연금을 지급하나, 그 조건이 매우 까다로움

	유족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유족범위에 이혼한 배우자 포함 여부
스위스	(자녀가 없는 경우) 배우자 사망 시 45세 이상이고 최소 5년 이상의 결혼 생활을 유지	0 (보다 엄격한 수급조건)
프랑스	없음 (합법적 결혼만 인정)	0 (보다 엄격한 수급조건)
독일	최소 1년의 결혼 생활	0 (보다 엄격한 수급조건)
일본	없음	x
미국	최소 1년의 결혼 생활	0 (보다 엄격한 수급조건)

Ⅵ.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유족범위 및 수급조건 개선방안

1. 유족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규정

□ 검토 배경

○ (문제점) 유족연금의 악용

○ (개선안) 외국 사례 및 우리 현황 고려 시 최대 1년의 혼인기간 규정 가능

□ 도입 시 장점

○ 유족연금 악용 사례 감소 가능

□ 도입 시 단점

○ 제도 본연의 기능 상실 : 유족연금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 제도의 복잡화 : 국민연금은 현재 사실혼도 인정. 따라서 혼인기간 규정 시 사실혼의 경우도 기간의 설정이 필요. 그러나 사실혼의 경우 기간의 객관적인 판단이 매우 어려움

□ 검토의견

○ 기회비용 〉 제도 도입 시 효과

– 최대 1년 정도의 혼인기간 규정으로 유족연금 악용사례 감소가 눈에 띄게 증가할 것 같지 않음. 1년 1-2개월의 혼인 기간 유지 등으로 악용은 지속 가능

– 반면, 현재 유족연금 당연 수급자가 연금 수급이 불가능해져서 사망에 대한 위험커버 기능에 대한 논란이 가능하며, 민원 등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사실혼에 대한 규정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제도가 매우 복잡해질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 악용 사례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본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음

○ 또한 유족연금의 급여 수준이 높아지면 (60%로 단일화 등), 제도 악용 사례가 심화될 수 있음

○ 따라서 유족연금의 급여수준이 상향 조정되면, 이와 함께 혼인기간 규정의 도입을 재고해보는 것이 다양한 측면에서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됨

2. 유족범위에 이혼한 배우자 추가

□ 검토 배경

○ (문제점) 혼인기간이 길었던 이혼 배우자는 유족연금 수급 못하는 반면, 혼인(혹은 사실혼)기간이 매우 짧은 현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문제 개선

○ (개선안) 유족의 범위에 이혼 배우자 추가

□ 도입 시 장점

○ 위의 문제 해소

□ 도입 시 단점

○ 사회적 수용성이 매우 떨어짐 : 분할연금이 있는 상황에서,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서상 사회적 수용성이 매우 떨어짐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과 외국의 유족연금 차이 : 국민연금은 우선순위 유족 1인에게 유족연금 지급. 그러나 외국은 일반적으로 유족의

범위가 배우자(혹은 이혼 배우자) 및 자녀이며, 각 각 별도의 유족연금을 지급.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이혼한 배우자를 유족의 범위에 넣으려면, 유족범위의 재조정이 선행되어야 함. 현 제도 유지하며 제도 개선 시, 유족 우선순위 중 이혼 배우자를 몇 번째 순위에 넣어야 하는 지 결정해야하며, 이 경우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거나 유족의 범위만 확대되는 결과 초래

□ 검토의견

○ 문제제기를 한 배경에는 공감이 갈 수 있으나,

○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인식 및 현 제도를 고려할 경우, 본 제도 개선에 대한 타당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됨

참고문헌

유호선 외, 2009, 사망관련 급여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유호선 외, 2010, 급여수준 적정화를 위한 유족연금 개선방안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유호선 외, 2012, 노후소득보장제도 유형별 연금개혁 특성, 국민연금연구원
Rejda, G. E. 1994, Social Insurance and Economic Security, Printice-Hall

〈스위스〉
이정우, 2012, 해외 공·사연금제도 - 스위스 편, 국민연금연구원
AHV・IV, 2014, Hinterlassenenrenten der AHV
AXA, 2014, All you need to know about Pillar 1
Federal Social Insurance Office, 2014, Overview of Swiss Social Security
https://www.ahv-iv.ch/
MISSOC, 2014
http://www.bsv.admin.ch/index.html?lang=de

〈프랑스〉
유호선 이지은, 2012, 노후소득보장제도 유형별 연금제도 개혁 특성, 국민연금연구원
C. Bonnet, J.-M. Hourriez, 2012, “Gender Equality in Pensions: What Role for Rights Accrued as a Spouse or a Parent?” POPULATION, 67 (1), 2012, pp. 123-146

C. Bonnet, J.-M. Hourriez, 2012, “The treatment of couples by the pension system: survivor's pensions and pension splitting”, Population, 67(1), pp. 147-162

C. Bonnet, M, Geraci, 2009, “Correcting gender inequality in pensions - the experience of five European countries”, Population & Society, No.453

MISSOC, 2014

http://www.agirc-arrco.fr/particuliers/pension-de-reversion/

http://www.cleiss.fr/index_en.html

www.lassuranceretraite.fr/cs/Satellite/PUBPrincipale/SalariesPlus55/Droits-Cas-Par-Cas-Salaries55/En-Cas-Deces-Conjoint55/Veuvage-Plus-55-Ans55?packedargs=null

www.lassuranceretraite.fr/cs/Satellite/PUBPrincipale?packedargs=null

〈독일〉

Deutsche Rentenversicherung, Aktuelle Daten 2014, 2014. 1

Deutsche Rentenversicherung, Hinterbliebener: Soviel können Sie hinzuverdinen, 2014. 7

Deutsche Rentenversicherung, Hinterbliebenrente: Hilfe in schweren Zeiten, 2014. 7

Deutsche Rentenversicherung, Rentenversicherung in Zeitreihen - Aufgabe 2013, DRV- Schriften Band 22, 2013. 10.

Deutsche Rentenversicherung, Was wir für Familien tun, 2012. 10

국민연금공단, 독일의 공적연금제도, 연금정보 – 세계의 연금제도 - 독일 자료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외국의 공사적연금제도, 조사자료 2011-01, 국민연금연구원, 2012. 3
국민연금연구원, 해외 공·사연금제도 Ⅰ 〈유 럽〉, 용역보고서 2012-03, 2012. 12
김성숙·유호선·홍성우, 유족연금 수급자범위와 수급권 소멸조건의 타당성 검토, 정책자료 2011-03, 국민연금연구원, 2012. 3
유호선·홍성우, 사망관련 급여제도 개선방안 검토, 정책보고서 2009-03, 국민연금연구원, 2009. 12
유호선·홍성우·김형수, 급여수준 적정화를 위한 유족연금 개선방안, 정책보고서 2010-05, 국민연금연구원, 2011. 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 독일, 2012. 7
Missoc comparative tables: 1 January 2014, Ⅶ. Survivors.
OECD, Pensions at a Glance 2013, 2014. 3
http://www.missoc.org/MISSOC/INFORMATIONBASE/COMPARATIVETABLES/MISSOCDATABASE/comparativeTableSearch.jsp

단기과제 2017

외국인에 대한 반환일시금제도 개선 방안 검토

2017. 06.

김헌수 · 이재은

NPS 국민연금연구원

목 차

1. 머리말 ····· 57

2.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 및 수급에 관한 제도적 환경 ····· 59
   가. 외국인 국내 근로활동 관련 제도 및 법령 ····· 59
   나. 외국인에 대한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 제도 ····· 62

3. 외국인 국내 유입 및 근로현황 ····· 64
   가. 외국인 국내 유입현황 ····· 64
   나. 외국인 국내 근로현황 ····· 66

4.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현황과 일시금제도 운영의 문제점 ····· 73
   가.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현황 ····· 73
   나. 외국인에 대한 반환일시금제도 운영의 문제점 ····· 74

5. 외국인에 대한 일시금제도 적용 국내외 사례 ····· 76
   가. 외국인의 사학연금 적용사례 ····· 76
   나. 외국인에 대한 일시금제도 해외사례 ····· 76

6. 외국인에 대한 일시금 지급기준 개선방안 검토 ····· 83
   가. “동등대우” 원칙의 적용과 상호주의 ····· 83
   나. 외국인에 대한 반환일시금 제도 개선 ····· 84

7. Remarks ····· 87

참고문헌 ····· 89

표 목차

〈표 1〉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의 종류(E Visa) ····· 60
〈표 2〉 체류 외국인 현황 ····· 64
〈표 3〉 체류자격별 외국인 고용현황 ····· 66
〈표 4〉 국적별 경제활동상태(2013~2014) ····· 69
〈표 5〉 국적별 경제활동상태(2015~2016) ····· 71
〈표 6〉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 추이 ····· 73
〈표 7〉 일본의 반환일시금 수준(국민연금) ····· 81
〈표 8〉 협정별 동등대우 범위 ····· 83
〈표 9〉 법령적용 국가 ····· 84

그림 목차

[그림 1] 체류 외국인 현황 추이(명) ····· 65

[그림 2] 체류 외국인 전년대비 증가율(%) ····· 65

[그림 3] 체류자격별 취업자 분포(2016, %) ····· 68

[그림 4] 국적별 외국인 취업자 분포(2016, %) ····· 72

[그림 5] 주요 국적별 국민연금 가입자 분포(2016, %) ····· 74

[그림 6] 일본의 탈퇴일시금 청구시점에 관한 도해 ····· 79

1. 머리말

□ 연구의 필요성

○ 외국인에 대한 반환일시금 지급은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해당 국가에서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음(법 제126조제4항제1호).

○ 한편, 해당 국가와 반환일시금 지급에 대한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경우(법 제127조)와 일정한 체류자격(E-8,* E-9, H-2)을 가진 외국인(법 제126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상호주의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E-8 VISA 체류자격은 산업연구생제도 폐지도 인해 삭제됨(2007.6.1.)

○ 상호주의 원칙으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외국인 및 특정 체류자격(E-7)으로 가입한 외국인에 대한 반환일시금 지급을 요청하는 민원 증가

– 현재 국회 및 언론에서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 현재 반환일시금 지급의 상응성은 수급요건 및 지급액 산정요건의 상응성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으나 상대국 제도에 대한 적기, 정확한 확인 사실상 불가

○ 연금급여 수급권은 내·외국인 차별 없이 인정함에도 반환일시금만 상호주의를 규정하여 가입기간에 따른 급여수급의 형평성 문제 발생

○ 반환일시금 제도가 있는 국가가 소수인 점과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유도하기 위한 측면을 고려하여 상응성 요건을 도입하였으나 제도가 성숙되어 가는 현 단계에서는 재검토 필요

□ 주요 연구내용

○ 외국인에 대한 연금제도 적용관련 국내외 사례 조사

– 외국인의 반환일시금 제도는 원칙적으로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반환일시금 제도가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조사(독일, 일본, 스위스, 호주)

○ 외국인에 대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기준 개선 방안 검토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지급 기준은 해당 국가 간의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상호주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예외규정을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인지에 대한 논의

– 그렇지만 실무에서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모국 간 사회보장협정과 연금급여 지급요건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확인하는 절차가 매우 어려운 상황

–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업무여건 개선 여부를 중심으로 분석

2.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 및 수급에 관한 제도적 환경

가. 외국인 국내 근로활동 관련 제도 및 법령

□ 외국인 취업 및 고용과 관련된 법률

○“출입국관리법”

– 외국인이 국내에 취업하기 위해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획득해야 함(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 “외국인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해당 법률은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 및 수급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취업활동과 그에 따른 사회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우선 영향을 받게 됨.

□ 외국인 취업과 자격의 취득

○ 외국인에 대한 정의

– “외국인”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자를 말함.

· 한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인 “재외국민*”은 외국인이 아님.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 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취득과 관련된 사항

–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에서 출·입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국경관리와 난민의 인정철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외국인이 근로활동을 위해 일정기간 이상을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유효한 여권과 사증(査證 or VISA)이 필요

〈표 1〉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의 종류(E Visa)

체류자격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단기취업(C-4)	일시흥행, 광고 · 패션모델, 강의 · 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
교수(E-1)	「고등교육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자도 활동에 종사하려는 자
회화지도(E-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자
연구(E-3)	대한민국 내의 공 · 사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려는 자(교수(E-1)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기술지도(E-4)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대한민국 내의 공 · 사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 종사하려는 자
전문직업(E-5)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해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그 밖에 국가공인자격을 소진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률, 회계, 의료 등의 전문업무에 종사하려는 자(교수(E-1)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예술흥행(E-6)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구, 연극, 운동경기, 광고 · 패션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자
특정활동(E-7)	대한민국 내의 공 · 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특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자
	'특정활동'이란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 ·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이하 '도입직종')에서의 활동을 의미

체류자격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비전문취업(E-9)	「외국인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자(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외)
선원취업(E-10)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으로서 「선원법」 제2조 제6조에 따른 부원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운법」 제3조 제1호, 제5호 또는 제23조 제1호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나. 「수산업법」제8조 제1항 제1호, 제41노 제1항 또는 제57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다.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국적 크루즈사업자로서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제순항 크루즈선을 이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주 : "F," "H" type 비자에 대해서는 참고자료 참조
자료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 국민연금법은 〈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업 가능한 체류 외국인 중 실질적으로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및 수급 규정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적용하고 있음.

– 이 때 외국인에 대한 연금급여 및 반환일시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지급하고 있음.

– 예외적으로 해당 국가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경우(국민연금법 제127조)와 외국인 체류자격(E-9, H-2)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에게는 연금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최근 E-7("특정활동")을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반환일시금 지급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음.

  • "특정활동"이란: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에서의 활동을 의미함.

나. 외국인에 대한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 제도

□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 및 수급에 관한 법률

○ 앞선 절에서 언급한 법률에 의거 국내 체류자격을 획득하고 취업한 외국인은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및 수급을 적용받음.

– 국민연금법 제126조, 제12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1조~제113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3조, 제54조

□ 외국인의 국민연금 적용

○ 외국인의 국민연금 적용은 국민연금법 제126조에 의거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가 됨.

– 다만, 외국인의 국민연금 적용은 해당 국가가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국내 거주 외국인은 국민연금 적용에서 제외됨.

· 동법 시행령 제111조에서 당연 적용 제외 대상 외국인을 규정하고 있음(〈Box 1〉 참조).

〈Box 1〉 당연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1조)

1.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는 자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자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 별표 1: 당연적용 제외 외국인 체류자격은 D-1(문화 예술), D-2(유학), D-3(기술연수), D-4(일반연수), D-6(종교), F-1(방문 동거), F-3(동반), G-1(기타) 등이 해당됨.

○ 외국인에 대한 반환일시금 적용

- 국민연금에 가입된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반환일시금 규정(동법 제77조~제79조)을 적용받지 않음.
- 다만, 〈Box 2〉의 내용에 해당될 경우, 반환일시금 규정을 적용함.

〈Box 2〉 외국인 반환일시금 적용 규정(국민연금법 제126조 제4항)

1. 외국인의 본국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제7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그 대한민국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나라 법에서 규정하는 있는 경우의 외국인
2. 「외국인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으로서 이 법을 적용받은 사업장에 사용된 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필요한 연수기간 동안 지정된 연수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한 자로서 이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자

3. 외국인 국내 유입 및 근로현황

가. 외국인 국내 유입현황

□ 외국인 체류현황

○ 체류 외국인 현황

– 〈표 2〉에서 보면, 2000년 이후 외국인 체류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그림 1]참조).

· 2015년 기준, 약 190만 명이 체류 중이며, 그 중 국민연금 가입 가능성이 높은 장기체류자는 147만 명, 전체 77.3%로 대다수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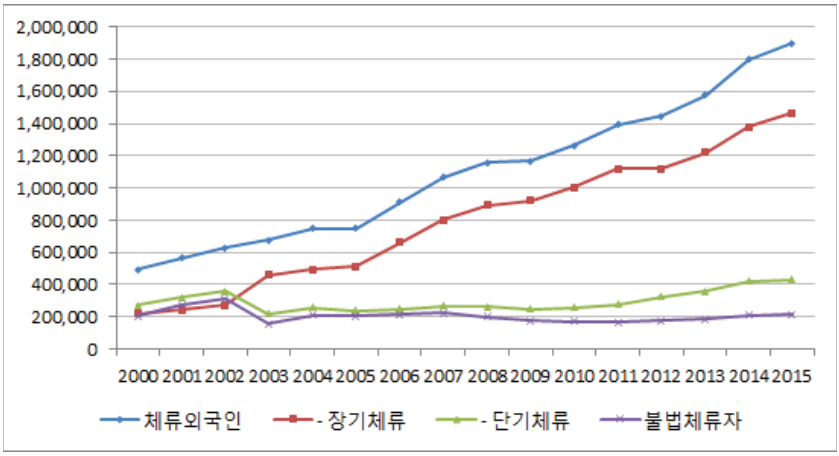
〈표 2〉 체류 외국인 현황

(단위: 명)

	체류외국인	장기체류	단기체류	불법체류자
2000	491,324	219,962	271,362	205,205
2001	566,835	244,384	322,451	272,626
2002	629,006	271,666	357,340	308,165
2003	678,687	460,261	218,426	154,342
2004	750,873	491,409	259,464	209,841
2005	747,467	510,509	236,958	204,254
2006	910,149	660,607	249,542	211,988
2007	1,066,273	800,262	266,011	223,464
2008	1,158,866	895,464	263,402	200,489
2009	1,168,477	920,887	247,590	177,955
2010	1,261,415	1,002,742	258,673	168,515
2011	1,395,077	1,117,481	277,596	167,780
2012	1,445,103	1,120,599	324,504	177,854
2013	1,576,034	1,219,192	356,842	183,106
2014	1,797,618	1,377,945	419,673	208,778
2015	1,899,519	1,467,873	431,646	214,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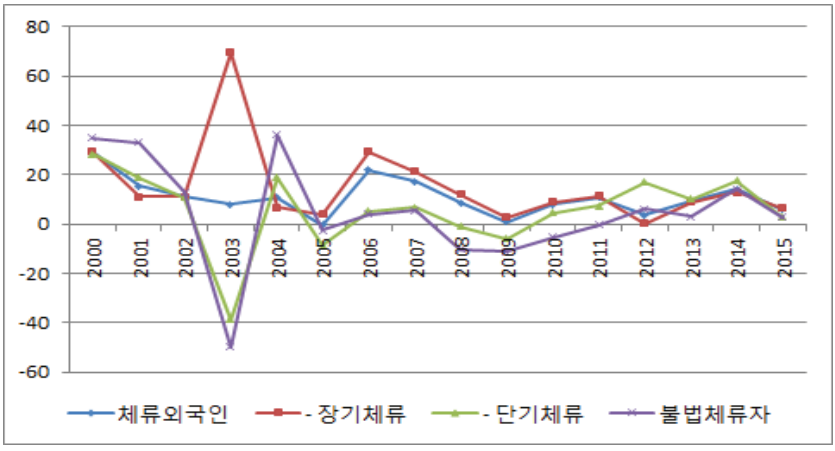
자료: 출입국 · 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그림 1] 체류 외국인 현황 추이(명)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그림 2] 체류 외국인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저자 산정

・ 다만, 체류 외국인의 증가정도는 2000년 초반에 비해 둔화된 모습을 보임. 그러나 체류 외국인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연 0~20% 사이에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즉 2005년 이후에는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순유입이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그림 2]참조).

나. 외국인 국내 근로현황

□ 체류자격별 외국인 근로현황

○ 체류자격에 의한 국민연금 외국인 반환일시금 지급 예외규정에 적용되는 사증(VISA)은 E-9, H-2 임.

– 〈표 3〉에서 보면, 체류자격별 취업자 수 비중은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영주(F-5) 순으로 그 비중이 높음.

· [그림 3]에서 보면, 체류자격별 취업자 수 비중은 위의 네 종류의 사증비중이 거의 80%에 이름. 이러한 비중의 분포는 최근 4년간 거의 차이가 없음.

· 반환일시금 지급에 있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사례는 30%로 추정되며, 그 중에서도 사회보장협정 국가를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고 할 수 있음.*

* 단, 수급자 비중이 아니므로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음.

〈표 3〉 체류자격별 외국인 고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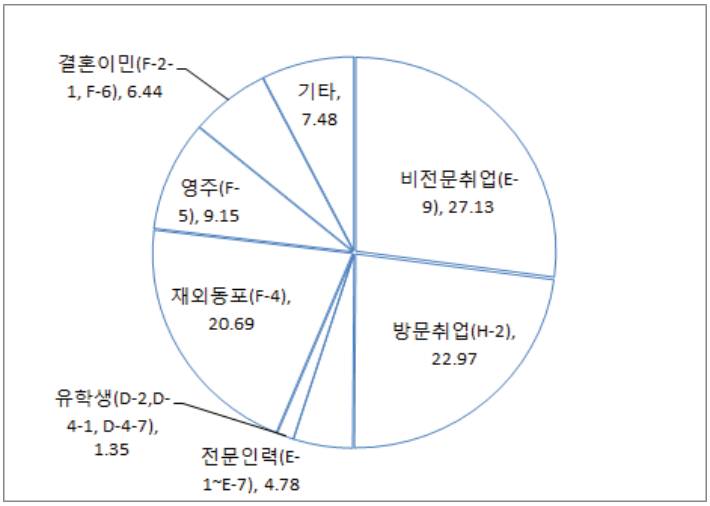
		15세 이상 인구(천명)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비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	고용률 (%)
2013	외국인 합계	1,126	793	760	333	70.4	67.5
	비전문취업(E-9)	226	226	226	0*	99.9	99.7
	방문취업(H-2)	234	197	186	37	84.2	79.3
	전문인력(E-1~E-7)	48	48	48	0*	99.3	98.9
	유학생(D-2, D-4-1, D-4-7)	82	12	11	70	15.0	13.2

		15세 이상 인구(천명)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비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	고용률 (%)
	재외동포(F-4)	204	132	124	72	64.7	60.8
	영주(F-5)	88	62	58	27	69.7	66.1
	결혼이민 (F-2-1, F-6)	129	62	58	67	48.3	44.9
	기타	114	54	50	60	47.1	43.8
2014	외국인 합계	1,256	896	852	360	71.4	67.9
	비전문취업(E-9)	247	247	247	0*	99.8	99.7
	방문취업(H-2)	261	224	212	37	85.9	81.0
	전문인력(E-1~E-7)	48	48	47	0*	99.7	99.6
	유학생(D-2, D-4-1, D-4-7)	81	9	8	72	11.2	9.6
	재외동포(F-4)	259	164	148	95	63.3	57.3
	영주(F-5)	102	76	72	26	74.1	70.1
	결혼이민 (F-2-1, F-6)	130	66	61	64	50.7	47.2
	기타	128	63	58	65	49.1	44.9
2015	외국인 합계	1,373	986	938	387	71.8	68.3
	비전문취업(E-9)	265	264	264	0*	99.8	99.7
	방문취업(H-2)	288	248	234	40	86.1	81.4
	전문인력(E-1~E-7)	47	47	47	0*	99.3	98.9
	유학생(D-2, D-4-1, D-4-7)	88	13	10	75	14.9	11.4
	재외동포(F-4)	301	195	180	107	64.6	59.7
	영주(F-5)	112	87	83	26	77.2	73.9
	결혼이민 (F-2-1, F-6)	124	64	61	60	51.7	48.7
	기타	148	68	60	79	46.2	40.6
2016	외국인 합계	1,425	1,005	962	420	70.5	67.6
	비전문취업(E-9)	262	261	261	0*	99.9	99.8

		15세 이상 인구(천명)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비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	고용률 (%)
	방문취업(H-2)	269	231	221	39	85.7	82.2
	전문인력(E-1~E-7)	46	46	46	0*	99.7	99.7
	유학생(D-2, D-4-1, D-4-7)	101	17	13	84	16.8	12.7
	재외동포(F-4)	337	214	199	123	63.4	59.2
	영주(F-5)	120	92	88	28	76.8	73.5
	결혼이민(F-2-1, F-6)	124	66	62	58	53.3	49.8
	기타	166	78	72	88	47.1	43.4

주: 상대표준오차(RSE)가 25% 이상인 경우 「*」표시를 하였음
자료: 외국인고용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2016.10.20.)

[그림 3] 체류자격별 취업자 분포(2016, %)



자료: 외국인고용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2016.10.20.), 저자산정

□ 국적별 외국인 근로현황

○ 최근 국적별 외국인 비중에서는 아시아계 외국인이 절대 다수를 차지

– 〈표 4~5〉에서 취업자의 국적별로 분포를 보면, 아시아계가 약 90~91%를 차지하고 있음([그림 4] 참조).

– 체류자격별 반환일시금 지급 확인 국가는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태국, 티모르민주공화국, 타지키스탄, 러시아, 나이지리아, 페루, 우크라이나 등임.*

* 단, 해당 국가는 국가 수는 더 늘어날 수 있음.

- 〈표 4~5〉에서는 체류자격별 반환일시금 지급 확인 국가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음.
- 더군다나 체류자격에 따라 반한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의 국적을 묻지 않고 있으며, 상호주의도 적용하지 않고 있어 반환일시금 지급이 비교적 원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음.

〈표 4〉 국적별 경제활동상태(2013~2014)

구분		15세 이상 인구(천명)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비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	고용률 (%)
2013	외국인 합계	1,126	793	760	333	70.4	67.5
	아시아	1,000	715	687	284	71.6	68.7
	한국계중국인	451	350	331	100	77.7	73.4
	중국 (한국계 제외)	147	59	55	89	39.8	37.7
	베트남	112	77	76	35	68.8	67.7
	우즈베키스탄	32	27	27	5	85.7	85.1
	필리핀	35	26	25	9	74.7	71.4
	인도네시아	30	29	29	1 *	96.2	95.6
	일본	23	10	10	13	42.4	41.9

구분		15세 이상 인구(천명)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비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	고용률 (%)
2014	태국	23	22	22	1 *	94.9	94.9
	몽골	18	11	10	7	60.8	55.0
	기타 아시아	129	105	103	24	81.1	79.4
	북미 (미국, 캐나다)	84	50	47	34	59.9	56.4
	유럽	25	17	16	9	66.2	63.4
	오세아니아	8	5	5	3	66.4	63.4
	기타	9	5	5	3	61.2	54.3
	외국인 합계	1,256	896	852	360	71.4	67.9
	아시아	1,125	817	778	307	72.7	69.1
	한국계중국인	533	414	386	119	77.7	72.5
	중국 (한국계 제외)	150	61	54	89	40.7	35.9
	베트남	115	74	72	41	64.2	63.1
	우즈베키스탄	37	32	31	5	87.4	85.3
	필리핀	40	31	30	9	77.2	76.2
	인도네시아	35	34	34	1 *	97.1	96.8
	일본	23	12	11	11	52.2	49.8
	태국	26	24	24	2 *	92.4	92.4
	몽골	17	11	10	6	62.5	60.4
	기타 아시아	150	126	124	24	83.8	82.7
	북미 (미국, 캐나다)	85	49	46	36	58.0	54.9
	유럽	28	18	17	10	63.8	61.1
	오세아니아	9	5	5	3	62.7	58.6
	기타	10	6	6	3	65.3	61.8

주: 상대표준오차(RSE)가 25% 이상인 경우 「*」표시를 하였음
자료: 외국인고용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2016.1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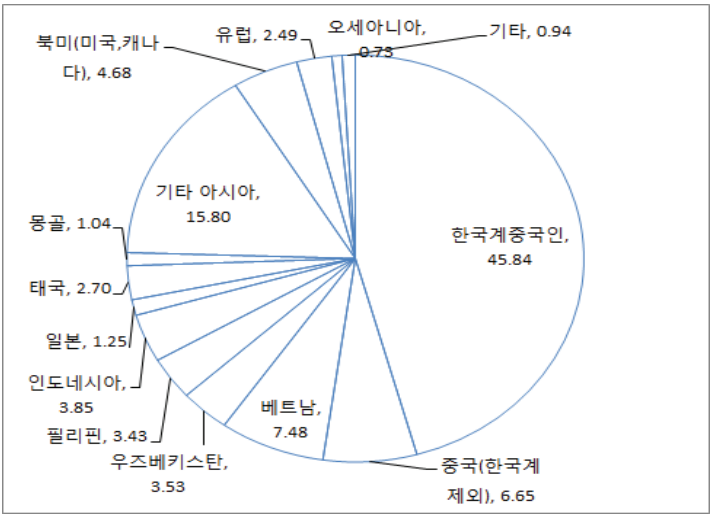
〈표 5〉 국적별 경제활동상태(2015~2016)

구분		15세 이상 인구(천명)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비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	고용률 (%)
2015	외국인 합계	1,373	986	938	387	71.8	68.3
	아시아	1,233	899	857	334	72.9	69.5
	한국계중국인	598	465	437	133	77.8	73.2
	중국 (한국계 제외)	158	62	56	96	39.3	35.6
	베트남	122	78	76	45	63.4	61.8
	우즈베키스탄	38	33	32	6	84.9	83.2
	필리핀	44	33	33	11	75.8	75.3
	인도네시아	39	38	38	1 *	97.9	97.9
	일본	23	12	11	11	53.1	48.3
	태국	27	25	25	2 *	93.2	92.9
	몽골	16	10	9	6 *	62.6	56.0
	기타 아시아	168	143	140	25	85.1	83.1
	북미 (미국, 캐나다)	89	54	52	35	61.0	58.8
	유럽	31	20	18	11	64.2	57.7
	오세아니아	9	5	5	4 *	56.2	54.5
	기타	12	8	6	4 *	67.0	52.8
2016	외국인 합계	1,425	1,005	962	420	70.5	67.6
	아시아	1,279	916	879	362	71.7	68.7
	한국계중국인	605	463	441	141	76.6	73.0
	중국 (한국계 제외)	171	71	64	100	41.7	37.2
	베트남	127	73	72	54	57.3	56.1
	우즈베키스탄	43	36	34	7	83.1	78.8
	필리핀	44	33	33	11	75.9	74.6
	인도네시아	39	37	37	2 *	95.7	95.7

구분		15세 이상 인구(천명)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비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	고용률 (%)
2016	일본	23	12	12	11	51.4	50.8
	태국	27	26	26	1 *	95.4	95.4
	몽골	18	10	10	8	57.1	52.8
	기타 아시아	181	154	152	27	85.1	83.5
	북미 (미국, 캐나다)	87	49	45	38	55.8	51.5
	유럽	36	24	24	11	68.1	66.3
	오세아니아	10	7	7	3 *	70.7	68.3
	기타	14	9	9	5 *	66.4	61.6

주: 상대표준오차(RSE)가 25% 이상인 경우 「*」표시를 하였음
자료: 외국인고용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2016.10.20.)

[그림 4] 국적별 외국인 취업자 분포(2016, %)



자료: 외국인고용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2016.10.20.), 저자산정

4.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현황과 일시금제도 운영의 문제점

가.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현황

□ 가입현황

○ 최근 10년 간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은 일부 년도를 제외하고 증가세를 보임.

– 사업장가입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2016년 기준 외국인 경제활동인구(약 1백만 명) 대비 약 28%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상황임. 2015년 약 26%대비 약 2%p가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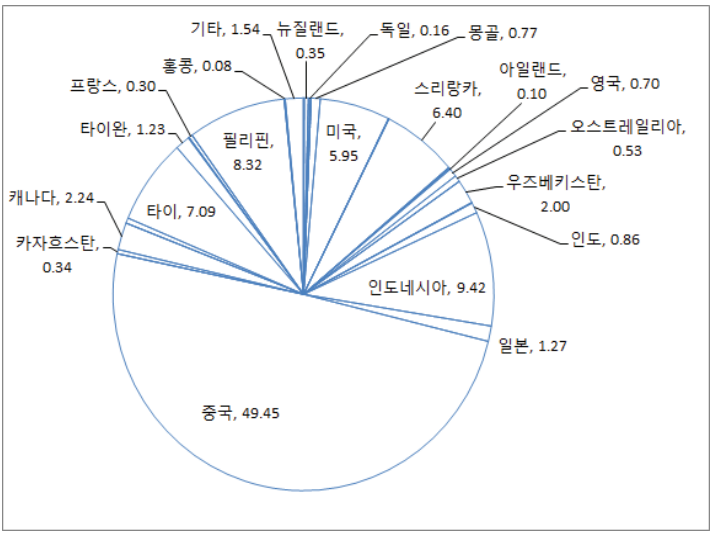
○ 국적별로 보면, 2016년 기준, 중국국적 외국인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가장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음. 다음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스리랑카, 미국, 캐나다 순임.

〈표 6〉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 추이

	총 가입자수	사업장 가입자	지 역 가 입 자		
			소계	소득신고자	납부예외
2006	97,643	96,620	1,023	258	765
2007	119,298	118,239	1,059	270	789
2008	145,181	144,417	764	217	547
2009	159,085	158,455	630	250	380
2010	183,903	183,136	767	343	424
2011	204,500	203,022	1,478	850	628
2012	195,494	193,719	1,775	1,143	632
2013	191,567	189,478	2,089	1,416	673
2014	228,685	225,261	3,424	2,583	841
2015	261,026	256,292	4,734	3,842	892
2016	277,093	271,079	6,014	5,107	907

자료: 국민연금통계연보(2016)

[그림 5] 주요 국적별 국민연금 가입자 분포(2016, %)



자료: 국민연금통계연보(2016)

나. 외국인에 대한 반환일시금제도 운영의 문제점

□ 상호주의 원칙 적용의 어려움

○ 공단 실무진의 입장에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는 외국인이 사회보장협정 국가가 아니거나 체류자격별 예외규정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반환일시금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함.

– 외국인 근로현황에서 나타나듯이 국내에서 근로활동을 하는 상당수 외국인은 사회보장협정국이거나 체류자격별 반환일시금 규정에 의거 지급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반환일시금 제도가 운영되는 상황에서는 모든 외국인의 반환일시금 지급이 이루어 져야 함.

– 따라서 사회보장협정국 또는 체류자격별 예외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국가의 외국인 반환일시금 지급은 “상호주의”에 의거 결정됨.

- 그러나 “상호주의”에 근거한 반환일시금 지급은 많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일시금 지급이 법정기일 내에 이루어지기 매우 어려운 상황
  - 즉 해당 국가와의 업무협력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해당 국가가 대한국민 근로자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사실상 힘든 상황
  - 이로 인해 민원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예외규정 상의 형평성 문제

○ 외국인의 모국과 반환일시금 지급에 대한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경우와 일정한 체류자격(E-9, H-2)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서 상호주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이러한 예외조항의 존재로 인해 다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즉, 국내 입국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대한 변화를 고려할 때, 예외규정 설정에 있어 탄력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5. 외국인에 대한 일시금제도 적용 국내외 사례

가. 외국인의 사학연금 적용사례

□ 외국인교원의 사학연금 가입 및 수급

○ 외국인교원의 사학연금 가입 및 수급과 관련하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과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음.

○ 국내 사립교육기관의 교직원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의 사학연금 가입은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해당 국가가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해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될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 아울러,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국민연금처럼 연금보험료의 납부,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서는 그 사회보장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나. 외국인에 대한 일시금제도 해외사례

□ 독일

○ 독일은 기본적으로 EU 국적자를 제외하곤 반환일시금 지급을 해당 국가와 사회보장협정을 통해 가능함. 만약 사회보장협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 간의 case-by-case에 의해 결정됨.

○ 반환일시금 수급 요건

– 외국인의 경우, 공적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가입기간 필요함.

– 이 때 외국인이 독일 공적연금에 사회보험료를 5년 이상 납부하였다면,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국할 때 일시금을 받을 수 없음.

· 이 경우, 독일의 공적연금법에 의해 연금수급개시연령(65세, 2017

년 기준. 추후 67세로 상향)에 도달한 후 급여청구를 해야 함. 단, 사회보장협정과 본 국의 공적연금에 기여한 연수에 따라 수급 시기는 달라질 수 있음.

- 결국, 외국인이 독일 공적연금의 사회보험료를 5년 미만 납부한 경우에만 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음.
  - 일시금 수령은 연금수령과 마찬가지로 독일의 연금수급개시연령이 도달한 후에 가능함.*

* 단, 일시금 수령이 독일의 연금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한 후에만 가능한 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 2013년까지는 적어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반환일시금의 청구 및 수령

- 반환일시금의 신청은 내국인과 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반환일시금 청구시한은 정해져 있지 않음.
- 단, 반환일시금은 외국인이 본국 귀국 시 급여를 청구한 날로부터 적어도 24개월 지난 후에 지급됨.
  - 독일과 사회보장협정이 맺어진 국가의 외국인라면, 연금지급 청구 시와 동일하게 해당 국가의 연금기관에 지급청구를 할 수 있음.
  - 만약, 사회보장협정이 맺어져 있지 않은 나라의 외국인인 경우, 해당 국가의 독일 대사관(또는 영사관)에 급여지급 청구를 해야 함.
  - 또는 직접 독일 연금청에 지급청구를 할 수 있음.
- 외국인은 급여 청구 시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함. 단, 이 두 가지 선택은 우선 해당 국가가 독일과 사회보장협정을 통해 기여기간 연계 협정이 맺어진 경우에 가능함. 기여기간 연계 협정에 근거하여;
  - (1) 독일에서의 기여기간을 본 국의 연금 기여기간과 합산할 수 있음. 이 때는 독일 사용자가 지급한 사회보험료 기여분도 함께 계산됨.
  - (2)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음. 이때는 본인이 기여한 기여금에 한

해서만 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음.

□ 스위스

○ 반환일시금 수급요건

– 외국인을 대상으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공적연금인 기초연금(AVS)과 사적연금인 기업연금(Prévoyance Professionelle; PP)임.

– (1) AVS의 반환일시금 제도

· 스위스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외국인이 본 국으로 귀국한 경우라도 연금수급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스위스가 정하는 연금수급개시연령(남성 65세, 여성 63세)에 도달했을 때 받을 수 있음.

· 연금수급권은 본 국으로 이전되지 않으며, 일시금 수령도 불가함.

· 만약, 스위스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외국인이 본 국으로 귀국할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함.

– (2) PP의 반환일시금 제도

· PP는 외국인에게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함.

· ① 스위스를 떠날 경우

· ② 스위스에서 자영자가 될 경우

· ③ 총기여금액이 본 인의 1년 임금소득보다 적을 경우임.

□ 일본

○ 탈퇴일시금 수급요건

– 제1호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납부하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외국인이 국민연금, 후생연금보험, 또는 공제조합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한 경우에 탈퇴일시금 수령이 가능

· (1) 일본국적을 소지하지 않는 자

· (2) 국민연금의 제1호 피보험자로서 보험료 납부가 끝난 기간의

월수와 보험료 4분의 1 면제기간 월수의 4분의 3에 상당하는 월수, 보험료 반액 면제기간 월수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월수 및 보험료 4분의 3 면제기간 월수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월수를 합산한 월수 또는 후생연금보험의 피보험자 기간의 월수가 6개월 이상인 자

- (3) 일본의 주소지가 없는 자(1994년 11월 9일 이후에 체류자격을 가지고 일본에 살고 있었던 자로 일본을 출국한 자)
- (4) 연금(장애 수당 포함)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자

○ 탈퇴일시금 청구 및 급여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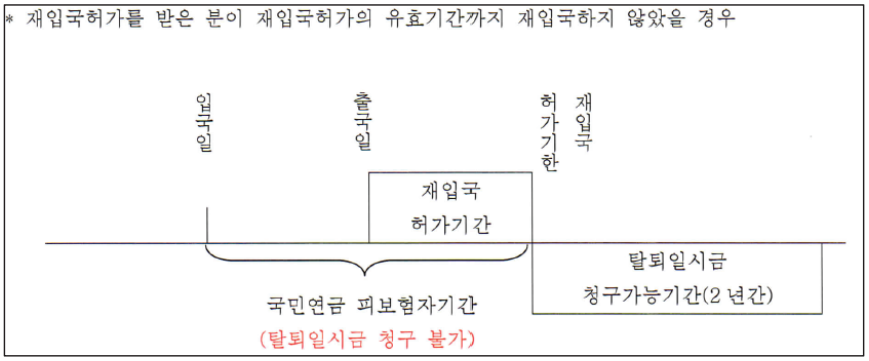
– 탈퇴일시금 청구는 기본적으로 시구정촌(市區町村)에 전출신고를 한 후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경우에 가능함.

- 만약 시구정촌에 전출신고를 하지 않으면 탈퇴일시금을 청구할 수 없음.

–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외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주소를 일본 국외로 옮기게 되어 시구정촌에 국민연금(또는 후생연금보험, 공제연금) 자격상실신고를 한 경우에는 탈퇴일시금 신청이 가능 ([그림 6] 참조)

– 탈퇴일시금은 가입월수 최대 3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됨. 37

[그림 6] 일본의 탈퇴일시금 청구시점에 관한 도해



자료: 일본연금기구 홈페이지

〈Box 3〉 후생연금보험의 탈퇴일시금 산정방식

- 탈퇴일시금 수급액은 기본적으로 가입기간에 의해 결정
- 계산방식;

탈퇴일시금 = 평균표준보수액 × 지급률{보험료율 × 1/2 × 피보험자기간월수에 상응하는 값(상수)*}

* 상수값

후생연금 피보험자기간	상수값
6개월 이상~12개월	6
12개월 이상~ 18개월	12
18개월 이상~ 24개월	18
24개월 이상~ 30개월	24
24개월 이상~36개월	30
36개월 이상	36

개월 이상의 가입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대 3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이 탈퇴일시금 최고액이 됨(〈Box 3〉 참조).

□ 호주

○ "Superannuation(이하 Super)"에서의 반환일시금(Departing Australia Superannuation Payment; DASP) 제도

– Superannuation제도는 호주의 중추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임. 사적 연금제도이나 법적으로 모든 근로자들이 가입해야 함("Super Guarantee").

· 사용자는 근로자 연소득(상여금 등 포함)의 9.5%를 대납해야 함.

– 적용대상은 직종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임금근로자 및 자영자, 그리고 외국인 등도 포함됨.

○ 탈퇴일시금 수급요건

– DTSP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지급됨.

· (1) "The Migration Act 1958" 에 근거한 임시취업비자를 받은 외국인이 Superannuation fund에 적립한 경우,

〈표 7〉 일본의 반환일시금 수준(국민연금)

(단위: 엔)

납부필기간 / 대상월수	2016.4~2017.3	2015.4~2016.3	2014.4~2015.3	2013.4~2014.3	2012.4~2013.3	2011.4~2012.3	2010.4~2011.3	2009.4~2010.3	2008.4~2009.3	2007.4~2008.3	2006.4~2007.3	2005.4~2006.3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48,780	46,770	45,750	45,120	44,940	45,060	45,300	43,980	43,230	42,300	41,580	40,74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97,560	93,540	91,500	90,240	89,880	90,120	90,600	87,960	86,460	84,600	83,160	81,48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146,340	140,310	137,250	135,360	134,820	135,180	135,900	131,940	129,690	126,900	124,740	122,22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195,120	187,080	183,000	180,480	179,760	180,240	181,200	175,920	172,920	169,200	166,320	162,96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43,900	233,850	228,750	225,600	224,700	225,300	226,500	219,900	216,150	211,500	207,900	203,700
36개월 이상	292,680	280,620	274,500	270,720	269,640	270,360	271,800	263,880	259,380	253,800	249,480	244,440

자료: 일본연금기구 홈페이지

- (2) 외국인의 비자가 만료되거나 취소되어,
- (3) 호주를 출국한 상태이어야 함.
- (4) 호주나 뉴질랜드 시민이 아니거나 영주권자가 아니어야 함.

○ 탈퇴일시금의 청구

– 외국인은 호주를 출국한 이후 6개월 이상 경과하면 DTSP를 받을 수 없음. 즉 DTSP를 받기위해서는 적어도 출국 이후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함.

- 출국 후 6개월 이후 청구한 DTSP는 Superannuation fund에 다시 귀속됨.
- 청구는 DASP on-line system을 이용하거나 paper-form(호주정부가 규정한 문서형식)을 작성하여 직접 Superannation fund에 제출해야 함.

– 만약, 투자은퇴비자(Investor retirement visa-subclass 405)나

은퇴비자(Retirement visa-subclass 410)를 소지한 외국인이 소득활동을 통해 적립된 Super fund 적립금에 대해서는 DTSP형태로 받을 수 없음.

○ 탈퇴일시금의 수급

- DASP는 신청한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지급됨. 단, 지급청구서의 기재내용을 보강하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급기일이 늘어날 수 있음.

6. 외국인에 대한 일시금 지급기준 개선방안 검토

가. "동등대우"원칙의 적용과 상호주의

□ 동등대우

○ 협정대상국 국민은 급여지급 등에 있어 우리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하고 있으므로 연금급여는 물론 반환일시금도 동등하게 지급

– 단, 협정국이외의 외국인은 반환일시금 지급에 제한이 존재

– 또한, 협정상대국 국민이외의 제3국인에게 대하여는 반환일시금 지급에 있어서 동등대부 불인정

· 선원과 항공승무원, 외교공관의 현지고용인등은 국가별 협정에 따라 다음 국가의 법령을 적용

〈표 8〉 협정별 동등대우 범위

협정당사국	협정적용 대상	동등대우 범위
한국-캐나다	국적 제한없음 (피부양자 포함)	협정 적용대상자 (단, 반환일시금은 협정 발효일 이후 가입기간분만 지급)
한국-영국	국적 제한없음	협정당사국에 거주하는 협정 적용대상자 (단, 반환 일시금 제외)
한국-미국	국적 제한없음 (피부양자 포함)	협정당사국에 거주하는 협정 적용대상자
한국-독일	국적 제한없음	협정적용대상자 (피부양자가 아닌 제3국인은 동등대우 대상에서 제외)
한국-네덜란드	국적 제한없음	양체약 당사국 국민(단, 반환일시금 제외)

주: 한-이태리 협정, 한-중국 잠정조치협정은 동등대우에 관한 별도 규정 없음
자료: 고용노동부 on-line 자료실

〈표 9〉 법령적용 국가

협정당사국	한국-캐나다	한국-영국	한국-미국	한국-독일	한국-네덜란드
선원	거주지국	거주지국	거주지국	각기적용	거주지국
항공승무원	거주지국	거주지국	거주지국	별도규정 없음	사업장소재지국
외교공관의 현지고용인	별도규정 없음	주재국	본 국	본 국	본 국

주: 1) 다만 외교공관의 현지고용인등의 경우 한국-영국의 경우는 고용개시 3개월이내 본국법, 한국-독일의 경우는 주재국 통상거주시 6개월이내 주재국법 선택가능
2) 한-이태리 협정, 한-중국 잠정조치협정은 선원 · 항공승무원 등에 관한 별도규정 없음
자료: 고용노동부 on-line 자료실

□ 상호주의

○ 외국인에 대한 동등대우 원칙에 있어서도 반환일시금에 대해서는 차등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주의” 원칙과 관련된 국민연금법 제126조 제1항의 합목적성이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외국인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은 국민연금법 제126조 제2항의 규정에 영향을 받는 것임. 즉 예외규정의 추가는 언제든지 정책적 판단에 의해 가능하다는 해석을 할 수 있음.

나. 외국인에 대한 반환일시금 제도 개선

□ 소멸시효의 변경

○ 연금급여 수급권에 대해 내 · 외국인 간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관점에서는 외국인의 반환일시금 수급에도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변경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

– 즉, 법126조 제2항에 의거 외국인에게 법77조~법79조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반환일시금 지급에 있어 내국인과 외국인과의 차이를 둔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외국인의 반환일시금 소멸시효 기간을 호주처럼 6~12개월로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반환일시금 지급기일의 변경

○ 만약 소멸시효 기간의 단축이-내외국인에 대한 동등대우 원칙의 적용 또는 국민연금법 적용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어렵다면, 독일과 같이 반환일시금을 신청일(또는 출국일) 기준으로 2년은 아니더라도 1년 후에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독일의 경우, 반환일시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가 없기 때문에 일시금 지급기일이 긴 이유도 있다고 판단되나 우리나라도 소멸시효 기간이 적지 않은 만큼 현 지급사유 발생일을 "출국일"로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임.
- 즉, 체류자격에 따른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아닌 상호주의(또는 "상응성")에 의거한 경우, 해당 국가와의 확인절차 등으로 현 제도상 적기의 반환일시금 지급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다시 말하면, 상호주의에 의거한 반환일시금 지급이 보다 명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국가와의 확인이 필수인 만큼, 이를 정확히 확인 할 시간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임.
- 지급기간을 충분히 둘 필요가 있는 또 다른 이유는 향후 늘어나는 외국인 유입을 고려할 때, 공단에 관련 업무 수행 인력의 충원이 없을 경우, 현 제도 하에서는 해당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임.

□ 상호주의 원칙을 지키되 원활한 급여지급 업무 수행이나 민원처리를 위해 공단의 국제협력 업무를 강화하는 방안

○ 인력 증원이전에 외국인 해당 국가 간의 정보교환 인프라를 강화하는 의미에서 독일처럼 우리나라 해외 공관원과의 업무협조체계를 강화

〈Box 4〉 외국인 반환일시금 지급기일(1년 후 지급) 변경 시, 지급업무 프로세스의 변화 예시

- Step 1. 외국인이 반환일시금을 신청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의 반환일시금 수급요건을 확인하고 수급 가능 여부와 절차를 설명함.
- Step 2. Step 1.의 절차와 함께 외국인으로 하여금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써 귀국 후 해당 관청의 담당부서와 담당자 연락처를 국민연금공단에 통보하도록 함(3개월 이내에 통지).
  - 단, 외국인으로 하여금 Step 2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지 않고 권고사항으로 규정하되, 원활한 지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청구서"나 국민연금 영문 홈페이지에 명시하도록 함.
  - 이는 일시금 지급 종료 시까지 해당 외국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수단이기도 함.
- Step 3. 만약, 3개월 이내에 외국인으로부터 아무런 통보가 없을 경우, 공단이 자체적으로 해당국가와 "상응성" 확인절차를 시행함.
- Step 4. 나머지 기간 동안 확인절차를 거쳐, 청구일(또는 출국일) 1년 후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도록 함.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현재 비형식적인 업무협조는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제도화 된 형태의 업무체계가 갖추어 진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그런 의미에서 보다 제도화 된 업무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는 해외 공관원의 또 다른 행정부처의 업무협조 요구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고, 해외 공관원이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어, 위의 구상이 실현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당분간 국내 유입 외국인 수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단의 독자적인 국제협력업무 수행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

○ 관련 인력 증원은 외국인의 국내 유입 및 반환일시금 청구 추이를 고려하여 이루어 질 수 있음.

7. Remarks

□ 상호주의 원칙을 지키되 예외규정을 두는 것에 대한 정책적 판단의 필요성

○ 본 과제의 핵심은 상호주의 원칙을 지키고자 할 경우, 현실적으로 이를 적용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상황과 이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임.

– 즉 국민연금은 체류자격에 따른 반환일시금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특정 취업 VISA를 보유한 외국인이 본국 귀국 시 일시금 지급을 요구하는 민원이 늘고 있는 문제를 동일한 취지에서 예외규정을 추가 적용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임.

○ 민원을 줄이고 국민연금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해당 취업 VISA(E-7)를 가진 외국인에 대한 일시금 지급은 “예외규정의 추가 적용”이라는 정책적 판단으로 가능하다고 봄.

– 상호주의 원칙을 보다 충실히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의 관련 인력을 보강하거나 해당 국가와의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나 시행까지는 절차(정부 승인 및 예산확보 등)와 시간이 요구됨.

○ 그러나 위와 같이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과연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거나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외국인 관련 급여지급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왜냐하면, 예외규정의 증가는 또 다른 예외규정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을 야기 시키고, 이는 최초 법률의 의미를 희석시킴으로써 급여지급 관련 규정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임.

– 또한 예외규정 추가적용에 앞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우리나라에서도 청년층을 중심으로 해외근로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

당사국이 대한민국국적 근로자에게 상호주의 원칙을 유지한다면, 해당 외국인 근로자에게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은 해외근로 자국민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임.

□ 결론적으로 소멸시효 기간 축소나 반환일시금 지급에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어, 행정적인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

○ 만약 위와 같은 제도 개선이 오히려 어렵다면 예외규정의 추가적용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임.

□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 유입 증가에 비추어 공단의 독자적인 국제협력업무 수행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반환일시금 청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음. 향후 위와 같은 추이변화를 고려하여 인력을 증원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과제

○ 반환일시금 제도 폐지에 대한 검토

– 앞으로 연금제도가 보다 성숙되고 최소가입기간의 축소나 추가납부 제도의 축소 또는 확대 여부에 따라, 반환일시금 제도 폐지 여부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 자료

□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의 종류(F, H Visa)

체류자격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거주(F-2)	가.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 라.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 등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2)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국내 외국인투자 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3)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마. 영주(F-5) 체류자격을 상실한 사람 주 국내 생활관계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강제퇴거된 사람은 제외한다) 바.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7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다만, 교수(E-1)부터 전문직업(E-5)까지 또는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최소 체류기간을 5년으로 한다) 사.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거 10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체류자격으로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사람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법무무장관이 정하는 기술・기능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일정

체류자격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금액 이상의 임금을 국내에서 받고 있는 것(기술 · 기능 자격증의 종류 및 임금의 기준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것 3)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자. 나이, 학력, 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차.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한 사람 또는 법인의 임원, 주주 등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이 경우 법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투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체류자격 부여인원을 정함. 카. 자목이나 차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
재외동포(F-4)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는 자, 다만, 다음의 취업활동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외 가.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나.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외국국적동포'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영주(F-5)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적대상(「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이 아닌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체류자격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가.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이고,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자로서, 예술흥행(E-6) 자격을 제외한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자격이나 거주(F-2) 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나. 국민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율로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다싱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F-5)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한 결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자 라.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고나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외국국적 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자 바. 종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579호로 일부 개정되어 2002.4.18. 공포・시행되기 이전이 것) 별표 1 제27호란의 거주(F-2) 자격(이에 해당되는 종전의 체류자격을 가진 적이 있는 자를 포함)이 있었던 자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박사학위증이 있는 자로서 영주(F-5) 자격 신정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자 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자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F-5) 자격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

체류자격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자 자. 과학 · 경영 · 교육 · 문화예술 ·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원한 능력이 있는 자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차.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카. 60세 이상인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 해외로부터 수령하고 있는 자 타.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표 거주(F-2)란의 비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 중 근속기간이나 취업지역, 산업분야의 특성, 인력부족 상황 등 국민의 취업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파. 이 표 거주(F-2)란의 사목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하. 이 표 거주(F-2)란의 자목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거. 기업투자(D-8) 가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지하고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너.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으로서 품행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더. 기업투자(D-8) 가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의 필수 전문인력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결혼이민 (F-6)	가. 국민의 배우자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체류자격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칙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관광취업(H-1)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관광경비 충당을 위해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협정 등의 취지에 반하는 업종이나 국내법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려는 자는 제외)
방문취업(H-2)	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외국국적도촐(「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만 25세 이사인 자 중에서 나목의 활동범위 내에서 체류하려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재외동포(F-4)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1)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가족관계등록부·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및 그 직계비속 2)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정을 받은 자 3)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자 4)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인증진에 기여한 자 5) 유학(D-2) 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의 부·모 및 배우자 6)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해서 출국한 자 7) 1)부터 6)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국말 시험, 추첨 등의 절차에 의해 선정된 자 나. 활동범위 1) 방문, 친적과의 일시 동거, 관광, 요양, 견학, 친선경기, 비영리 문화예술활동, 회의참석, 학술자료 수집, 시장조사·업무연락·계약 등 상업직 용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의 활동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서 활동(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해당 산업체에 발급한 특례

체류자격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고용가능확인서에 기재된 허용인원의 범위에서 취업 가능) (1) 작물 재배업(011) (2) 축산업(012) (3) 연근해 어업(03112) (4) 양식 어업(0321) (5) 제조업(10-33) (6)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37) (7) 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8) 건설업(41-42) (9) 산동물도매업(46205) (10) 기타 산업용 농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46209) (11) 가정용품 도매업(464) (12) 기계장비 및 관련물품 도매업(465) (13) 재생용 재로 수집 및 판매업(46791) (14)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475) (15)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478) (16) 무점포 소매업(479) (17) 육상 여객 운송업(492) (18) 냉장 및 냉동 창고업(52102) (19) 호텔업(55111),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은 1등급 · 2등급 및 3등급의 관광호텔업에 한정 (20) 여관업(55112), 다만, 가옥에도 불구하고 만 45세 이상인 외국국적만 해당 (21) 일반 음식점업(5611) (22) 기타 음식점업(5610) (23)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24)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25)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 (26) 건축물 일반 청소업(741) (27) 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충소업(74212) (28)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 (29) 사회복지 서비스업(87)

체류자격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30) 자동차 종합 수리업(95212) (31) 자동차 전문 수리업(95212) (32) 모터사이클 수리업(9522) (33) 욕탕업(96121) (34) 산업용 세탁업(96911) (35)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36)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97-98)

자료: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 사회보장협정 미체결국의 연금관련 기관 및 해당국 해외공관 정보

국가	해당 국 연금관련 기관 정보			
	연금관련 기관명	관련 사이트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가나	국민연금규제청 (National Pensions Regulatory Authority)	http://npra.gov.gh	info@npra.gov.gh	(+233) (302) 968 692
그레나다	Natioanl Insurance Borad	http://www.nisgrenada.org		(473) 440-3309
말레이시아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Organization)	http://www.perkeso.gov.my	perkeso@perkeso.gov.my	03-42645000
바나아투	Provident Fund Board	http://wwwvnpf.com.vu		(+678) 23808
버뮤다	Department of Social Insurance	http://www.gov.bm/bermuda-pension		(441) 294-9242
벨리즈	사회보장위원회	http://www.socialsecurity.org.bz		822-0084
부탄	National Pension and Provident Fund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국가사회보험국	http://www.nissvg.org	nis@nissvg.org	(784) 456-1514
수단	사회복지부장부 (Ministry of Welfare and Social Security)	http://www.welfare.gov.sd		
스리랑카	노동 및 노동관계부 (Ministry of Labor and Labor Relations)	http://www.labourmin.gov.lk	slmol@slt.lk / sasfr@sltnet.lk / simalaweera@lmi.lk	(+94) 11 2581991 / (+94) 011-2368609
요르단	사회보장공단 (Social Security Coporation)	http://www.ssc.gov.jo		
우간다	국가사회보장기금 (National Social Security Fund)	http://www.nssfud.org	customerservice@ nssfug.org	(+256) 311 331 755

국가	해당 국 연금관련 기관 정보			
	연금관련 기관명	관련 사이트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인도네시아	BPJS Ketenagakerjaan	http://www.bpjsketenagakerjaan.go.id	care@bpjsketenagakerjaan.go.id	(021) 520 7797
짐바브웨	국가 사회보장청 (National Social Security Authority)	http://nssa.org.zw	pr@nssa.org.zw	(+263) 4 723822 4
카메룬	국민사회보험금고 (National Social Insurance Fund)	http://www.cnps.cm	cnps.cameroun@cnps.cm	(+237) 222 22 46 01
케냐	국민사회보장금고	http://www.nssf.or.ke	info@nssfkenya.co.ke	(020) 2729911
콜롬비아	Colpensiones	http://www.colpensiones.gov.co		
태국	사회보장청	http://www.sso.go.th	helpdesk@sso.go.th	0 2622 2500-17
트리니다드토바고	국가사회보험위원회	http://www.nibtt.net	customercare@NIBTT.net / seminars@NIBTT.net	1(868) 625 4647
튀니지	국가사회보장기금 (National Social Security Fund)	http://www.cnss.tn		
필리핀	사회보장청	http://sss.gov.ph/sss/	member_relations@sss.gov.ph	(632) 920-401
홍콩	사회복지부 (Social Welfare Department)	http://www.swd.gov.hk	swdenq@swd.gov.hk	(852) 2343 2255
카자흐스탄	사회보험 정부기금	http://gfss.kz	info@gfss.kz	(7172) 695-722

국가	각 국 주재 한국대사관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번호
가나	http://gha.mofa.go.kr	ghana@mofa.go.kr	(+233) (0)302 776 157
그레나다			
말레이시아	http://mys.mofa.go.kr	korem-my@mofa.go.kr	(+063(4251-2336
바나아투			
버뮤다			
벨리즈			
부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수단	http://wdn.mofa.go.kr	sudan@mofa.go.kr	(+249)1-8358-0031
스리랑카	http://lka.mofa.go.kr	korembsl@mofa.go.kr	(+94) 11 2699036
요르단	http://jor.mofa.go.kr	jordan@mofa.go.kr	(962-6)593-0745~6
우간다	http://ken.mofa.go.kr(케냐)	emb-ke@mofa.go.kr	(+254) 20 361 5000
인도네시아	http://idn.mofa.go.kr	koremb_in@mofa.go.kr	62 21 2967 2555
짐바브웨	http://zwe.mofa.go.kr	zim@mofa.go.kr	(263-4) 756 541~4
카메룬	http://cmr.mofa.go.kr	cameroon@mofa.go.kr	((+237) 222 203 756

국가	각 국 주재 한국대사관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번호
케냐	http://ken.mofa.go.kr	emb-ke@mofa.go.kr	(+254) 20 361 5000
콜롬비아	http://col.mofa.go.kr	embacorea@mofa.go.kr	(+57) 1 616 7200
태국	http://tha.mofa.go.kr	koembth0404@mofa.go.kr	(622) 247 7537~39
트리니다드토바고	http://tto.mofa.go.kr	trinidad@mofa.go.kr	1 868 622 9081
튀니지	http://tun.mofa.go.kr	tunisie@mofa.go.kr	(216) 71 799 905
필리핀	http://embassy_philippines.mofa.go.kr	philippines@mofa.go.kr	(63-2) 856 9210
홍콩	http://hkg.mofa.go.kr	mkg-info@mofa.go.kr	(+852)2529 4141
카자흐스탄	http://kaz.mofa.go.kr	koreaemb-kz@mofa.go.kr	(+7) (7172) 790 490

단기과제 2017

소재불명자 등에 대한 지급정지제도 개선방안 검토

2017. 08

정인영 · 김아람

NPS 국민연금연구원

목 차

Ⅰ. 서 론 ····· 107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07
2. 연구 내용 및 방법 ····· 108

Ⅱ. 소재불명자 등에 대한 지급정지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109
1. 소재불명자 등에 대한 지급정지제도 관련 근거 ····· 109
2. 소재불명자 등에 대한 지급정지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112

Ⅲ. 공무원연금제도의 수급권 확인 절차 및 지급정지제도 ····· 115
1. 수급권 확인 절차 ····· 115
2. 지급정지제도 ····· 116
3. 일시중지제도 ····· 123
4. 행방불명자에 대한 급여지급 방법 ····· 125
5. 요약 및 시사점 ····· 130

Ⅳ. 해외 공적연금의 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정지제도 사례분석 ····· 131
1. 지급정지제도 ····· 131
2. 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정지제도 ····· 136
3. 요약 및 시사점 ····· 141

Ⅴ. 개선방안 검토 ····· 144
1. 단기적 개선방안: 일시중지만 적용하고 지급정지는 적용하지 않는 방안 ····· 144
2. 중·장기적 개선방안: 소재불명 기간 동안 일정 범위의 가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 ····· 146

참고문헌 ····· 149

표 목차

〈표 1〉 소재불명 등으로 인한 국민연금급여 지급정지자 현황 ····· 113
(2016년 7월 기준)

〈표 2〉 2015년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 관련 변경 내용 ····· 118

〈표 3〉 공무원연금 일시중지자 현황 ····· 129

그림 목차

[그림 1] 일본의 노후소득보장체계 ·····131

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 (현행 지침) 수급권자가 소재불명(가출, 실종, 거주불명등록 등) 상태인 경우 법 제86조 및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일시중지 및 지급정지

– 소재불명은 법 제121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2조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이며 법 제122조제1항 규정에 의한 수급권 또는 급여의 발생·변경·소멸·정지 등에 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됨

○ (문제점) 소재불명자에 대한 수급권 확인 결과 생존 또는 사망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지급정지기간 동안의 급여는 지급받을 수 없음

○ 소재불명자에 대한 해당 월의 연금 수급권을 영구히 소멸시키는 급여의 지급정지 처분은 과도한 행정처분이며, 일시중지(지급정지) 기간 동안 가족의 생계곤란을 방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이러한 배경에서 소재불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 후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급여지급을 일시 중지하고 급여지급을 정지하는 현행 업무처리 절차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됨

□ 연구 목적

○ 본 연구에서는 소재불명자 등에 대한 지급정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 특히, 소재불명자에 대한 수급권 확인의 목적 달성과 동시에 수급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 내용

○ 소재불명자 등에 대한 지급정지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공무원연금제도의 지급정지제도 및 행방불명자에 대한 급여지급 방법 분석
○ 해외 공적연금의 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정지제도 사례분석
○ 개선방안 검토

□ 연구방법

○ 국내외 관련 문헌연구
○ 통계분석
○ 해외사례분석
○ 관련 전문가 및 업무 담당자 의견 수렴

Ⅱ. 소재불명자 등에 대한 지급정지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소재불명자 등에 대한 지급정지제도 관련 근거

○ 법 제86조(지급의 정지 등) 및 시행령 제56조(지급의 일시 중지)

법 제86조(지급의 정지 등)

①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2조제1항에 따른 **공단의 서류, 그 밖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0조에 따른 공단의 진단 요구 또는 확인에 응하지 아니한 때
3.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회복을 방해한 때
4.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시행령 제56조(지급의 일시 중지)

① 공단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하려면 수급권자에게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급여의 지급이 정지될 수 있는 사유를 해소할 것을 재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촉을 받은 자가 기한까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달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이 일시 중지된 자가 그 **일시 중지 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면 그 일시 중지를 바로 해제하고, 그 동안 지급하지**

아니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일시 중지 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일시 중지한 기간을 포함하여 그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 법 제121조(수급권 변경 등에 관한 신고) 및 시행규칙 제52조(수급권 변경 등에 관한 신고)

법 제121조(수급권 변경 등에 관한 신고)
① 수급권자 및 수급자는 수급권의 발생 · 변경 · 소멸 · 정지 및 급여액의 산정 · 지급 등에 관련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②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제목개정 2016.5.29.]

시행규칙 제52조(수급권 변경 등에 관한 신고)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 및 수급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및 국내거소번호를 포함한다)나 주소(외국인의 국내체류지 및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를 포함한다) 등이 변경되거나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자가 변경되면 수급권자 및 수급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법」 제13조, 「출입국관리법」 제35조 · 제36조제1항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 · 제2항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정정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사항 또는 정정신고사항을 공단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9.12, 2016.11.29〉
[제목개정 2016.11.29]

○ 법 제122조(조사・질문 등)

법 제122조(조사・질문 등)
① 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또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나 **수급권 또는 급여의 발생・변경・소멸・정지 등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용자,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② 제1항에 따라 방문・조사・질문하는 공단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③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의 내용・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5.12.29〉

○ 복지부 연재65750-105(1997.3.14.) 및 공단81301-254(1997.3.19.) "연금수급권자 소재불명시 업무처리지침 및 유의사항 시달"

- **소재불명**의 경우는 시행규칙 제53조(현행 제52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내역변경신고 사항 중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로 간주**하여 처리함
- **소재불명의 확인**은 법 제101조(현행 제122조))제1항 규정에 의한 급여의 발생・변경・소멸・정지 등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아 **공단의 조사 또는 공적인 증빙자료에 의함**
- **소재불명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법 제100조(현행 제121조)제1항 규정에 의한 수급권 변경 등과 관련된 신고대상으로서 공단의 수급권자 관리규정 등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임(**일시중지 및 지급정지**)
  - 다만, 수급권자의 소재가 불명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관계인(배우자, 자녀, 부모 등)**에게 이러한 사항이 직접 통보되도록 조치할 것

2. 소재불명자 등에 대한 지급정지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

○ 소재불명*은 법 제121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2조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이며, 법 제122조제1항 규정에 의한 수급권 또는 **급여의 발생·변경·소멸·정지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 가출, 실종, 거주불명등록 등

○ 공적자료나 공단의 조사로 **소재불명이 확인된 경우에는 급여지급을 일시중지 및 지급정지** 처리함

– 소재불명 시작일이 아닌 자료제출 **의무이행촉구 기한일부터** 일시중지하며, 일시중지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그 기간을 포함하여 지급정지함

* 일시중지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나, 거주불명등록(주민등록말소)의 경우 3년임

자료제출 요구 및 의무이행촉구	⇨	일시중지(3년)	⇨	지급정지 (일시중지기간 포함)

○ 자료제출 불응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천재지변·사변·갑작스런 질병·부상 등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정

□ 현황

○ 2016년 7월 현재 소재불명 등으로 인한 급여지급 정지자는 752명임(〈표1〉 참조)

– 소재불명자 중 주민등록자는 자료제출 불응자로, 주민등록말소자는 소재불명자로 분류하고 있으며, 각각 434명과 318명임

– 총계는 유족연금이 313명으로 가장 많고,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이 각각 253명과 186명임

- 주민등록자이면서 자료제출 불응자는 유족연금이 188명, 장애연금이 169명이며, 노령연금은 77명임
- 반면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소재불명자는 노령연금이 176명으로 가장 많고, 유족연금이 125명, 장애연금은 17명임

〈표 1〉 소재불명 등으로 인한 국민연금급여 지급정지자 현황(2016년 7월 기준)

(단위 : 명)

구분	소계	자료제출 또는 진단요구 등 불응	소재불명
소계	752	434	318
노령연금	253	77	176
장애연금	186	169	17
유족연금	313	188	125

주: 소재불명자 중 주민등록자는 자료제출 불응자, 주민등록말소자는 소재불명자로 분류.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 문제점

○ 소재불명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및 의무이행촉구 절차의 적절성**

-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로 자료제출요구서 등을 발송하고 반송 시 공시송달한 후 급여를 일시중지하고 있으나, 애당초 **수령가능성이 없는 우편물을 송달**하는 것은 적절한 업무처리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음

○ 소재불명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정지처분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란

- 지급정지는 **해당월의 연금 수급권을 영구히 소멸**시키는 처분으로서 소재불명 또는 주소변동 미신고에 대한 제한으로서 적합하지 않으며, 과도한 행정처분이라는 의견이 존재함

* 1997년 복지부에 질의 당시 공단은 유족연금 외의 소재불명자에 대하여 명시적인 지급정지 규정이 없으므로, 수급권 소멸 또는 소재확인 시까지 급여지급을 보류하는 방안을 제시

○ 소재불명자의 사망이 확인되거나 생존하여 의무를 이행한 경우 **지급정지되었던 급여를 소급하여 받을 기회 박탈**

– 사망 전까지의 기간은 수급권이 존속하였으며 생존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수급권이 소멸된바가 없으므로, 단지 그 소재를 몰랐다는 이유로 해당기간의 수급권을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의견이 있음

○ 소재불명자에 대한 급여의 **일시중지(지급정지)로 배우자 등의 생계곤란 방치**

– 특히 실종신고자의 경우 실종기간(5년) 만료 및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된 이후 유족연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장기간 유족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상황이 발생

Ⅲ. 공무원연금제도의 수급권 확인 절차 및 지급정지제도

1. 수급권 확인 절차

□ 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하여 연금수급자의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신분상의 변동사항을 조사함

– 공단은 연금수급자의 거주지 또는 등록기준지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상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수급권 변경 또는 소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에 관한 조사 또는 이와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 또한 가능함(제1・2・3항)

–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는 매년 일정기간에 신분변동 사항에 대한 내용을 해당 거주국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함(제4항)

– 위와 같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공단은 급여를 일시 중지할 권리가 있고, 수급자에게는 급여지급이 중지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야함

제41조(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① 공단은 연금인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신분상의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금수급자의 거주지 또는 등록기준지의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상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② 제1항의 조사의뢰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③ 공단은 법 제8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급권의 변경 또는 소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수급자의 사망 · 이혼 · 생계유지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④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는 매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신분변동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재외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국가의 경우에는 그 인접국에 있는 재외공관의 장을 말한다)의 확인을 받아 매년 6월 30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2.〉
⑤ 공단은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85조제5항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급여의 지급이 중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5.12.22.〉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 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지급을 재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2.〉

2. 지급정지제도[1)]

□ 지급정지제도 변천 과정

○ 공무원연금의 지급정지제도는 퇴직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연금을 전액 또는 일부 정지하는 제도로, 1974년에 신설되어 점진적으로 제도개선 및 지급정지제도 적용기관을 확대함

– 1988년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적용되는 교직원을 연금정지 대상에 포함하였고, 1989년에는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연금을 전액지급정지에서 1/2 지급정지로 개정

1) 공무원연금공단(2016) 2016년 공무원연금 연차보고서, 최재식(2016) 공무원연금제도 해설 참조.

제47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금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0분의 160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6.22.〉

1. 이 법이나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2.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4.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의 지정 및 고시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6.22.〉

○ 제1차 연금개혁(1995년)

– 법 제47조 개정을 통하여 연금지급정지 대상기관을 모든 정부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확대하여 2000년부터 시행

○ 제2차 연금개혁(2000년)

– 종전에는 수급자가 공공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에만 연금을 감액 지급하였으나, 제2차 연금개혁 이후로 민간기업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도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에 연금급여액의 1/2 내에서 감액지급을 적용함(소득심사에 의한 연금일부지급정지제도 시행)

※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문제 등을 감안하여 시행시기를 개정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여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

- 또한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급여를 일부 제한하도록 함

○ 제3차 연금개혁(2006~2009년)

- 2009년에는 소득심사기준을 강화하여 수급자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 연금지급정지범위를 상향조정함
- 기존에는 수급자의 근로자 평균임금월액의 '최하 10%에서 최고 50%'까지 정지하였으나, 이를 '최하 30%에서 최고 70%'까지로 개정함

○ 제4차 연금개혁(2014~2015년)

- 2015년 연금지급정지제도를 강화하여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하거나, 공공기관 중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에 채용되어 취업하거나, 일정금액 이상의 고소득자로 재취업한 경우, 재직기간의 해당 연금을 전액 정지하도록 함
- 또한 소득심사기준을 근로자 평균임금월액에서 연금수급자 평균연금월액으로 변경하고 부동산 임대소득을 심사대상에 포함

□ 지급정지제도의 종류

○ 연금지급정지제도는 크게 전액정지와 일부정지로 구분됨.

○ 전액정지는 공무원연금수급자가 ①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②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③국가·지방자치

〈표 2〉 2015년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 관련 변경 내용

구분	종전(2015년 이전)	개정(2015년 이후)
전액정지	· 공무원으로 재임용시	· 선거직과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 · 재취업 고소득자도 전액 정지 포함
일부정지	· 정지기준: 근로자 평균임금월액 (2014년 기준 338만원) · 심사대상: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제외)	· 정지기준: 평균연금월액 (2014년 기준 224만원) · 심사대상: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포함)

자료: 공무원연금공단(2016), 2016년 공무원연금 연차보고서 p.18 표 일부 발췌.

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하는 연금을 전액 지급 정지함

* 연금액 전액 지급정지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지정 및 고시는 시행령 제40조의2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 다만,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이나,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에 취업한 수급자는 근로소득금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평균임금 대비 1.6배 미만이면 전액정지에 적용되지 않음
- 전액정지 관련 근거는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되어 있음

○ 일부정지(연금일부정지제도)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연금수급자가 연금소득 외의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심사를 통하여 연금급여액의 일부를 정지하는 제도임

- 수급자가 연금 외에 소득이 있고 그 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한 경우(초과소득월액 발생), 법 제47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 정지함
- 이 경우 지급정지액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연금 외의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임
- 사업소득은 해당연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고, 근로소득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임
- 일부정지 관련 근거는 법 제47조제3항 및 제4항에 명시되어 있음

제47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③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

(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퇴직연금액과 유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수급자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정지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액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6.22.〉

1.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한 소득월액(이하 “초과소득월액”이라 한다)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30
2. 초과소득월액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 15만원 + 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40
3.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인 경우: 3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50
4. 초과소득월액이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 60만원 + 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60
5.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90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70

④ 제3항에 따른 소득월액 및 평균연금월액의 산정과 지급정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2.〉

□ 지급정지 절차 및 방법

○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매년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해당연도 연금 정지금액을 정함

– 소득활동을 한 1년분의 소득금액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개월 수로 나누어 소득월액을 정하고, 그 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면 연금급여의 일부를 정지함(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과거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연금급여를 정지)

– 다만, 정지금액을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에 적용하여 우선 산정하고, 해당연도의 과세표준 소득월액이 확정되면 이를 기초로 정산함

– 만약 연금지급정지액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과세표준 소득월액이

확정되기 전에 관련근거를 제출하여야 함

- 지급정지액 정산과정에서 연금 외의 소득이 없다고 확인되면, 해당 연금월액의 20% 범위에서 정산차액을 공제함
- 시행령 제40조에서 이와 같은 지급정지절차를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제40조(퇴직연금 · 조기퇴직연금 및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②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소득월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만원 미만은 버린 금액으로 한다)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5.12.22.〉

③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 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일부 정지하되,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적용하여 우선 정지금액을 산정하고 제5항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은 후에 정산한다. 〈개정 2015.12.22.〉

④ 공단은 법 제85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해당 연도 퇴직연금등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퇴직연금수급자등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등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15.12.22.〉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퇴직연금등의 지급정지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은 후에 해당 연도 연금지급정지액을 확정하여 그 정산차액을 다음 달 이후의 퇴직연금등을 지급할 때에 가감하되, 퇴직연금수급자등이 연금지급정지액 조정신청서에 해당 연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연금지급정지액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공단은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기 전에 연금지급정지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정산차액을 퇴직연금등에서 공제하는 달에 퇴직연금수급자등이 퇴직연금등 외의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월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정산차액을 공제한다.

□ 지급정지 관련 기타사항

○ 수급자의 의무

–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에 임용된 경우, 임용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 급여산정

– 연금급여는 수급자가 소득활동 중에는 지급정지되었다가 다시 퇴직하면 지급정지기간 전후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액을 재산정하여 지급됨

○ 지급정지 적용기간

– 수급자의 연금급여를 정지할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급여지급을 정지함

– 단,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이 같은 날에 있으면 급여지급을 정지하지 않음(공무원연금법 제43조 제2항)

○ 분할수급권

–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였던 사람의 소득활동 등으로 인하여 그의 연금지급이 정지되더라도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반면,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형벌 등의 사유로 급여 감액 또는 정지되면, 분할연금도 이에 준용하여 적용됨(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 5)

○ 연계연금과의 관계

– 연계연금 수급권자도 연금수급권자와 동일하게 연금지급정지가 적용됨

– 만약 연계연금 수급권자가 다시 직역연금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가입기간 동안 연계연금은 전액 정지되고, 일정수준 이상의 연금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계연금은 감액지급됨(직역연금법 제5조 제3항)

3. 일시중지제도

□ 일시중지제도 개관

○ 수급권자가 행방불명(소재불명) 상태인 경우 법 제85조 및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일시중지 됨

– 행방불명은 법 제85조 및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한 신분상의 변동사항 파악 및 수급권의 변경 또는 소멸 등에 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됨

○ 공무원연금의 경우 수급권자가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연금지급을 일시 중지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되면 소급 지급

□ 일시중지 관련 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85조제1항 및 제5항

– 공단은 급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에 응할 때까지 급여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음

제85조(공단의 권한 등)

① 공단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연금취급기관 및 요양기관의 장, 그 밖에 급여에 관련된 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조사·질문하는 공단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15.6.22.〉

③ 공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제47조에 따른 소득 등의 조사와 그 밖에 공무원연금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8.4., 2015.6.22.〉
④ 제3항에 따라 공단이 제공받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 ·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5.6.22.〉
⑤ 제1항의 경우에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에 응할 때까지 급여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전문개정 2009.12.31.]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1조
- 공단은 연금인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신분상의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금수급자의 거주지 등의 신상조사를 수급권자의 지자체에게 요청할 수 있음(제1항)
- 공단은 수급권의 변경 또는 소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수급자의 사망 · 이혼 · 생계유지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제3항)
-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분변동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일지중지할 수 있음
  • 이 경우 지급중지가 될 수 있음을 미리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에게 알려야 함(제5항)
- 공단은 급여 지급 중지사유가 해소된 경우 즉시 지급을 재개해야 함(제6항)

제41조(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① 공단은 연금인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신분상의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금수급자의 거주지 또는 등록기준지의 특별자치도지사, 특별

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상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② 제1항의 조사의뢰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③ 공단은 법 제8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급권의 변경 또는 소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수급자의 사망·이혼·생계유지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④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는 매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신분변동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재외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국가의 경우에는 그 인접국에 있는 재외공관의 장을 말한다)의 확인을 받아 매년 6월 30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2.〉
⑤ 공단은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85조제5항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급여의 지급이 중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5.12.22.〉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 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지급을 재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2.〉
[전문개정 2012.3.2.]
[제목개정 2015.12.22.]

4. 행방불명자에 대한 급여지급 방법

□ 퇴직급여 수급권이 있는 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수급권자의 상속인은 청구에 의하여 그 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음**

□ 행방불명 사실의 증명

○ 행방불명 사실의 증명은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연금취급기관장이 확인함(시행령 제 44조제1항)

– 이 경우 행방불명자의 가족이 소재불명확인서를 포함한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퇴직급여 지급방법

○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행방불명되어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상속인은 행방불명자의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있고, 그 행방불명자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의 해당연금을 지급함(초기 3년간 감액 없음)

–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 3년이 지나도 행방불명된 수급권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달부터 해당 연금급여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인에게 지급함(유족급여 지급비율과 동일)

○ 행방불명된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상속인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함

– 만약 사망한 날이 상속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과 실제 받은 급여와의 차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공단에 반환하여야 함

– 만약 사망한 날이 상속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기존 지급액에 대하여 정산하지 않음

○ 행방불명된 수급권자가 생존한 경우

– 생존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행방불명되었던 자(수급권자)에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함

- 이 경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이 상속인에게 지급된 경우(행방불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 행방불명되었던 자는 그 지급한 기간의 급여액과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과의 차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음

○ 이와 같은 경우에 적용되는 이자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의미함(시행령 제44조제2항)

○ 법 제49조에서 행방불명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아래 참조)

제49조(행방불명자에 대한 퇴직급여)

①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유족의 범위에 해당되는 자여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될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퇴직급여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행방불명자의 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행방불명자가 이 법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의 해당 연금을 지급하고,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 3년이 지나도 행방불명된 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달부터 해당 연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후 행방불명되었던 자가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상속인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행방불명되었던 자가 사망한 날이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과 실제 받은 급여와의 차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공단에 내야 한다.

④ 행방불명되었던 자가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행방불명되었던 자에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퇴

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기간의 급여액과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상속인의 순위 및 퇴직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8조와 제29조를 준용하고, 제2항에 따라 급여를 받는 상속인의 수급권 상실에 관하여는 제59조를 준용한다.

□ 상속인의 순위 및 상속인의 행방불명

○ 수급권자의 행방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유족의 우선순위와 동일함
-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순위에 따라 우선순위자가 수령하며, 동순위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동일하게 나누어 지급함

○ 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 해당 연금을 동순위의 청구에 의하여 유족에게 지급함
- 동순위자가 없을 시에는 차순위의 청구에 의하여 유족에게 지급함
- 다만, 그 청구자는 권리를 이전 받은 것이 아니라 상속인의 행방불명에 따른 그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 받는 것으로 간주되어, 행방불명자의 생존이 확인되면 그 시점부터 수급권이 환원됨

제58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유족연금이나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동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동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고,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次順位者)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차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 행방불명에 따른 지급보류자(일시중지자) 현황

○ 2017년 5월 현재 자료제출 불응 또는 소재를 알 수 없는 일시중지자는 50명이고, 2016년 기준 연금수급자 대비 0.011%를 차지하여 그 규모가 상당히 적은 편임

– 공무원연금공단은 2016년 9월까지 누적된 일시중지자가 550여명에 달하였으나, 공단 차원의 상속인에 대한 소재파악 노력 및 상속인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2017년 5월 현재 일시중지자가 50명으로 현격히 감소하였음

– 즉, 상속인의 신청에 의해 행방불명자의 퇴직급여가 상속인에게 지급될 수 있는 제도의 특성상 상속인의 소재 미파악 또는 상속인의 사망·행방불명 확인서 미제출 등으로 과거에 행방불명에 따른 일시중지자 수가 누적되었으나,

– 상속인에 대한 소재파악 노력 및 다수의 상속인들이 장기간 미해결 행방불명자로 남겨져 있던 수급권자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일시중지자 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파악됨

〈표 3〉 공무원연금 일시중지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일시중지자(A)[1]	연금수급자(B)[2]	비율(A/B)
장애등급 진단요구 불응	20	-	-
사실혼 관계 자료제출 불응	20	-	-
사망의심	6	-	-
소재불명	4	-	-
총계	50	452,942	0.011%

주1: 2017년 5월 기준.
주2: 2016년 12월 31일 기준.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내부자료.

5. 요약 및 시사점

○ 지급정지제도의 주요 목적은 연금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한 수급권자가 소득활동이 있는 경우 급여를 정지하는 것임
- 전액정지: 연금수급자가 재임용된 경우(선출직 공무원 포함)
- 일부정지: 연금수급자가 연금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 결국, 지급정지 사유에 **행방불명자에 대한 지급정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행방불명 상태인 경우 연금지급을 **일시 중지**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되면 소급 지급

○ 수급권자의 행방불명에 따른 급여지급방식은 다음과 같음
-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행방불명되어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상속인은 청구에 의하여 퇴직연금을 수급할 수 있고, 초기 3년간 감액 없음
- 만약 3년이 지나도 수급권자가 계속적으로 행방불명인 상태라면, 그 다음 달부터 해당 연금급여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인에게 지급함
- 이는 유족급여 지급비율과 동일하기에, 수급권자가 3년 이상 행방불명 상태이면 수급권자가 사망하였다고 추정하는 것으로 보임
- 행방불명된 수급권자의 사망이 확인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수급권자가 생존한 경우에는 행방불명되었던 자(수급권자)에게 연금급여를 지급함
- 만일 행방불명 기간이 3년을 초과하여 연금급여의 60%가 상속인에게 지급된 경우, 행방불명되었던 자는 그 지급한 기간의 급여액과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과의 차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수급할 수 있음

○ 공무원연금의 이러한 급여지급방식은 수급권 확인의 목적 달성과 동시에 수급권을 보호하고, 배우자 등의 생계곤란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운영이라고 판단됨

Ⅳ. 해외 공적연금의 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정지제도 사례분석

1. 지급정지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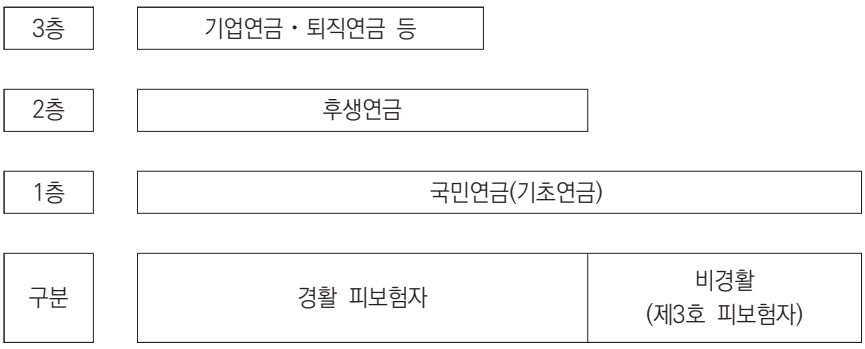
1) 일본

□ 일본의 노후소득보장체계

○ 일본의 공적연금제도는 크게 공공부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인 후생연금으로 구분됨

- 가입자는 제1・2・3호 피보험자로 나뉘고, 제1호 피보험자는 자영자 등 피용자에 적용되지 않는 경제활동자로 국민연금에만 가입할 수 있음
- 제2호 피보험자는 일반근로자나 공무원 등의 피용자가 그 대상이고 국민연금 및 후생연금에 모두 가입 가능함.
- 제3호 피보험자는 제2호 피보험자의 무소득 배우자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제2호 피보험자가 납부한 보험료 수입에서 해당 보험료 부담

[그림 1] 일본의 노후소득보장체계



□ 일본은 국민연금(기초연금)과 후생연금 모두 지급정지제도 및 행방불명에 관한 내용이 관련법령(厚生年金保険法과 国民年金法)에 명시되어있음

○ 본 장에서는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성격이 유사한 후생연금보험법(厚生年金保険法)[2]을 중심으로 작성함

□ 수급권 확인 절차

○ 수급권자에 관한 조사

– 일본의 시·읍·면장은, 실시 기관 또는 수급권자에 대해서 해당 시·읍·면의 조례에 의하여 피보험자 또는 수급권자의 호적사항을 증명할 수 있음(법 제95조)

– 실시기관은 수급권자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 연금수급권자에 대하여 그 사람의 신분·장애상태·수급권의 소멸·연금액 조정·지급정지가능 여부 등에 관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지원은 수급권자에게 이와 관련된 사항을 질의할 수 있음(법 제96조 제1항)

– 실시기관이라 함은 사무의 구분에 따라 후생연금 피보험자의 보험료와 관련되는 운용에 관한 후생노동대신(후생연금 담당자), 국가공무원 공제 조합 연합회, 지방공무원 공제 조합 연합회, 사립학교 교직원 공제법에 적용되는 사립학교 진흥·공제 사업단 등을 의미함(법 제2조의5)

○ 피보험자의 신고의무(법 제98조)

– 적용 사업장의 사업주 등은 후생노동성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자격취득 또는 상실, 보수월액 및 상여액에 관한 사항을 후생노동대신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

– 또한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신고 의무자는 10일 이내에 이를

2) 厚生年金保険法 (昭和二十九年五月十九日法律第百十五号) 참조.

후생노동대신에게 신고하여야함

- 실시기관은 피보험자의 이름, 자격의 취득 및 상실의 연월일, 표준보수, 기초연금번호 등을 기록하여야 하고, 피보험자의 보험료 납부실적 및 미래의 연금수급액 관련 정보를 통지하여야 함
- 제2·3호 피보험자 등은 실시기관이 피보험자의 신분 상태를 확인하므로, 동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함

□ 지급정지제도

○ 노령·장해·유족 후생연금의 급여 조정(법 제38조)

- 동일한 제도에서 둘 이상의 연금급여수급권이 발생하면 급여를 중복수급하지 못하도록 지급정지를 시행함
- 노령후생연금 수급권자가 다른 연금급여(유족후생연금 제외) 또는 후생연금보험법에 의한 연금급여(노령·장해·유족기초연금 및 부가연금 제외) 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기간에 있어서 연금급여 지급을 정지함
- 유족후생연금은 노령후생연금 수급권자와 동일하게 적용함
- 장해후생연금 수급권자가 다른 연금급여 또는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급여(장해기초연금 제외)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장해후생연금의 지급은 정지함

○ 노령후생연금의 지급정지(법 제46조)

- 수급권자가 국회의원·지방공공단체의원이거나 70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있는 자는 지급정지 대상임
- 해당 대상자의 지급정지금액은 다음과 같음(과거 1년 소득 기준적용).

① 총보수월액* + 기본월액* 〉 지급정지조정액*

- 총보수월액 = 표준보수월액 + (연간 상여금 총액 ÷ 12)
- 기본월액 = 노령후생연금액 ÷ 12
- 지급정지조정액 = 48만엔

• 이 경우,

{(총보수월액 + 기본월액) – 지급정지조정액} ÷ 2 × 12 = 지급정지기준액을 정지함.

② 노령후생연금액 〈 지급정지기준액

• 이 경우, 노령후생연금전액을 지급 정지함

– 즉, 총보수월액과 기본월액의 합이 지급정지조정액을 초과할 경우, 차액의 1/2만큼 기본월액이 감액되거나,

– 총보수월액과 기본월액의 합이 지급정지조정액을 초과하고, 그 차액이 기본월액을 초과할 경우, 연금급여 전액이 지급 정지됨

– 반면, 연금지급연기를 함으로써 지급정지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음

○ 장해후생연금의 지급정지(법 제54조)

– 장해후생연금 수급권자가 해당 질병에 대하여 노동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장해 보상을 받을 권리를 취득했을 경우, 6년간 그 지급을 정지함

– 또한 수급권자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장해상태에 해당하지 않는 동안 연금지급을 정지함

– 단, 65세 미만의 지급 정지된 수급권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후생연금의 지급사유와 장해정도가 장해등급의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시 장해후생연금을 수급할 수 있음

○ 유족후생연금의 지급정지(법 제 65조)

– 유족후생연금 수급권자가 해당 피보험자의 사망에 대하여 노동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유족 보상을 받을 권리를 취득했을 경우, 6년간 그 지급을 정지함

– 또한 유족후생연금 수급권자가 노령후생연금 수급권을 가질 때에는 해당 노령후생연금의 액수에 상당하는 부분의 지급을 정지함

– 만약 유족후생연금 수급권자가 피보험자의 사망에 관하여 국민연금

법의 유족기초연금을 지급 받으면, 그 사이 가산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의 지급은 정지됨

2) 미국

□ 미국은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에서 사회보장제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연금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에 의거하여 사회보장급여 관련 제도를 규정함

○ 지급정지(suspending benefits) 및 행방불명(whereabouts unknow)에 관한 제도 또한 사회보장청이 규정하는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시스템(Program Operations Manual System, POMS)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회보장급여 전체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음

□ 지급정지 관련 제도[3)]

○ 지급정지제도 개요

– 특정한 상황(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 알코올 중독자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사회보장청은 사회보장급여 수급대상자에게 급여를 직접 제공함

–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급여지급을 정지함

① 수급자에게 문제가 발생한 경우

② 새로운 수급자(상속자 등)가 없는 경우

③ 직접 지급이 금지된 경우

– 이는 수급자에게 급여를 직접 지급하기에는 수급자가 법적으로 무능력하다고 판단되거나, 수급자의 사망, 수급자의 희망에 따른 지급정지, 수급권 상실 등을 의미함

3) SSA, GN 00504.110 When We May Suspend Benefits (2016.04.15.) 참조.

-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지급정지나 사망 이외의 사유로 급여지급을 정지하려면, 해당 지역사무소(Field Office) 또는 운영기관(Processing Center)으로부터 지급정지 승인을 받아야 함

○ 퇴직급여 수급자의 지급정지

- 우리나라의 연기연금과 유사한 형태의 제도로, 수급권자가 급여수급 개시연령에 도달하였으나 만 70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퇴직급여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음
- 지급정지가 적용된 수급권자는 70세가 도달하는 달에 급여지급이 자동으로 재개되며, 70세 이전에 지급정지 해지를 원할 경우 언제든지 해지 가능

2. 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정지제도

1) 독일[4)]

□ 소재불명자 등에 대한 지급정지제도

○ 실종연금(Verschollenrente)

- 사망진단서(확인서) 또는 법에 따른 사형선고가 존재할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사형선고 결과가 연금공단에 송부됨
  - 이 경우 연금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이 정지되며, 유족연금 수급권이 결정됨
- 그러나 사망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예를 들면, 범죄, 홍수, 비행기 추락 등으로 인한 실종

- 만일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실종된 경우 연금공단은 공적

4) 독일사회법전(Sozialgesetzbuch) Band 1 및 Sozialversicherung kompetent 홈페이지 참조.

연금법의 특별규정(사회법전 제6권 49조)에 근거하여 연금청구에 관한 조사에 착수해야하고 사망으로 인한 연금급여(실종연금)를 상속인에게 지급할지, 또는 실종자에게 현재 지급되고 있는 연금급여를 정지시켜야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함

- (실종연금 수급 요건) 여러 상황들을 고려할 때 실종자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1년간 실종자의 생존 소식을 접하지 못한 경우 사망으로 간주하고 상속인에게 실종연금 지급

○ 실종자를 사망으로 간주하기 위한 전제조건 및 절차

-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실종됐다는 보고가 제3자*에 의해 연금공단에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자녀, 다른 서비스제공자, 연금공단, 은행 등

- 연금공단은 사망으로 추정되는 날짜를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사망 추정일은 법원으로부터 사형이 선고되지 않는 이상 가상의 날짜일 수밖에 없음
- 실종법(The Absence Law)이 제시하는 사망의 최종기한은 다음과 같음
  - 일반적인 실종: 마지막 생존 확인일로부터 10년(80세 이상의 경우 5년)
  - 전쟁 참전 군인: 종전일로부터 1년
  - 난파선: 선박 침몰일로부터 6개월
  - 비행기 추락: 추락일로부터 3개월
- 실종법에 따른 사망선고를 위한 최종기한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공단은 사회법전 제6권 49조에 의거하여 상속인에게 실종연금 수급권을 부여할지 또는 실종자에 대한 현재의 연금수급권이 계속 유효한지 여부를 조사해야 함
- 독일법정의 판결에 의하면 실종이 시작된 날이 반드시 사망일은 아님
  - 그보다는 오히려 조사결과에 따라 가장 가능성이 높은 날이 사망일로 결정되어야 함

- 만일 사법상의 결정 또는 사망일 확인에 의해 다른 사망일이 선고된다하더라도 연금공단이 결정한 사망일은 여전히 유효함(2015.4.22. 사회법전 제6권 49조 개정)

○ 실종되었던 자가 다시 나타날 경우 부정수급이 아니면 상속인에게 지급된 연금액을 다시 환수할 필요가 없음

- 이 경우 실종되었던 자의 퇴직연금 수급권이 회복되며, 생존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실종되었던 자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하여야 함(사회법전 제6권 102조)

○ 실종연금의 급여수준은 유족연금의 급여수준과 동일(노령연금액의 약 절반 수준)

○ 실종연금제도는 1957년부터 존재했으나 해당 사례가 매우 적으며 현재 실종연금 수급자는 없는 상황임

2) 영국[5)]

□ 소재불명자 등에 대한 지급정지제도

○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에서 퇴직급여 수급권자에게 우편물을 발송하고, 그 우편이 반송될 경우 소재불명자에 대한 조사가 시작됨

- 조사 시작 후 32주가 경과되어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급여지급이 중지되며, 드물게는 지급이 정지되기도 함
- 이는 수급권자가 의견을 표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절차임
- 급여지급의 중지 또는 정지의 결정은 사례에 따라 다르게 결정

5) 영국 출장시 DWP의 Les Weatherson과의 인터뷰 내용 및 Rowland and White (2013)를 바탕으로 작성.

○ 소재불명 상태가 해소된 경우, 급여 지급을 재개함

○ 행방불명인 상태가 7년 이상인 경우, 사망 추정 선언(declaration of presumed death)을 대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성공적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사망으로 추정

– 사망일자가 명확하지 않는 한, 수급권자의 행방불명이 확인된 날짜를 사망일로 정하고 수급권 역시 해당일에 소멸됨

3) 스웨덴[6)]

□ 연금수급권 확인 절차 및 지급 정지 사례

○ 스웨덴의 경우 국세청이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인구등록 시스템이 매우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금청, 사회보험청, 지자체, 은행 등과 긴밀하게 서로 연계되어 있고, 실시간으로 자료를 공유하고 있음

– 따라서 국내 거주 연금수급자의 경우에는 소득비례연금(Income Pension 또는 Premium Pension)수급자와 관련해서 연금수급이 중단되는 사례가 거의 없음

– 또한 소재불명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이와 관련된 공적연금 관련 규정도 없음

○ 그러나 만일 국내 거주 연금수급자가 소재불명 또는 행방불명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연금청은 조사에 들어가게 되며, 필요할 경우 은행 등과 협조할 수 있음

○ 그리고 조사 결과 소재불명자 또는 상속인이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 이하의 저소득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공공부조제도 등의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도 논의하게 됨

6) 스웨덴 출장시 스웨덴연금청의 Tora Philp과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 한편, 국내 연금수급자와는 달리, 정보의 전자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에 거주하는 해외 연금수급자의 경우 생존확인서(life certificate)에만 의존해야 하므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필요할 경우 지급정지 등을 결정해야 함

4) 미국

□ 행방불명 관련 절차[7)]

○ 행방불명의 정의
- 수급권자의 행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수행하였고, 수급권자의 가장 최근 소재지에서 수급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행방불명으로 정의

○ 수급권자의 행방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급여의 지급이 중지됨
- 지역사무소(Field Office)는 수급자의 최근 주소지로 급여지급이 중지될 것을 사전 통보하여 고지함

○ 행방불명인 상태가 해소된 경우, 급여지급을 재개함
- 다만, 수급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계속 혜택 여부를 결정하여야함

○ 행방불명인 상태가 7년 이상인 경우, 사망으로 추정함
- 성인인 수급권자가 7년 동안 연속적으로 행방불명인 상태로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수급권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함
- 사망일자가 명확하지 않는 한, 수급권자의 행방불명이 확인된 날짜를 사망일로 정하고 수급권 또한 해당일에 소멸한 것으로 처리함

7) SSA, GN 02602.320 Whereabouts Unknown (2014.03.14.) 참조.

5) 일본

□ 행방불명자에 대한 후생연금

○ 일본의 후생연금은 특정상황이 발생하여 피보험자의 생사를 모르는 행방불명 상태가 되면 사망으로 간주하여 유족후생연금을 지급하도록 함

○ 사망의 추정(법 제59조의2)

– 선박의 침몰・전복・멸실・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선박에 탑승 또는 항해하고 있던 피보험자가 행방불명되고, 그 시점으로부터 생사를 3개월 이내에 알 수 없거나, 피보험자의 사망이 3개월 이내에 분명해졌으나 그 사망의 시기를 모르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

– 또한 항공기의 추락・멸실・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항공기에 탑승 또는 항해하고 있던 피보험자가 행방불명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따라서 유족후생연금의 수급권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실종선고를 받은 자, 행방불명자 포함)에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법 제58조에 명시되어 있음

3. 요약 및 시사점

□ 미국

○ 미국은 우리나라의 분립적인 사회보험 운영형태와 달리 통합적인 형태로 운영되어 공적연금 지급형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확인할 수 없음

– 반면에 사회보장급여의 일반규정에서는 해당 급여 또는 수당을 받는 수급권자가 행방불명자로 확인되면, 급여의 지급이 중지되고, 7년 이상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사망으로 추정하여 수급권이 소멸됨

– 그러나, 수급권자에 따라 사망처리가 된 경우 상속인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며, 이는 사회보장급여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일본

○ 일본은 중복수급 · 소득활동 · 노동기준법상 보상금 수급여부에 따른 지급정지제도가 존재함

– 즉, 둘 이상의 연금급여수급권이 발생하면 급여를 중복수급하지 못하도록 지급정지를 시행하거나, 수급권자가 국회의원 · 지방공공단체 의원 또는 70세 이상인 자 중 소득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지급정지를 시행함

– 또한 장해 · 유족후생연금 수급권자가 해당 질병 · 사망에 대하여 장해 · 유족 보상을 받을 권리를 획득했을 경우, 6년간 그 지급을 정지함

○ 일본의 후생연금은 선박의 침몰이나 항공기의 추락 등 특정상황이 발생하여 행방불명 상태가 된 수급권자를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여 유족후생연금을 지급함

– 그러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실종으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은 행방불명에 대한 수급권자를 사망자로 추정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음

○ 따라서 지급정지제도와 행방불명자에 대한 제도는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고, 수급권자의 상태에 따라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독일

○ 독일은 여러 상황들을 고려할 때 실종자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1년간 실종자의 생존 소식을 접하지 못한 경우 사망으로 간주하고 상속인에게 실종연금 지급

–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실종됐다는 보고가 배우자 등 제3자에 의해 연금공단에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연금공단은 사망으로 추정되는 날짜(법원으로부터 사형이 선고되지 않는 이상 가상의 날짜)를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만일 사법상의 결정 또는 사망일 확인에 의해 다른 사망일이 선고된다하더라도 연금공단이 결정한 사망일은 여전히 유효함

○ 실종연금의 급여수준은 유족연금의 급여수준과 동일

○ 실종되었던 자가 다시 나타날 경우 퇴직연금 수급권이 회복되며, 생존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실종되었던 자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하여야 함

□ 영국

○ 영국은 퇴직급여 수급권자에게 발송한 우편물이 반송될 경우 소재불명자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고, 32주가 경과되어도 소재확인이 되지 않으면 급여지급이 중지되며, 드물게는 지급이 정지되기도 함

– 이는 수급권의 의견을 표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절차임

○ 행방불명인 상태가 7년 이상인 경우, 사망 추정 선언을 대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성공적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사망으로 추정하여 수급권이 소멸됨

– 그러나, 미국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수급권자에 따라 사망처리가 된 경우 상속인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음

□ 스웨덴

○ 스웨덴은 국세청이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인구등록 시스템이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금청, 사회보험청, 지자체, 은행 등과 긴밀하게 서로 연계되어 있고, 실시간으로 자료를 공유함으로 인해 국내 거주 소득비례 연금수급자의 경우 급여지급이 중단되는 사례가 미미함

– 또한 소재불명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이와 관련된 공적연금 관련 규정도 없음

○ 그러나 만일 국내 거주 연금수급자가 소재불명 또는 행방불명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연금청은 은행 등과 협조하여 조사에 들어감

Ⅴ. 개선방안 검토

□ (개선방향) 수급자 소재불명 등의 경우 수급권 확인의 목적과 수급권 보호의 목적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 모색 필요

1. 단기적 개선방안: 일시중지만 적용하고 지급정지는 적용하지 않는 방안

□ 일시중지만 적용하는 방안의 타당성 검토

○ 급여의 지급정지는 **해당월의 연금 수급권을 영구히 소멸**시키는 처분으로서 소재불명 또는 주소변동 미신고에 대한 제한으로서 적합하지 않고 행정처분으로서 과도한 측면이 있음

○ 소재불명을 이유로 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는 사례는 독일, 영국,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움

○ 급여의 지급정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법 제86조제1항 각호를 보면,

– 제1호와 제2호는 공단의 요구에 불응하여 수급권의 변경 · 소멸 · 정지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한 경우이고, 제4호는 법 제121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수급권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또는 부양가족연금 계산대상자 등이 변경된 경우 신고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임

– 반면에, 제3호는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요양지시에 불응하여 회복을 방해한 경우, 그렇지 않았다면 지급될 장애연금액 보다 과다한 연금액이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임

– 결국, **제1호, 제2호 및 제4호는 수급권의 변동사실을 공단에 알리도록 강제**하기 위한 규정이고, **제3호는 수급권의 인위적인 변동이나 유지를 막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음

○ 법 제86조제1항제3호는 법 제82조(급여의 제한)제2항과 통합하여 규정
- 제82조제2항은 가입자(였던 자)가 요양지시에 불응하여 장애·사망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와 장애를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 급여의 지급을 50%~100% 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시행령 제55조)
- 이와 달리 **장애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 일시중지 및 지급정지 절차에 따르도록 규정할 타당한 이유가 없음

○ 이러한 이유로 법 제8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일시중지 사유로 규정 가능**
- 수급권의 변경·소멸·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급여의 **지급을 중지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소재불명자에 대한 일시중지 절차 및 기간 개선방안

○ **행방불명신고, 실종신고 및 주민등록말소자**의 경우 법 제1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의무이행촉구 없이 일시중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동 소재불명자의 경우 제122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공적자료에서 소재불명이 확인되면 바로 일시중지 처리
- 반면에 법 제8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불응한 경우에 대한 일시중지 절차는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의무이행촉구 등)

○ **일시중지기간**은 **수급권이 소멸한 때 또는 소재가 확인될 때까지** 지속(현행 최대 3년)
- 일시중지 중 수급권 소멸이 확인된 경우 그 소멸일이 속한 달까지의 급여는 미지급 급여로 유족에게 지급하고, 수급권자의 소재가 확인된 경우에는 일시중지된 급여를 수급권자에게 소급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2. 중·장기적 개선방안: 소재불명 기간 동안 일정 범위의 가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

□ 소재불명 상태가 1년이 경과하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여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방안(1안)

○ 여러 상황들을 고려할 때 소재불명자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소재불명 상태가 **1년이 경과하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여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독일의 실종연금 참조

– 공단은 사망으로 추정되는 날짜를 결정(사망 추정일은 법원으로부터 사형이 선고되지 않는 이상 가상의 날짜)할 책임이 있음

• 사망일자가 명확하지 않는 한, 수급권자의 소재불명이 확인된 날짜를 사망일로 정하고 수급권 또한 해당일에 소멸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만일 사법상의 결정 또는 사망일 확인에 의해 다른 사망일이 선고된다하더라도 연금공단이 결정한 사망일은 여전히 유효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 필요

– 소재불명자의 생존이 확인될 경우 소재불명자의 수급권이 회복되며, 생존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소재불명 상태였던 자에게 연금 지급

– (장점) 수급권 확인의 목적과 수급권 보호의 목적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으며, 유족의 경제적 어려움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음

– (한계) 법 제15조의 사망의 추정* 조항과의 관계, 수급권자의 생존 확인 시 유족연금 환수 문제, 사망을 전제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에 대한 불만이 제기될 수 있음

* 민법상 특별실종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간 생사를 알 수 없을 때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소재불명 상태가 1년이 경과하면 배우자 등에게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지급하는 방안(2안)

○ 수급권자의 소재불명 상태가 **1년이 경과하면 배우자 등에게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공무원연금 참조

- 수급권이 있는 자가 소재불명 되어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수급권자의 배우자 등은 **청구에 의하여**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함(초기 3년간 감액 없음)
- 배우자 등의 연금 수급 후 3년이 지나도 소재불명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유족연금액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배우자 등에게 지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소재불명 사실의 증명은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연금취급기관장이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 가능
  - 이 경우 소재불명자의 가족이 소재불명확인서를 포함한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도록 함
- (소재불명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유족에게 유족연금 지급
  - 만약 사망한 날이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과 실제 받은 급여와의 차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공단에 반환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만약 사망한 날이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기존 지급액에 대하여 정산하지 않음

- (소재불명자가 생존한 경우) 생존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소재불명 상태였던 자(수급권자)에게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지급하는 방안 검토 가능
  - 이 경우 유족연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가족에게 지급된 경우(소재불명 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 소재불명자에게 그 지급한 기간의 급여액과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과의 차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장점) 수급권 확인의 목적과 수급권 보호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으며,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음
- (한계) 공단이나 가족이 수급권자의 소재를 모른다는 이유로 일신전속적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으며, 가족이 동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 존재

참고문헌

공무원연금공단(2016), 2016년 공무원연금 연차보고서.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 일시중지자 현황, 공무원연금공단 내부자료.
공무원연금법(2017), 공무원연금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국민연금법(2017), 국민연금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국민연금공단, 소재불명 등으로 인한 국민연금급여 지급정지자 현황,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최재식(2016), 공무원연금제도 해설.
厚生年金保険法 (昭和二十九年五月十九日法律第百十五号).
Deutsche Rentenversicherrung Bund (2017), Sozialgesetzbuch (독일사회법전) Band 1.
Rowland, M. and White, R. (2013), Social Security Legislation 2012/13 Volume 3, Administration, Adjudication and the European Dimension, Sweet and Maxwell.
Sozialversicherung kompetent, Renten wegen Todes bei Verschollenheit, https://sozialversicherung-kompetent.de.
SSA, GN 00504.110 When We May Suspend Benefits (2016.04.15.).
SSA, GN 02602.320 Wheareabouts Unknown (2014.03.14.).

단기과제 2017

사망일시금 지급액 산출기준의 적정성

2017. 12

김혜진 · 유현경

NPS 국민연금연구원

목 차

Ⅰ. 검토배경 ····· 157

Ⅱ. 사망일시금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 159
1. 사망관련 급여제도의 현황 ····· 159
2. 사망일시금의 주요 내용 ····· 161
3. 사망일시금 주요 현황 ····· 166
4. 사망일시금 관련 문제점 ····· 172

Ⅲ. 사망일시금 관련 국내 사례 연구 ····· 178
1. 공무원연금제도 ····· 178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 ····· 180
3. 군인연금제도 ····· 182
4. 시사점 ····· 187

Ⅳ. 사망일시금 관련 해외 사례 연구 ····· 188
1. 주요 국가의 사망일시금 운영현황 ····· 188
2. 주요 국가의 사망일시금 산출기준 사례 ····· 191
3. 시사점 ····· 201

Ⅴ. 논의 및 결론 ····· 203
1. 사망일시금 산정기준 개선안 논의 ····· 203
2. 결 론 ····· 208

참고자료 ····· 209

표 목차

〈표 1〉 사망자에 대한 조건 ····· 160
〈표 2〉 유족에 대한 조건 ····· 160
〈표 3〉 사망일시금 관련 법령 개정 연혁 ····· 164
〈표 4〉 반환일시금이 미지급액인 경우 ····· 166
〈표 5〉 연도별 사망일시금 지급 현황 ····· 168
〈표 6〉 사망일시금 성별·연령별 현황 ····· 170
〈표 7〉 사망일시금 성별·연령별 현황 ····· 171
〈표 8〉 주요국 사망일시금 제도 내용 ····· 189
〈표 9〉 캐나다 사망일시금 및 사망관련 급여 ····· 192
〈표 10〉 미국 사망일시금 및 사망관련 급여 ····· 194
〈표 11〉 일본 사망일시금 및 사망관련 급여 ····· 196
〈표 12〉 이탈리아 사망일시금 및 사망관련 급여 ····· 198
〈표 13〉 이탈리아 사망일시금의 유족 수에 따른 급여액 비중 ····· 199
〈표 14〉 사망일시금 관련 개선방안 ····· 206

그림 목차

[그림 1] 사망일시금 수급자 증가추이 ····· 167

[그림 2] 사망일시금 1건당 평균금액 증가추이 ····· 168

Ⅰ. 검토배경

□ 국민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 제73조에 의한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음

○ 즉 사망일시금은 가입자의 사망에 대한 보상과 위로 측면에서 지급되는 장제부조적·보상적 성격의 연금급여형태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사망일시금은 제도가 도입된 1995년 이후 유족범위에 대한 기준은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으나 지급액 산출기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개선논의가 부족한 실정임

○ 먼저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최종기준소득월액[1](가입중 결정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 중 마지막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음

○ 하지만 제도가 성숙해나감에 따라 가입자의 가입기간이 증가되면서 총 납부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 사망일시금 한도액 산출기준이 마련된 시기가 약 20년이 경과했음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현재 사망일시금 한도액 산출기준에 의하면 가입기간이 짧은 자가 사망할 경우 그 유족은 사망한 가입자의 납부보험료와 비슷한

1) 이 때 기준소득월액은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사망일시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임.

수준으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나 성실납부자와 가입기간이 긴 자 또는 가입기간동안 평균 소득월액이 높은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그 유족은 사망한 가입자의 납부보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를 수령할 수 있음

○ 또한 사망일시금을 산출하는 기준으로 '가입중 결정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 중 마지막 기준소득월액' 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최종 소득월액 변경을 통해 일시금 한도를 증액하는 등 적용기준을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그동안 연구가 부족했던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액 산출기준의 적정성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 즉 사망일시금의 주요내용과 현황을 파악한 후 사망일시금 산출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한도액 산정기준의 적정성을 논의하고자 함

○ 또한 국내 직역연금제도 및 해외 공적연금의 사망관련 일시금 사례 등의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사망일시금 지급액 산출기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사망일시금의 주요 내용[2] 및 문제점

1. 사망관련 급여제도의 현황

□ 국민연금에서 사망관련 급여제도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는 경우 발생하는 급여로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그리고 사망일시금이 있음

○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과 달리 사망관련 급여는 국민연금에 기여한 가입자와 급여를 수급하는 수급자가 분리됨

– 급여수급요건이 사망자에 대한 조건과 급여수급 대상자인 유족에 관한 조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사망관련 급여가 결정됨

– 1차적으로 사망자에 대한 조건으로 가입기간, 체납기간, 질병·부상의 가입 중 발생여부, 사망시기 등에 따라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으로 결정됨(〈표 1〉)

– 2차적으로 유족의 신분관계조건과 생계유지조건의 충족여부를 파악하고 이후 사망자에 대한 요건에 따라 결정된 급여를 지급받음

– 유족의 신분관계와 생계유지조건은 「국민연금법」 제73조에 의하며(〈표 2〉), 법 73조에 해당하는 유족이 있는 경우 사망자에 대한 조건에 따라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으며, 유족이 없는 경우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음

○ 즉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했으나 수급요건을 갖춘 유족이 없을 때 발생되는 급여임

2) 사망관련 주요내용은 정규과제(2009-03) “사망관련 급여제도 개선방안 검토”(유호선, 홍성우)와 단기과제(2013) “연금의 최소지급기간 보장제도 도입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임.

〈표 1〉 사망자에 대한 조건

- 2016.11.30. 전 사망

구분		가입자의 사망(가입중)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상실후)			
가입기간		1년 이상	1년미만		10년 이상	10년미만		
사망원인인 질병 · 부상의 발생		무관	가입중 발생	가입전 발생	무관	가입전 발생	가입중 발생	상실후 발생
미납제한	미해당	유족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해당	반환일시금						

- 2016.11.30. 이후 사망

구분		가입기간 및 보험료 체납여부			
가입기간		가입대상 기간의 1/3이상	사망일기준 5년중 3년이상		10년 이상
			체납3년이상	체납3년미만	
사망일 요건	충족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유족연금	유족연금
	미충족	반환일시금			

〈표 2〉 유족에 대한 조건

국민연금법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할 당시(「민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를 말한다)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6.05.29.〉

1. 배우자
2. 자녀. 다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3.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4. 손자녀. 다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② 유족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의 수급권이 제75조에 따라 소멸되거나 제76조에 따라 정지되면 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1.12.31.〉

③ 제2항의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며 그 유족연금액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사망일시금의 주요 내용

가. 도입배경

○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사망관련 급여인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은 배우자,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녀,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에 한정됨

○ 이로 인해 18세 이상 혹은 60세 미만의 유족만 있는 경우(예, 미혼 가입자 등) 사망한 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음에도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어 민원이 발생함

○ 이런 민원에 대한 대응으로 국민연금은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유족에게도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여 민원불만을 일부 해소함으로써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고 연금의 수혜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사망일시금 도입을 논의함

○ 특히 국회에서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유족에게 장제부조적·보상적 성격의 일시금을 지급하라는 검토의견이 제시되었고, 이에 정부는 1995년 7월부터 사망일시금 제도를 시행함

나. 사망일시금 주요내용 및 변경연혁

□ 수급조건

○ 현행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에 제73조에 따른 유족이 없으면 그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국민연금법 제80조 제1항)

○ 하지만 유족이 가출이나 실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유로 행방불명일 경우 사망일시금은 지급하지 않고,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에게 지급함

○ 결론적으로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는 신분요건과 행방불명에 대한 요건을 충족한 유족 중 선순위자가 수급권자가 되며,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신분요건, 행방불명요건이외에 생계유지요건을 모두 충족한 유족 중 선순위자가 수급권자가 됨

□ 사망일시금 금액산정방식

○ 사망일시금 지급금액은 납부보험료에 이자를 합산하여 산정되나 사망일시금의 금액산정방식을 통해 지급한도가 적용되고 있음(국민연금법 제80조제2항)

– 먼저 사망일시금은 사망사유 반환일시금[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3) 사망사유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다음의 경우 지급함
가. 2016.11.30. 전 사망한 경우
- 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연금보험료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으로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사망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이 가입 중에 발생하지 않는 경우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나. 2016.11.30. 이후 사망한 경우
-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그 금액이 가입자였던 기간의 최종 기준소득월액과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B값)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음[4)]

- 가입자였던 최종 기준소득월액은 징수권 소멸과 관계없이 가입 중 결정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연금보험료 납부여부 무관) 중 최종 기준소득월액으로 하되, 법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제1항에 따라 일부납부월 등 가입기간 산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연금보험료가 고지되는 않는 기준소득월액은 제외됨

□ 주요 연혁

○ 1995년 사망일시금이 신설된 이후 유족의 행방요건, 생계유지조건 등 수급요건을 중심으로 개정되었으며 주요 법령개정은 〈표 3〉과 같음

○ 먼저 제도신설당시 사망일시금을 수급하는 유족의 범위는 가입자(였던 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이었으나 1999년 1월 이후 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사망일시금 유족범위에 추가됨

○ 이후 2007년 법 개정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그리고 형제자매의 경우 생계유지조건을 폐지하여 신분관계만으로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함(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 대한 생계유지조건은 그대로 유지)

○ 이런 개정은 사망일시금의 수급범위를 더욱 완화함으로써 사망일시금 청구과정에서 유족 범위 제한으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지급(〈표 1〉 참고)

4) 최종 기준소득월액과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은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사망일시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된 금액임.

〈표 3〉 사망일시금 관련 법령 개정 연혁

시행일	개정내용
1995.7.1.	○ 사망일시금제도 신설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종전법 제63조에 규정에 의한 유적이 없는 경우 가입자(였던 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그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순으로 수급권자가 됨 수급권자 중 동순위자가 2인이상 있을 때에는 균분하여 지급
1999.1.1.	○ 사망일시금 수급권자 확대 -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에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추가 - 유족의 생계유지요건을 시행령에서 규정(모든 급여)
2007.7.23.	○ 대상자별 수급요건을 구별하여 규정 - (행방요건)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 (생계유지요건) 4촌 이내의 방계혈족
2008.1.1.	○ 행방요건을 시행령에서 규정 - 행정관청이 행방불명 확인 후 1년 경과, 공단이 행방불명 확인
2009.12.30.	○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 대한 생계유지요건 개정[주1)] - 동거 또는 정기적인 생계비 지원을 한 경우로 인정
2012.7.1.	○ 대상자별 수급요건 및 행방요건 개선 - (행방요건) 모든 대상자[주2)] - (생계유지요건)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주1) 4촌 이내 방계혈족에 대한 생계유지요건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
①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인정
②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가입자(였던 자)가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에만 인정

주2) "행방요건"이란 신분관계가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권자에서 제외하는 요건
①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본문에 따라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거주불명으로 등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② 경찰서장이 가출 또는 실종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③ 1년 이내에 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는 경우로서 공단이 1년 이상 연락이 끊어진 사실을 확인한 경우

자료: 2017년 직무교재-급여관리, 국민연금공단. 저자재수정

다. 사망일시금과 다른 급여와의 관계

□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에 유족이 없을 경우 장제부조적·보상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급여임

□ 그러나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나 노령 및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해 가입자에게 급여혜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연금액을 지급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때 사망일시금 지급기준이 적용되고 있음

○ 먼저 국민연금의 유족의 범위 중 자녀와 손자녀는 19세 미만인 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손자녀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19세 도달로 소멸될 수 있음

– 이 경우 19세 도달 전까지 지급받은 유족연금의 총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음으로 노령·장애연금 수급권 취득한 시점에 수급권자의 사망 등으로 수급권 취득에 따른 혜택이 없는 경우 사망일시금 특례지급 규정을 운영하고 있음

– 예를 들면 노령연금 수급권자·장애연금(1급–3급) 수급권자가 수급권을 취득한 당월에 사망하여 미지급급여가 발생하지 않고,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도 발생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음

○ 또한 유족연금 등 연금수급권자에게 2007.7.23. 이후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반환일시금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사망일시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표 4〉 반환일시금이 미지급액인 경우

국민연금법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 ① 수급권자에게 이 법에 따른 2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국하고 제1항에 따라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금액을 선택한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한다〈개정 2016.5.29.〉
1.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 일 때를 제외한다) :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2.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반환일시금 일 때(선택한 급여가 장애연금이고,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반환일시금일 때를 제외한다): 제80조제2항에 상당하는 금액

3. 사망일시금 주요 현황

□ 1995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망일시금의 수급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16년 현재 26,578명(16,634건)으로 나타나고 있음. 사망일시금 수급자의 증가는 가입자 규모의 증가뿐만 아니라 사망일시금의 유족범위가 완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 먼저 1999년 사망일시금 수급권자의 범위가 기존의 배우자 · 자녀 · 손자녀 또는 조부모에서 배우자 · 자녀 · 손자녀 또는 조부모 ·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확대되면서 법 개정 이후 사망일시금 지급 건수가 크게 증가함. 예를 들면 법 개정해인 1999년도의 사망일시금 지급건수 2,328건이었으나 2000년도 지급건수는 3,016건으로 1999년도 대비 29.5%가 증가함

○ 또한 종전에는 생계유지조항을 전체 수급자에 적용했던 것에서 2007년 7월 이후 형제자매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만 적용되면서 사망일시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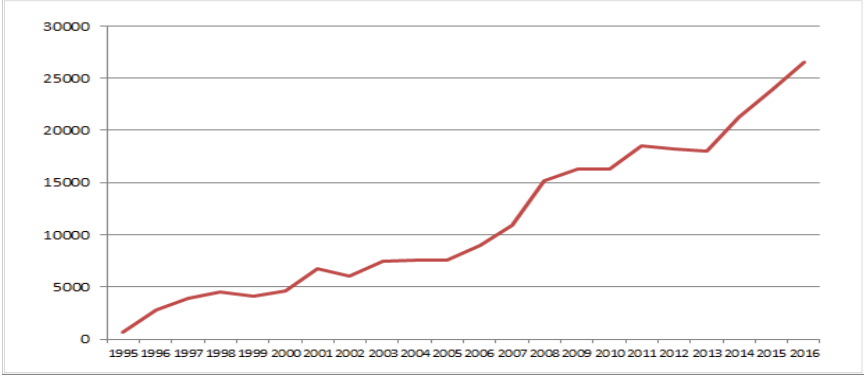
수급할 수 있는 유족의 범위가 더 확대됨으로써 2006년 수급자가 8,961명이었으나 2007년 10,917명으로 2006년 대비 21.8% 증가함.

○ 한편 사망일시금의 경우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액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데, 제도가 성숙해나감에 따라 가입자의 가입이력이 증가하여 납부액이 증가함으로써 사망일시금 급여액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1999년 기준 사망일시금 1건당 평균급여액은 1,709천원이었으나 2016년 기준 1건당 평균급여액은 3,027천원까지 증가함

[그림 1] 사망일시금 수급자 증가추이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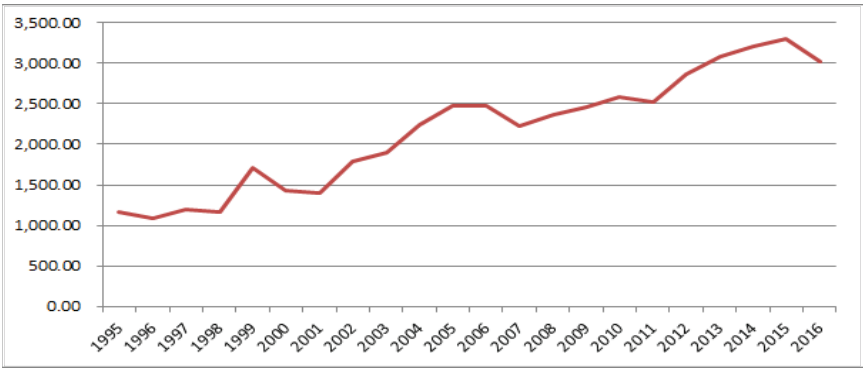


주1) 수급자 수는 동순위 수급자를 포함한 수이며, 건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수임.

자료: 2012년 국민연금통계연금, 2016년 국민연금통계연보, 국민연금공단

[그림 2] 사망일시금 1건당 평균금액 증가추이

(단위: 원)



주1) 수급자 수는 동순위 수급자를 포함한 수이며, 건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수임.

자료: 2012년 국민연금통계연금, 2016년 국민연금통계연보, 국민연금공단

〈표 5〉 연도별 사망일시금 지급 현황

(단위: 건, 명, 천원)

구 분	건수	수급자수	금액	1건당 평균금액
1995	425	686	493,532	1,161.25
1996	1,807	2,806	1,966,670	1,088.36
1997	2,300	3,890	2,745,854	1,193.85
1998	2,457	4,529	2,853,458	1,161.36
1999	2,328	4,092	3,979,753	1,709.52
2000	3,016	4,616	4,298,305	1,425.17
2001	4,585	6,794	6,384,217	1,392.41
2002	4,264	6,051	7,622,389	1,787.61
2003	5,434	7,477	10,327,587	1,900.55
2004	5,617	7,561	12,557,603	2,235.64
2005	5,768	7,615	14,258,591	2,472.02
2006	6,441	8,961	15,956,895	2,477.39
2007	7,591	10,917	16,924,195	2,229.51

구 분	건수	수급자수	금액	1건당 평균금액
2008	8,397	15,129	19,870,814	2,366.42
2009	9,759	16,259	24,027,369	2,462.07
2010	9,893	16,343	25,625,384	2,590.25
2011	11,631	18,490	29,286,806	2,518.00
2012	10,733	18,235	30,812,329	2,870.80
2013	10,644	18,025	32,897,146	3,090.68
2014	12,321	21,219	39,535,082	3,208.76
2015	13,949	23,949	46,100,845	3,304.96
2016	16,634	26,578	50,358,993	3,027.47

주1) 수급자 수는 동순위 수급자를 포함한 수이며, 건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수임.
자료: 2012년 국민연금통계연금, 2016년 국민연금통계연보, 국민연금공단

□ 다음으로 2016년 기준 사망일시금 수급자의 특성을 연령, 성별, 평균 지급액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는 〈표 6, 7〉과 같음

○ 먼저 성별을 살펴본 결과 남성과 여성의 비중이 비슷하였으나 45세부터 54세, 70세 이상에서 여성의 비중이 약간 높았음

○ 연령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전체 수급자 26,578명 중 50대가 29.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가 18.3%, 이후 30대, 40대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평균지급액은 수급자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 의미있는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으며, 이것은 사망일시금이 수급자와 가입자가 일치하지 않은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최옥금, 2011)

〈표 6〉 사망일시금 성별 ·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천원)

구 분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 (금액)	1명당 평균금액
총계	**계**	26,578	50,358,993	1,895
	남	13,202	23,738,343	1,798
	여	13,376	26,620,650	1,990
~9	계	22	50,726	2,306
	남	12	32,198	2,683
	여	10	18,528	1,853
10~14	계	33	78,683	2,384
	남	14	36,193	2,585
	여	19	42,490	2,236
15~19	계	248	696,510	2,809
	남	129	348,392	2,701
	여	119	348,118	2,925
20~24	계	2,107	5,523,569	2,622
	남	1,119	3,008,427	2,688
	여	988	2,515,142	2,546
25~29	계	2,763	6,969,173	2,522
	남	1,463	3,866,857	2,643
	여	1,300	3,102,316	2,386
30~34	계	2,583	5,389,869	2,087
	남	1,311	3,080,201	2,350
	여	1,272	2,309,668	1,816
35~39	계	1,275	2,071,615	1,625
	남	637	1,130,062	1,774
	여	638	941,553	1,476

주1) 수급자 수는 동순위 수급자를 포함한 수임.
자료: 2016년 국민연금통계연보, 국민연금공단

〈표 7〉 사망일시금 성별·연령별 현황

(단위 : 명, 천원)

구 분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 (금액)	1명당 평균금액
40~44	계	1,053	1,241,779	1,179
	남	555	603,907	1,088
	여	498	637,872	1,281
45~49	계	1,998	2,201,875	1,102
	남	910	935,483	1,028
	여	1,088	1,266,392	1,164
50~54	계	3,512	4,370,475	1,244
	남	1,649	1,741,726	1,056
	여	1,863	2,628,749	1,411
55~59	계	4,245	6,803,410	1,603
	남	2,151	2,951,588	1,372
	여	2,094	3,851,822	1,839
60~64	계	2,615	4,009,980	1,533
	남	1,424	1,878,486	1,319
	여	1,191	2,131,494	1,790
65~69	계	1,500	3,102,779	2,069
	남	776	1,437,380	1,852
	여	724	1,665,399	2,300
70~74	계	997	2,603,179	2,611
	남	442	994,910	2,251
	여	555	1,608,269	2,898
75~79	계	866	2,660,230	3,072
	남	348	898,775	2,583
	여	518	1,761,455	3,400
80세이상	계	761	2,585,141	3,397
	남	262	793,758	3,030
	여	499	1,791,383	3,590

주1) 수급자 수는 동순위 수급자를 포함한 수임.

자료: 2016년 국민연금통계연보, 국민연금공단

4. 사망일시금 관련 문제점

□ 사망일시금은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제도개선은 주로 유족의 범위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둔 반면 일시금 산정 기준의 적절성 특히 급여 한도액 선정 기준에 대한 검토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 그러나 국민연금의 제도 성숙으로 긴 가입기간을 보유한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사망일시금 한도액 산정기준이 적용되어 지급된 급여가 가입자의 납부 보험료에 훨씬 미치지 못하거나 장제부조라는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가입자 및 유족의 불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먼저, 사망일시금 산출기준의 적정성 대한 논의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유족에게 장제부조적·보상적 성격의 일시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인데, 현재 지급되는 금액이 장제부조의 취지에 부합되는 수준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망일시금의 평균적인 지급액은 2016년 기준 1건당 약 300만원 수준임

– 하지만 2007년 실시된 장의비 소요 비용 실태조사 결과 평균적인 장의비는 약 580만원 수준인 점(이필도 외, 2007)과 이후 물가상승률[5)]

5) 2007년도 이후 물가상승률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5	4.7	2.8	3.0	4.0	2.2	1.3	1.3	0.7	1.0

자료: 통계청 e-나라지표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사망일시금은 현실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물론 사망일시금으로 총 장제비를 충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현재 사망일시금의 금액수준은 장제부조의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부족할 수 있으므로 개선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둘째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하면서 긴 가입기간을 보유한 가입자의 규모가증가하고 가입자의 소득월액이 높아지면서 가입자의 최종 납부보험료 수준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 하지만 사망일시금 한도액 산정기준은 제도 도입 이후 변동된 적이 없어 사망일시금 급여가 총납부보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가 과거보다 빈번히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가입자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음

- 현재 적용되고 있는 사망일시금의 산출기준은 사망일시금 제도가 도입된 1995년도에 마련된 것으로,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가입 중 결정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 중 마지막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지급한도액을 정하고 있음
- 하지만 제도가 성숙하면서 긴 가입기간을 보유한 가입자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가입기간 평균적인 소득월액 수준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총 납부보험금액의 수준이 높아짐을 유추할 수 있음.

○ 예를 들면 2008년 기준 노령연금 및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자 중 20년 이상 가입기간을 보유한 자들이 약 6.51%였으나 2015년에는 약 18.81%로 증가함(신경혜・권혁진・송창길, 2016)

○ 또한 1995년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6]은 943천원이었으나 2016년

현재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은 2,227천원으로 약 20년 동안 2배 이상 상승함

○ 즉 최근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들의 가입이력 특성과 사망일시금 한도액 산정기준을 종합하여 고려해볼 때, 가입기간동안 평균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유지하고 장기간 납부하였지만 최종 기준소득월액이 낮아 사망일시금 한도액이 낮게 산정될 경우 등 납부 보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사망일시금을 받아 민원의 불만이 발생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음

○ 사망일시금이 보험료 청산보다는 장제부조 및 위로의 목적 하에 도입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한도액 산정기준으로 적용중인 '가입중 결정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 중 마지막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로만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성실 소득신고자와 성실 납부자를 역 차별하는 등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예를 들면 가입기간이 긴 성실납부자, 가입기간 동안 평균 소득월액이 낮은 저소득가입자, 또는 가입기간 동안 소득월액 높은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일시금 수급자는 사망한 가입자의 납부보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음(〈사례2〉 참고)

– 하지만 납부기간이 짧거나 소득월액이 낮은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또는 최종 소득월액만 높은 경우 사망일시금 수급자는 사망한 가입자의 납부보험료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사례1〉참고)

[사례 1] 'A' 가입자의 연금보험납부이력

2003.10~200403(6) 기준소득월액 1,660,000원
200404~200412(9) 기준소득월액 2,080,000원

6) 평균소득월액 :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총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그 총 가입자수로 나누어 산정(자료: 2017년 직무교재-급여관리, 국민연금공단)

200601~201010(58) 기준소득월액 1,130,000원
201011~201106(8) 기준소득월액 3,000,000원

① 보험료납부총액=10,639,800원(81개월)
② 최종기준소득월액*4=12,000,000
③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월액*4=6,345,029원
→ 'A'가입자의 사망일시금 한도액은 12,000,000원으로 결정됨. ②과 ③의 비율이 약 2배정도 차이가 발생함.
→ 이것은 최종 기준소득월액이 상대적으로 가입기간동안의 평균소득월액보다 높기 때문에 두 금액의 4배수 또한 격차가 크게 발생함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사례 2] 'B' 가입자의 연금보험납부이력

200006~200009(4) 기준소득월액 1,060,000원
200011~200011(1) 기준소득월액 1,060,000원
200105~200212(20) 기준소득월액 1,060,000원
200302~200302(1) 기준소득월액 1,060,000원
200306~201111(102) 기준소득월액 730,000원

① 보험료납부총액 = 7,784,100원(128개월)
② 최종기준소득월액*4 = 2,9200,000
③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월액*4 = 3,754,167원
→ 'B'가입자의 사망일시금 한도액은 3,754,167원으로 결정됨.
→ 이 가입자의 경우 10년 이상 납부했더라도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월액이 낮고, 최종 기준소득월액도 낮아 사망일시금 한도액이 총납부 보험료보다 낮게 산정됨.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 또한 사망일시금의 지급액 산정기준은 반환일시금과의 형평성차원에서도 논의할 수 있음

○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되는 일시금이 사망일시금과 반환일시금으로 나눠져 있음

– 각 급여의 수급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입기간, 사망 시기, 사망

원인 발생 시기 등을 파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유족에 해당하는지 신분관계 등을 파악해야 함

○ 하지만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적용기준을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으로 구분되어 운영해야 한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최옥금, 2011)

○ 더욱이 반환일시금의 경우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납부한 보험료를 전액 받을 수 있지만 사망일시금의 경우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도 '유족' 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사망일시금 한도액 적용으로 적은 연금액을 수급하게 되어 두 급여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즉 보험료 미납에 따라 지급제한을 두더라도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반환일시금 지급으로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이와 반대로 사망일시금은 성실한 납부자라 하더라도 유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예: 연령초과 등)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적은 금액을 수령하게 될 수 있음

○ 또한 사망일시금과 반환일시금의 수급자의 특성이 유사하다는 측면에서 사망일시금과 반환일시금의 산정기준 차이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최옥금(2010)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망일시금 수급자 비중 중 자녀의 비중이 38.6%로 가장 높았고, 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 기타 비중이 28.6%로 나타났음

– 이것은 자녀와 부모의 경우 반환일시금 수급조건인 연령 및 장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망일시금을 수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최옥금, 2011)

– 하지만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의 평균지급액 수준을 보면, 2016년 기준 '사망'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4,197천원이고 사망일시금은 약 3,000천원으로 반환일시금의 평균지급액이 높음

- 즉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는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 중 한 가지를 수급하게 되는데, 사망일시금의 급여수준이 반환일시금보다 낮아 제도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최옥금, 2011)

□ 요약하면 사망일시금의 지급액 산정방식은 장제부조 및 위로 취지의 제도 목적 달성여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성실납부자의 민원발생방지 및 '사망'에 따른 반환일시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Ⅲ. 사망일시금 관련 국내 사례 연구

□ 국내의 경우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다른 직역연금제도(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에서도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 뿐만 아니라 장제부조 및 위로금 성격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본 장에서는 국민연금의 사망일시금과 유사한 국내 직역연금 제도의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함

1. 공무원연금제도

□ 공무원연금에는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하거나,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지급되는 급여로 유족연금 등 장기급여와 단기급여인 사망조위금이 있음

□ 특히 장기급여 중 유족연금부가금과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은 유족연금 외에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일시금 형태의 급여임

□ 또한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한 유족이 없을 경우 별도의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가. 유족연금부가금

□ (수급요건 및 유족범위) 1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사망할 경우 다음의 유족에게 일시금을 지급함

- 배우자(재직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자로 한정,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 포함)

- 19세 미만인 자녀 또는 19세 이상인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자(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된 자녀 제외, 퇴직당시의 태아는 재직중 출생한 자로 봄)
-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 제외)
- 손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 제외. 퇴직 장시의 태아는 재직중 출생한 손자녀로 봄)
-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 제외)

□ (급여액) 퇴직연금 일시금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급액을 지급함

나.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수급요건) 퇴직연금수급자가 퇴직후 3년 이내에 사망할 경우

□ (유족범위) 유족연금부가금의 유족범위와 동일

□ (급여액) 퇴직일시금×1/4×(36−퇴직연금수급월수)/36

다. 사망조위금

□ (수급요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자녀가 사망할 경우

□ (유족범위와 수급액)

구분	공무원사망시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포함), 자녀 사망시
유족 범위	① 배우자 ② 직계비속 중 공무원 ③ 최근친 직계비속 중 연장자 ④ 최근친 직계존속 중 연장자 ⑤ 형제자매 중 연장자	① 부양하던 공무원 ② 배우자인 공무원 ③ 최근친 직계비속 공무원 중 연장자 ④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중 나이가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수급액	본인사망 : 기준소득월액[7]×195/100	공무원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8]×65/100

주1) 사망조위금 수급자가 여러명인 경우 선순위자 1인에게만 지급

라. 유족이 없을 경우

□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조항을 통해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공무원연금법 제30조에서는 유족이 없을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의 금액(표)을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하고 직계존비속도 없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급여의 지급은 상속받는 순위에 따르고, 유족 중 동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경우에는 급여를 균분하여 지급함(공무원연금법 제28조 및 제29조)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

□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이하 '사학연금'이라고 함)의 경우 공무원연금제도와 마찬가지로 퇴직연금과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장기급여 및 단기급여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장제부조적 성격의 사망조위금 제도를 운영함

---

7)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기여금 및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 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로 나눈 평균금액

8) 공무원전체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① '11.3.8~'11.4.30 : 3,730 천원 ② '11.5.1~'11.4.30 : 3,950 천원
③ '12.5.1~'11.4.30 : 4,150 천원 ④ '13.5.1~'11.4.30 : 4,350 천원
⑤ '14.5.1~'11.4.30 : 4,470 천원 ⑥ '15.5.1~'11.4.30 : 4,670 천원
⑦ '16.5.1~'11.4.30 : 4,910 천원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4조(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①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에 법 제30조에 따라 급여를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하거나 사망한 공무원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28〉

1. 연금인 급여: 사망 당시 원연금액(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 제46조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 지급연령이 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조기퇴직연금 상당액을 말하고,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미달연수 5년을 초과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 조기퇴직연금 상당액을 말한다)의 3년분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

[36 -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개월 수)] × 1/36

2. 단기급여: 원급여액 전액
3. 그 밖의 장기급여: 원급여액 전액. 다만, 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 및 순직유족보상금의 경우에는 원급여액의 2분의 1

②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도 없는 경우에는 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여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분묘·제기(祭器)·기념비 등을 마련하는 데에 사용하거나, 기념사업 등이나 사망 전의 요양비 충당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3.2.]

□ 또한 장기급여, 단기급여, 사망조위금에 관한 급여종류, 급여사유, 급여액 및 급여 제한 등에 관한 내용을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음(단,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

□ 사학연금제도도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조항을 통해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계존비속도 없을 때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관계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그 사망한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8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제24조(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①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에 법 제38조에 따라 급여를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하거나 사망한 교직원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4.12.31., 1991.12.31., 2000.12.30., 2013.11.29.〉

1. 연금인 급여에 있어서는 사망 당시 원연금액(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가 준용법 제4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지급연령 도달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조기퇴직연금상당액을, 준용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달연수 5년을 초과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미달연수 4년초과 5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 조기퇴직연금상당액을 말한다)의 3년분에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

[36 - (준용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개월 수)] × 1/36

2. 단기급여에 있어서는 원급여액의 전액
3. 삭제〈2000.12.30.〉
4. 그 밖의 장기급여에 있어서는 원급여액 전액. 다만, 유족연금일시금 · 유족일시금 및 유족보상금의 경우에는 원급여액의 2분의 1

② 삭제 〈1984.2.25.〉

③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도 없는 경우에는 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는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소속 학교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여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분묘 · 제기(祭器) · 기념비 등을 마련하는 데에 사용하거나, 기념사업 등이나 사망 전의 요양비 충당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9.2.10., 1985.12.31., 2010.1.1., 2013.11.29.]

3. 군인연금제도

□ 군인연금제도도 유족연금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사망보상금과 사망조위금 제도를 운영하는 등 사망관련 다양한 일시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가. 유족연금부가금

□ (수급요건) 20년이상 복무 중 사망한 경우

□ (유족범위)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 퇴직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 다만, 군 복무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은 그러지 아니함)
- 19세 미만인 자녀 또는 19세 이상인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자(퇴직 후 61세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 퇴직 후 60세 당시의 태아는 복무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
-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 제외)
- 손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 제외.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중 출생한 손자녀로 봄)
-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 제외)

□ (급여액) 퇴역연금일시금의 4분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

나.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수급요건)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20년 이상 복무한 자)이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 (유족범위) 유족연금부가금의 유족범위와 동일

□ (급여액) 퇴직 당시의 퇴역연금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4분의 1에 다음의 비율을 곱함.

[36-(제17조제1항에 따라 사망시까지 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개월수)×1/36

다. 사망보상금

□ (수급요건) 군인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함

□ (유족범위와 수급액) 구체적인 대상과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 전사: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577에 상당하는 금액
- 특수직무 순직: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442에 상당하는 금액
- 제1호 및 제2호 외의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망: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234에 상당하는 금액
- 제18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망한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천분의 1,042보다 적은 경우에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천분의 1,042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보아 사망보상금을 산정함 〈개정 2015.3.11.〉
- 외국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견기간 중의 근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사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함[전문개정 2013.3.22.]

라. 사망조위금

□ (수급요건)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조위금을 지급함. 이 경우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되는 군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명의 군인에게 지급

하되, 부양하던 군인이 따로 있으면 그 군인에게 지급함

- 배우자나 자녀가 사망한 경우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외의 직계존속은 부양한 경우로 한정한다)이 사망한 경우

□ (유족범위) 군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사람에게 지급함

□ (지급액)

- 배우자나 자녀가 사망시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
- 군인이 사망시 사망조위금은 해당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의 100분의 1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

□ 한편 군인연금제도도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그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에게 지급하고,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그 사망한 군인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함(군인연금법 제14조)

□ 또한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 동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동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次順位者)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해당 연금을 동순위자 또는 차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25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① 법 제14조에 따라 급여를 받으려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은 특례급여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그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참모총장은 제출받은 내용을 조사·확인한 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재산상속의 순위에 따르되,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이 경우 그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급여를 받을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친족 또는 그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그 급여를 지급하여 군인이었던 사람의 분묘·제기(祭器)·기념비 등을 마련하는 데 사용하게 한다.

④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액과 군인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군인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제2호의 사망보상금은 제외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급여 중 연금인 급여: 사망 당시 원연금액의 3년분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

[36 -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개월 수)] × 1/36

2. 법 제6조에 따른 급여 중 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 및 사망보상금: 원급여액의 2분의 1
3. 법 제6조에 따른 급여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급여: 원급여액 전액

[전문개정 2013.6.28]

4. 시사점

□ 본 장에서는 사망일시금 관련 국내 유사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액 산정방식 개선방안을 논의하는데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국민연금과 유사한 공적연금제도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망관련 일시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살펴봄

□ 국내사례를 살펴본 결과 공무원연금제도, 사학연금제도 그리고 군인연금제도 모두 유족연금 외에 장제부조와 사망에 대한 위로 목적으로 별도의 급여로 일시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음

□ 특히 국민연금의 사망일시금과 같이 유족연금(유족일시금) 등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 급여액 산정에 있어서도 사망한 가입자의 예상연금액에 일정기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단기급여의 경우 전액 또는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

□ 이에 반해 가입자 본인의 평균소득 또는 최종소득월액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국민연금의 사망일시금은 상대적으로 사망일시금 한도액 산정기준이 제한적이어서 유족들의 국민연금 제도 수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됨

Ⅳ. 사망일시금 관련 해외 사례 연구

1. 주요 국가의 사망일시금 운영현황

□ 본 장에서는 사망일시금 관련 해외 유사사례를 검토함으로써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액 산정방식 개선방안을 논의하는데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OECD 주요 국가에서는 공적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별도로 일시금 형태의 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음

□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사망일시금은 국가의 제도에 따라 성격에 차이가 있으나, 크게 장제부조, 보험료 청산, 사망자 위로 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사망일시금에서 장제부조의 성격을 강조하는 국가는 체코, 캐나다, 미국, 노르웨이, 폴란드, 뉴질랜드 등임

○ 사망일시금이 사망한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청산하는 성격을 강조하는 국가는 덴마크,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임

□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과 중복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유족연금을 수급 받지 못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음

○ 사망일시금과 유족연금을 중복하여 지급하는 국가들은 체코, 프랑스, 아일랜드,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등임

– 이 국가들은 대체로 사망일시금이 장제부조의 성격을 강조하는 국가들로, 사망일시금 수급을 위한 일정 기간 가입조건을 요구하는 등

비교적 수급조건이 엄격한 특성을 가짐

○ 유족연금을 수급 받지 못하는 경우에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는 국가는 이탈리아, 일본, 독일 등임

– 이 국가들은 사망일시금이 사망한 가입자의 보험료를 청산하는 성격을 강조하는 국가들로, 유족연금을 수급 받지 못하는 경우 사망일시금을 받으므로 수급자격이 크게 엄격하지 않음

□ 사망일시금의 급여액은 고정된 금액으로 지급되기도 하고, 사망한 가입자의 연금급여나 보험료 기여기간을 고려하기도 하며, 자산조사를 통해 차등 지급되기도 함

○ 체코, 프랑스, 아일랜드, 미국, 포르투갈 등의 국가들은 사망일시금으로 고정된 금액이 지급됨

○ 네덜란드와 캐나다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가 수급 받던 또는 수급받을 연금액을 바탕으로 사망일시금을 산정함

○ 이탈리아, 일본은 사망한 가입자의 보험료 기여기간을 고려하여 사망일시금을 산정하고 있음

○ 자산조사를 통해 사망일시금을 지급하기도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국가는 덴마크, 호주,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임

□ 각 국가별 사망일시금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8〉 주요국 사망일시금 제도 내용

국가	사망일시금 제도 내용
체코	• 사망일시금(Funeral grant): 장례를 치른 부양아동 또는 부양아동의 부모에게 2016년 기준 CZK5,000 지급
덴마크[1)]	• 유족단기급여(dependent survivor's pension): 사망한 가입자가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 수급자나 수급권자였던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 달 동안 지급 • 유족일시금(dependent survivor's allowance): 유족단기급여의 대상자가 아닌 경우, 배우자 또는 3년 이상 동거인에게 자산조사를 통해 2016년 기준 최대 DKK14,268 지급, 수급 대상자 연소득이 DKK234,895 초과하면 감액,

국가	사망일시금 제도 내용
	DKK367,021 초과하면 지급하지 않음.
프랑스	• 사망일시금(death grant): 사망한 가입자가 근로자였거나, 사망자가 사회보장 급여(실업급여, 상병급여, 장애급여 등)를 받았던 경우 신청 가능, 2017년 기준 €3,415 지급
독일[2]	• 보험료상환(refund of contributions): 사망한 가입자가 5년 이상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유족이 사망자의 보험료 기여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유족(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보험료 상환 청구권이 발생하여 환급 가능, 상환금액은 납부한 전체 보험료의 1/2, 추가로 납부한 보험료는 전액 환급
아일랜드	• 유족배우자일시금(widow(er)'s or surviving civil partner's grant): 18세 미만(학생은 2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사망한 가입자의 배우자에게 2017년 기준 €6,000 지급
이탈리아	• 사망일시금(death grant): 유족이 유족연금과 산재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일정 수준 미만의 소득이 있는 경우, 유족에게 월 사회수당(2017년 €448.07)에 사망자가 보험료를 기여한 기간을 곱한 금액 지급
네덜란드	• 사망급여(death benefit): 사망한 가입자의 배우자, 자녀 등에 지급. 근로자 사망 시, 월 급여액의 100%지급(2016년 기준 최대 일 €197), 실업자 사망 시 법정 최저임금(2016년 월 €1,524.60)까지 지급, 장애급여 · 상병급여 · 노령연금 · 유족연금 수급자 사망 시 월 급여액 지급
노르웨이	• 장례일시금(funeral grant): 사망한 가입자가 18세 이상인 경우, 2016년 기준 최대 NOK22,083 지급, 사망한 가입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자산조사 없음.
폴란드	• 장례일시금(funeral grant): 연금 가입자나 수급자 사망 시 유족에게 2016년 기준 최대 PLN4,000 지급
포르투갈	• 사망일시금(death grant): 사망한 가입자의 유족에게 사회급여(social benefit: 2017년 월 €421.32)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캐나다	• 사망일시금(death grant): 사망한 가입자가 일정기간 보험료 기여가 있는 경우 상속인 및 유족에게 지급, 사망한 가입자 예상 월 연금액의 6배 지급, 2017년 기준 최대 $2,500.
미국	• 사망일시금(death benefit): 사망한 가입자가 10년 이상의 기여가 있거나 사망한 시점의 분기로부터 역산한 13분기 중 6분기 이상 보험료를 기여한 경우 배우자나 자녀에게 2017년 기준 $225 지급
호주	• 유족수당(Bereavement allowance): 사망한 가입자와 유족 배우자가 일정한

국가	사망일시금 제도 내용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 자산조사를 통해 유족 배우자에 2주마다 2017년 기준 $814 지급, 최대 14주까지 지급되며 유족배우자가 임신한 경우 지급기간 늘어남.
일본	• 사망일시금(death grant): 사망한 가입자가 최소 3년 이상 보험료 기여하였고, 국민연금 노령연금/장애연금 수급자가 아닌 경우, 유족이 국민연금 유족연금/유족배우자연금을 받지 못하는 유족에게 보험료 기여기간에 따라 2017년 기준 ￥120,000~￥320,000 차등지급
뉴질랜드	• 장례일시금(funeral grant): 사망한 가입자의 사망 전 시점을 기준으로 자산조사를 통해 2016년 기준 최대 $2,008.79 지급

주
1) 덴마크에서는 공적연금인 기초연금과 ATP외의 기업연금(준 공적연금)도 기본적으로 노령연금만 취급하며, 전형적인 유족연금은 제공하지 않음. 모든 층의 연금제도는 기여금 청산 성격의 단기급여 내지 일시금 형태의 유족급여를 제공하는 등 상당히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유족에 대한 실질적 소득보장을 아동수당에 그 역할을 위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이용하 외, 2017: 150)
2) 호주는 1980년대부터 복지재정을 긴축하여, 1997년에는 모든 기존의 유족연금을 폐지하고, 한시적 내지 단기급여 등으로 지급되는 수당제도로 전환됨(이용하 외, 2017: 99)

자료: SSA,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Europe(2016), Asia(2016), America(2015); EU MISSOC 2016, 2017년 기준 자료; 최옥금(2012); 김경아 외(2015); 이용하 외(2017); www.deutsche-rentenversicherung.de; www.welfare.ie; www.seg-social.pt; www.humanservices.gov.au; www.canada.ca; www.ssa.gov; www.inps.it; www.nenkin.go.jp

2. 주요 국가의 사망일시금 산출기준 사례

가. 캐나다

□ 캐나다 소득비례연금(CPP: Canada Pension Plan)에서 가입자가 사망하면 지급되는 유족급여는 유족연금(survivor's pension), 유족아동연금(children's benefit), 사망일시금(death benefit)으로 구분됨

□ 사망일시금의 수급대상, 수급요건 및 급여

○ (수급요건) 사망한 가입자가 10년 또는 18세~사망 전까지 기간의 1/3을 CPP에 기여했어야(최소기여기간 3년) 유족이 사망일시금 수급 가능

○ (유족범위) 사망일시금의 수급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

– 특정 상속인(estate)이 있는 경우 특정 상속인이 수급, 특정 상속인이 없는 경우 다음의 순서대로 지급: 장례비용을 치루는 자 또는 기관, 유족 배우자(법적 동거인), 가까운 친척

○ (급여액) 사망한 가입자의 연금액을 산정(사망한 가입자가 65세가 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매달 받게 되는 연금액을 계산)하여, 월 연금액의 6배를 지급, 2017년 기준 $2,500을 초과하지 못함

〈표 9〉 캐나다 사망일시금 및 사망관련 급여

급여	수급요건	유족범위	급여액
사망 일시금	사망한 가입자의 10년 또는 18세~사망 전까지 기간의 1/3 기여 (최소기여 기간 3년)	상속인, 장례비용을 치루는 자(기관), 유족 배우자, 가까운 친척	사망한 가입자 예상연금액의 월 연금액의 6배를 지급, 2017년 기준 $2,500을 초과하지 못함.
유족 연금		유족 배우자	• 65세 이상 배우자: 대상자가 다른 CPP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 사망한 가입자 예상연금액의 60% • 45세~64세, 또는 45세 미만이고 장애연금 수급자이거나 피부양아동이 있는 경우: 대상자가 다른 CPP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 정액+사망한 가입자 예상연금액의 37.5% • 45세 미만이고 장애연금수급자가 아니거나, 피부양아동이 없는 경우: 대상자가 다른 CPP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 정액+사망한 가입자 예상연금액의 37.5%-매월 유족연금액의 1/120 ※ 35세 미만이고 CPP법 상 장애인이 아니거나, 피부양아동이 없는 경우: 유족배우자가 65세가 되거나 장애인이 되기 전까지 연금 지급하지 않음

급여	수급요건	유족범위	급여액
유족 아동 연금		유족 자녀 (18세 미만, 학생은 18~25세)	2017년 기준 월 $241.05 정액 지급

자료: SSA,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America(2015); 최옥금(2012); 김경아 외(2015); 이용하 외(2017); www.canada.ca

나. 미국

□ 미국 공적연금(OASDI: Old 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에서 가입자가 사망하면 지급되는 유족급여는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a special lump-sum death payment)으로 구분됨

□ 사망일시금의 수급대상, 수급요건 및 급여

○ (수급요건) 사망한 가입자가 10년 이상의 기여가 있거나 사망한 시점의 분기로부터 역산한 13분기 중 6분기 이상 보험료를 기여한 경우

○ (유족범위) 사망한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일반적으로 가입자 사망 시점에 동거 중인 배우자
- 다른 주거지에 거주 중인 경우, 사망한 가입자로 인한 유족연금을 받고 있거나, 유족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배우자
- 위의 요건에 맞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사망한 가입자로 인한 유족연금을 받고 있거나, 유족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자녀

○ (급여액) 2017년 기준 $255

〈표 10〉 미국 사망일시금 및 사망관련 급여

급여	수급요건	유족범위	급여액
사망 일시금	• 사망한 가입자가 10년 이상의 기여가 있거나 사망한 시점의 분기로부터 역산한 13분기 중 6분기 이상 보험료를 기여한 경우	• 사망 시점에 동거 중인 사망한 가입자의 배우자 • 다른 주거지에 거주 중인 경우, 사망한 가입자로 인한 유족연금을 받고 있거나, 유족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배우자 • 위의 요건에 맞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사망한 가입자로 인한 유족연금을 받고 있거나, 유족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자녀	2017년 기준 $255
유족연금	• 사망한 가입자가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 수급자이거나, 10년 이상의 기여가 있거나, 사망 직전 3년 동안 1년에서 1년 반의 기여가 있는 경우	•유족 배우자 -60세 이상 배우자, 장애가 있는 경우 50세 이상 -16세 미만 또는 장애가 있는 자녀 양육 배우자(연령무관) -이혼한 배우자는 10년 이상 혼인기간 있어야 함 • 유족 자녀 -18세 미만(학생은 19세까지) 또는 22세 이전에 장애가 발생하여 장애가 지속된 자녀 • 사망한 가입자의 부모 -62세 이상이면서 사망한 가입자가 절반이상의 부양비를 제공한 경우	• 배우자 - 완전수급연령 이상 배우자: 사망한 가입자 연금액의 100% - 60세 이상 완전수급연령 미만 배우자: 사망한 가입자 연금액의 71.5%~99% - 50~59세의 장애가 있는 배우자: 사망한 가입자 연금액의 71.5% - 16세 미만 자녀를 돌보는 배우자(연령무관): 사망한 가입자 연금액의 75% • 자녀: 기본연금액의 75% • 부모: 사망한 가입자 연금액의 82.5%(2명인 경우 각각 75%) ※ 유족연금액 전체는 사망한 가입자 노령연금액의 100~180%, 장애연금액의 100~150%를 초과하지 못함. ※ 유족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소득에 따라 감액

자료: SSA,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America(2015); 최옥금(2012); 김경아 외(2015); 이용하 외(2017); www.ssa.gov

다. 일본

□ 일본 공적연금(국민연금, 후생연금)에서 가입자가 사망하면 지급되는 유족급여는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국민연금의 자녀가 없는 배우자 유족연금, 국민연금의 사망일시금, 후생연금의 유족연금이 있음. 여기서는 국민연금의 유족관련 급여를 살펴보았음

□ 사망일시금의 수급요건, 유족범위 및 급여

○ (수급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유족에게 지급
- 사망한 가입자가 사망시점에서 제1호 피보험자로 36개월 이상 보험료 기여가 있음
- 사망한 가입자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의 수급자가 아님
- 사망한 가입자에 의해 생계유지인정기준을 충족하는 유족
- 국민연금 유족연금, 유족배우자 연금을 받지 못하는 유족

○ (유족범위) 사망한 가입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의 나열한 순서대로 지급

○ (급여액) 사망한 가입자의 기여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 사망한 가입자 기여기간 3년 이상 15년 미만: ¥120,000
- 사망한 가입자 기여기간 15년 이상 20년 미만: ¥145,000
- 사망한 가입자 기여기간 20년 이상 25년 미만: ¥170,000
- 사망한 가입자 기여기간 25년 이상 30년 미만: ¥220,000
- 사망한 가입자 기여기간 30년 이상 35년 미만: ¥270,000
- 사망한 가입자 기여기간 35년 이상: ¥320,000

〈표 11〉 일본 사망일시금 및 사망관련 급여

급여	수급요건	유족범위	급여액
사망 일시금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지급 – 사망한 가입자가 사망시점에서 제1호 피보험자로 36개월 이상 보험료 기여하였고, – 사망한 가입자가 사망 시점에서 국민연금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 수급자 아님. – 사망한 가입자에 의해 생계유지인정기준을 충족하는 유족 – 국민연금 유족연금, 유족배우자 연금을 받지 못하는 유족	• 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나열한 순서대로 지급)	보험료 기여기간에 따라 ¥120,000~¥320,000 차등지급
국민 연금 유족 연금	• 사망자가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이거나 수급권자인 경우 또는 사망자가 6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20세부터 사망 두 달 전까지 기간의 2/3 이상 보험료 기여가 있었던 국내 거주자 • 사망자가 65세 미만인 경우, 사망한 달의 2개월 전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보험료 기여가 있어야 함. • 유족 배우자와 자녀는 사망자에 의해 생계유지인정기준을 충족해야 함.	• 유족 배우자: 18세 도달 연도가 지나지 않은 자녀(장애가 있는 경우 20세)가 있는 배우자 • 유족 자녀: 18세 도달 연도가 지나지 않은 자녀(장애가 있는 경우 20세)	• 월 ¥779,300 정액 + 부양가족연금 • 부양가족연금은 첫째, 둘째 가녀에 대해 각각 ¥224,300 , 셋째 자녀 이상부터는 각각 ¥ 74,800 ※ 두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 부양가족연금액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가산되며, ¥779,300 정액 + 부양가족연금을 생존하는 자녀수로 나눈 금액을 지급
국민 연금 자녀가 없는 배우자 유족 연금	• 사망자가 25년 이상 보험료 기여가 있고, 사망 시점에서 노령연금 수급자가 아니어야 함. • 자녀가 없는 유족 배우자는 사망자에 의해 생계유지인정기준을 충족해야 함.	• 자녀가 없는 유족 배우자: 60~64세 사이로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	• 사망한 가입자가 받았거나, 예상되는 노령연금액의 75%가 두 달에 한 번 지급됨.

자료: SSA,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Asia(2016); 최옥금(2012); 김경아 외(2015); 이용하 외(2017); www.nenkin.go.jp

라. 이탈리아

□ 이탈리아 공적연금에서는 가입자가 사망하면 지급되는 유족급여에는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death grant)이 있음

□ 사망일시금의 수급요건, 유족범위 및 급여

○ (수급요건) 유족이 유족연금과 산재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일정수준 미만의 소득[9]이 있는 경우

○ (유족범위) 사망자의 배우자와 자녀(손자녀), 부모, 형제자매의 순서대로 지급

○ (급여액) 월 사회수당(2017년 €448.07)에 사망한 가입자가 보험료를 기여한 기간을 곱한 금액

– 사망한 가입자가 보험료를 기여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주 단위로 가입한 기간만큼 산정하여 급여액을 계산함

– 사망일시금의 급여액은 유족의 수에 따라 급여액을 수급 받는 비중에 차이가 있음

• 배우자만 있을 경우 100% 수급, 배우자와 자녀 1명은 각 75%, 25%, 배우자와 자녀 2명은 배우자 60%, 자녀 각 20%, 배우자와 자녀 3명은 배우자 60%, 자녀 각 13.33%로 사망일시금 분배

• 자녀만 있을 경우 자녀 1명은 100%, 2명은 각 50%, 3명은 각 33.33%, 4명은 각 25%, 5명은 각 20% 지급

•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경우, 사망한 가입자의 부모와 형제자매에게 지급, 부모 1명 100%, 2명 각 50%, 형제자매 1명 100%, 2명 각 50%, 3명 각 33.33%, 4명 각 25%, 5명 각 20% 지급

9) 사회수당(social security allowance) 수급요건 미만의 소득을 의미함. 사회수당은 2016~2017년 기준으로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65세 7개월 이상 노인이면서 연소득이 단독가구 €5,824.91, 부부 €11,649.82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지급되는 사회부조적 성격의 수당임.

〈표 12〉 이탈리아 사망일시금 및 사망관련 급여

급여	수급요건	유족범위	급여액
사망 일시금	• 유족이 유족연금과 산재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일정 수준 미만의 소득이 있는 경우	• 우선순위: 배우자와 자녀/손자녀, 부모, 형제자매 • 유족 배우자: 배우자, 이혼한 배우자(재혼 시 수급 불가) • 유족 (손)자녀: 18세 미만(학생 21세까지, 대학생 26세까지), 장애가 있는 경우 연령제한 없음 • 유족 부모: 사망자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던 65세 이상 연금수급자격이 없는 부모 • 유족 형제자매: 사망자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던 연금수급자격이 없는 미혼인 형제자매	• 월 사회수당(2017년 €448.07)에 사망자가 보험료를 기여한 기간을 곱한 금액 ※ 유족의 수에 따라 사망일시금 비중에 차이가 있음
유족 연금	• 다음 중 하나의 요건 충족 시 - 사망자가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 수급자 - 사망자가 최소 15년의 보험료 기여 있는 경우 - 사망자가 사망 전 5년 중 3년의 기여를 포함하여 5년의 보험료 기여가 있는 경우		• 사망자가 수급 받던 연금액 또는 예상연금액을 기준으로 유족에 따라 다르게 지급 • 배우자만: 연금액의 60% • 자녀만: 연금액의 70% • 배우자와 1명 자녀 또는 배우자 없고 자녀 2명: 연금액의 80% • 배우자와 자녀2명 이상 또는 배우자 없고 자녀 3명 이상: 연금액의 100% • 배우자와 자녀/손자녀 이외 유족: 각각 연금액의 15% ※ 수급자의 연소득이 연 최저임금(2016년 €6,524.57)의 3,4,5배인 경우, 유족연금은 25%, 40%, 50% 삭감(18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 있는 수급자는 적용되지 않음)

자료: SSA,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Europe(2016); 최옥금(2012); 김경아 외(2015); 이용하 외(2017); www.inps.it

〈표 13〉 이탈리아 사망일시금의 유족 수에 따른 급여액 비중

적용	배우자	자녀
배우자 단독	100%	-
배우자+(손)자녀1명	75%	25%
배우자+(손)자녀2명	60%	각 20%
배우자+(손)자녀3명	60%	각 13.33%
(손)자녀1명	-	100%
(손)자녀2명	-	각 50%
(손)자녀3명	-	각 33.33%
(손)자녀4명	-	각 25%
(손)자녀5명	-	각 20%

배우자와 (손)자녀가 없는 경우	
적용	부모, 형제자매
부모 1명	100%
부모 2명	각 50%
형제자매 1명	100%
형제자매 2명	각 50%
형제자매 3명	각 33.33%
형제자매 4명	각 25%
형제자매 5명	각 20%

자료: SSA,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Europe(2016); 최옥금(2012); 김경아 외(2015); 이용하 외(2017); www.inps.it

※ 참고

□ 독일의 보험료상환(Beitragserstattung)

○ 독일의 공적연금에서 최소가입기간인 5년을 충족하지 못하고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한 경우, 사망한 가입자가 5년 이상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독일 공적연금에 임의가입이 가능하지 않은 국가로 이주하는 경우, 가입자가 기여하였던 보험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보험료 상환금액은 당연가입자와 임의가입자의 경우에는 납부한 보험료의 1/2, 추가로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납부한 전체 보험료임

□ 영국의 유족관련 급여

○ 영국의 공적연금(State Pension)에서는 가입자가 사망하면 지급되는 유족급여에는 배우자유족수당(widowed parent’ s allowance)와 유족수당(bereavement allowance), 사망일시금(bereavement payment)가 있었음

– 사망일시금은 사망한 가입자가 노령연금의 수급조건을 충족했거나 노령연금의 수급자였던 경우, 연금수급연령 미만 이거나 국가연금의 수급자격이 없는 유족 배우자에게 £2,000을 지급하였음

○ 그러나 2017년 4월 6일 이후에 사망자부터는 위의 세 가지의 급여가 유족지원급여(bereavement support payment)로 통합되었음

– 유족지원급여는 사망한 가입자가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에 25주 이상 기여한 경우, 연금수급연령 미만인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연금형태의 급여임.

– 즉 영국에서 사망일시금 형태의 급여는 폐지되었음

3. 시사점

□ 지금까지 본 장에서는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과 별도로 일시금 형태의 급여제도 운영하는 해외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았음

□ 해외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보험료청산 및 장제부조와 위로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망(반환)일시금을 운영하는 국가가 확인됨

○ 하지만 각 국가의 연금제도의 취지 및 장제비 등 물가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해외 국가의 사망일시금 지급액과 국민연금의 사망일시금액을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 국가들의 사망일시금의 산정방식에 초점을 두고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함

□ 해외사례를 검토한 결과 일부 국가들은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때 사망한 가입자의 소득뿐만 아니라 예상연금급여, 기여기간, 자산조사를 반영하여 일시금을 산정하고 있음

○ 예를 들면 유족연금을 수급받지 못할 때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는 이탈리아와 일본의 경우 기여연수와 사회수당을 곱하여 지급(예: 이탈리아)하거나, 납부기간에 따라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예: 일본)도 있음

○ 일본의 경우 유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사망일시금으로 지급하더라도 기여연수(납부기간)를 고려함으로써 가입자의 가입이력특성을 반영한 차별적인 사망일시금 급여액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 이탈리아도 사회수당에 가입월수를 반영하여 사망일시금을 산정함으로써 가입자의 기여기간을 반영하여 일시금을 산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민연금의 사망일시금은 가입자의 사망에 대한 장제부조 및 위로 목적으로 운영되어 해외 국가의 사망일시금과 그 취지가 비슷하지만 해외 국가에 비해 지급액 산정기준이 제한적이라고 판단됨

○ 따라서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개선안 마련시 가입자의 가입이력을 반영하거나 가입자 개인의 소득수준이 아닌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을 반영함으로써 사망일시금을 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Ⅴ. 논의 및 결론

1. 사망일시금 산정기준 개선안 논의

□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 중 사망일시금의 연혁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사망일시금과 유사한 국내 및 해외사례를 검토함

□ 특히 현재 적용 중인 사망일시금의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개선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국내외 사례검토를 통해 사망일시금 산정기준의 개선방안 논의를 수행함

□ 먼저 사망일시금의 지급기준은 사망일시금의 목적과 사망관련 급여(유족연금, 반환일시금)와의 관계와 사회보험 급여의 성격을 고려하여 논의하는 것이 필요함

○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사망에 의해 유족들의 생활을 보존하기 위해서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가입기간 충족 등에 따라 보험료 청산의 반환일시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즉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이 지급되지 못하는 경우에 유가족을 위로하고 장제부조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로 수급자의 급여혜택을 늘이기 위해 도입된 것임
- 하지만 사망일시금의 지급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1)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되 (2) 지급한도액을 추가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보험료청산과 장제부조의 목적이 혼용되어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사망일시금 지급액 산정기준을 논의함에 있어 보험료 청산 목적이 있는 반환일시금 제도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사망일시금의 제도 적용의 목적과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국민연금과 같이 사회보험의 급여는 소득재분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급부와 반대급부가 일치하지는 않음(조성혜, 2011)

– 따라서 유족들이 수급하는 사망일시금이 사망한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지나치게 적어 급부와 반대급부의 비례가 맞지 않는다고 하여 사망일시금의 기준적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소요되는 장제비에 비해 낮은 사망일시금 수준,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과의 관계에서의 사망일시금의 형평성문제, 유족연금의 수급요건에 해당이 되는 유족이 없더라도 보험료 청산성격의 일시금을 지급하는 국내 특수직역연금제도의 운영사례를 고려해볼 때, 현재 국민연금의 사망일시금 산출기준은 유족들이 쉽게 수용하지 못할 수 있음

○ 사망일시금을 수급하는 유족들은 연령이나 혼인관계 등이 맞지 않아 유족의 범위에 해당되지 못하지만 여전히 가입자의 유족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사망일시금도 가입자의 보험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가입자와의 보험관계 청산이라는 측면에서 '사망' 사유로 인한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사망일시금 한도액 산정방식은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후 얼마 되지 않아 사망한 경우 또는 장기간동안 성실히 납부하였지만 평균적인 소득월액 낮은 경우 연금기여에 대한 혜택이 감소될 수 있음

– 이 경우 사망일시금을 수급하는 유족들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유족들의 불만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가입자의 제도수용성 및 사망일시금 지급취지인 장제부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망일시금 지급 한도액을 상향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10]

□ 다음으로 국내·외 사례를 살펴본 결과 현재 사망일시금 지급한도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가입중 결정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 중 마지막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적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개선할 수 있음

○ 먼저 사망일시금 지급한도액을 선정할 경우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이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한도액을 정하거나 총 납부보험료를 기준으로 일시금 한도액을 정할 수 있음.

- 국내 공무원연금제도, 사립학교교직원제도 그리고 군인연금제도는 모두 유족이 없을 경우 별도의 일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사망자가 장기급여 수급권자에 해당될 경우 예상연금액에 일정기간을 곱하고 단기급여 수급권자일 경우에는 납부금액 전액 또는 1/2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또한 공무원연금제도의 경우 유족에 대한 장제부조와 위로의 목적으로 유족에게 연금이나 일시금을 지급하는 것 이외에 추가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가입기간을 고려하여 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음 (예: 10년 이상 가입기간을 보유한 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부가금 지급)
- 장제부조적 성격의 일시금을 지급하는 캐나다의 경우 사망한 가입자가 10년 또는 사망전까지 기간의 1/3을(최소기여기간 3년) 기여했을 때 월 연금액의 6배를 지급함

10) 물론 국민연금의 사망일시금처럼 사망당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일시금을 지급하는 사례로 공무원연금의 사망조위금이 있으나 이것은 유족연금 이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임

○ 다음으로 사망일시금 한도액 기준으로 '가입자 사망당시의 국민연금 A값' 또는 '가입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액을 지급하거나 예상연금액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에 대해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국내 공무원연금제도의 경우 전체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일시금을 산정하고 있고 해외의 경우 사망일시금을 산정함에 있어 사회수당이나 가입기간 사망자가 받을 예상연금액에 기초하여 사망일시금을 산정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보험료 청산의 성격을 강조하여 총 납부보험료 가운데 사망한 가입자의 기여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예: 독일)

〈표 14〉 사망일시금 관련 개선방안

구분	내용	고려사항
[1안]	사망일시금의 한도액을 국민연금 'A'값과 가입자의 가입중 평균소득월액 'B'값 중 높은 금액의 4배로 지급	- 저소득가입자의 경우 급여혜택이 증가할 가능성 높음 - 고소득가입자의 경우 급여혜택이 감소될 가능성 높음
[2안]	납부한 총 보험료 가운데 본인 기여금 지급	- 보험료청산의 의미가 강함 - 반환일시금과의 관계설정 필요
[3안]	가. 가입기간 10년 미만: 총납부보험료의 40% 나.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총납부보험료의 50% 다. 가입기간 20년 이상: 총납부보험료의 60%	- 일정 가입기간에 따른 급여액 지급 및 상한액 설정함으로써 수용성 제고 -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과의 관계설정 필요
[4안]	가.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 국민연금 'A'값과 가입자의 가입중 평균소득월액 'B'값 중 높은 금액의 4배로 지급 나.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자: 예상연금액×납부기간 또는 일정기간 분의 연금 지급 다. 수급권 취득 후 일정기간 경과(3년 등) 이전 수급자 사망한 자: 총납부보험료×1/4	- 반환일시금과의 관계설정 필요 - 사망일시금 유족의 범위 강화 필요

□ 하지만 사망일시금 지급기준을 개선하기에 앞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음

○ 우선 사망일시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사망일시금을 가입자의 납부보험료 청산에 초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유족에 대한 장제부조 및 위로의 목적에 초점을 둘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실제로 선행연구들은 사망일시금이 장제부조 및 위로의 목적을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사망'에 의한 반환일시금과 혼재되어 적용되는 측면이 있어 이를 장기적으로 통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음(조재문, 2002; 최옥금, 2011)

□ 또한 사망일시금의 지급수준을 상향할 경우 유족의 범위를 개선하는 방안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해외사례의 경우 보상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일시금을 지급하는 국가(영국, 캐나다, 덴마크, 호주 등)들의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에게만 지급하고 있고 국내 공적연금의 경우에도 법령에서 정한 유족이 없을 경우 직계존비속에게만 일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더욱이 현재 국민연금의 사망일시금은 생계유지가 입증되는 경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음.

– 하지만 현재 가족구조가 핵가족화 되어감에 따라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생계유지요건에 충족되어 사망일시금을 수급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됨(최옥금, 2011)

○ 따라서 사망일시금의 지급한도는 상향시키되 사망일시금을 수급하는 유족의 범위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2. 결 론

□ 본 연구는 사망일시금의 지급액 산출기준의 적정성을 논의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됨

□ 국민연금의 사망일시금은 장제부조 및 위로의 목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나 현재 적용되고 있는 지급한도액 기준이 장제부조의 목적 달성 및 유족에게 급여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및 해외 유사 사례를 토대로 사망일시금 지급한도액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고려 가능한 대안을 제시한 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음

□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망일시금 지급기준 개선방안은 국민연금의 제도 내실화 및 재정 등 환경적 요인을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 제시한 대안과 관련하여 재정추계,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 통합에 따른 추가적인 제도개선사항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으며, 향후 이와 관련된 논의 및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국민연금공단(2016). 2016 국민연금통계연보,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2017). 2017년 직무교재-급여관리, 국민연금공단

김경아・유호선・김헌수・성혜영(2015). 유족연금제도의 국제비교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조사보고서 2014-01.

신경혜・권혁진・송창길(2016). 국민연금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 추계 2016. 국민연금연구원 연구보고서 2016-10.

유호선・홍성우(2009). 사망관련 급여제도 개선방안 검토. 국민연금연구원 정책보고서 2009-03.

이용하 외(2017). 우리나라 유족보장의 개선방안 연구 – 유족기초연금의 도입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연구원 정책보고서 2016.01.

이필도・박복순・김수봉・김미혜(2007), 장의비 소요비용 실태조사 연구,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조성혜(2011), 사회보험법상 중복급여의 조정, 노동법학, 37, 123-163

조재문(2002),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최옥금(2011). 국민연금의 일시금제도 개선방안 및 운영방향 검토. 국민연금연구원 정책보고서 2011-10.

EU MISSOC

SSA,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Europe(2016), Asia(2016), America(2015);

www.canada.ca

www.deutsche-rentenversicherung.de

www.humanservices.gov.au

www.inps.it
www.nenkin.go.jp
www.seg-social.pt
www.ssa.gov
www.welfare.ie

국민연금연구원 발간보고서 목록

2016년도

연구보고서 2016-01	북한 노후소득보장 제도 및 실태 연구	민기채, 조성은 외	2017.1.
연구보고서 2016-02	베이비붐 세대의 부양부담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송현주, 임란	2017.1.
연구보고서 2016-03	가입기간별 가입자 추계 2016	박성민	2017.3.
연구보고서 2016-04	국민연금의 소득계층별 수급부담 통계모형	최기홍, 신승희 외	2017.3.
연구보고서 2016-05	국민연금의 일반균형 세대간회계 연구	최기홍, 김형수	2017.3.
연구보고서 2016-06	국민연금 신규수급자의 연금액 추계 2016	한정림, 신승희	2017.3.
연구보고서 2016-07	국민연금 보험료수입 추계 2016	한정림, 김형수 외	2017.3.
연구보고서 2016-08	국민연금 가입자 추계 2016	김형수	2017.3.
연구보고서 2016-09	해외주식운용 장기성과 개선을 위한 포트폴리오 연구(비공개)	강대일, 황정욱	2017.3.
연구보고서 2016-10	국민연금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 추계 2016	신경혜, 송창길 외	2017.3.
연구보고서 2016-11	국민연금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 추계 2016	신경혜, 송창길	2017.3.
연구보고서 2016-12	공적연금 연계모형 구축과 기초율 산정 연구 2016	박성민, 송창길 외	2017.3.
연구보고서 2016-13	장기 거시경제 전망모형 연구	성명기	2017.3.
연구보고서 2016-14	국민연금의 장기 거시경제 영향 연구	성명기, 홍기석	2017.3.
연구보고서 2016-15	자산군 프로파일 변경에 기반한 전략적 자산배분에 관한 연구	최영민, 손경우 외	2017.3.

연구보고서 2016-16	팩터 기반 인덱스의 전술적 활용 방안-해외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손경우, 최영민 외	2017.3.
연구보고서 2016-17	국민연금 액티브운용 관리 체계에 관한 연구: 액티브 위험 한도 설정 체계를 중심으로(비공개)	강대일, 이지연 외	2017.4.
연구보고서 2016-18	독자적 투자전략과 펀드성과의 관계 분석	이지연	2017.3.
정책보고서 2016-01	우리나라 유족보장의 개선방안연구 -유족기초연금의 도입을 중심으로-	이용하, 최인덕 외	2017.1.
정책보고서 2016-02	성직자 노후보장실태와 국민연금 가입 제고 방안	유희원, 한신실	2017.1.
정책보고서 2016-03	기초연금 운영국가의 급여수준 검토 및 시사점	최옥금, 한신실	2017.1.
정책보고서 2016-04	국민연금 크레딧제도 개선방안	유호선, 유현경	2017.1.
정책보고서 2016-05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 제고방안 연구	정인영, 유희원 외	2017.1.
정책보고서 2016-06	은퇴 예정자를 위한 노후준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성혜영, 김아람	2017.3.
정책보고서 2016-07	지역가입자 소득수준 및 규모 전망 연구	윤병욱, 송창길 외	2017.3.
정책보고서 2016-08	국내채권 기대수익률 산출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이상헌	2017.3.
정책보고서 2016-09	노인기초보장제도의 관리운영방식에 관한 국제비교	이용하, 최옥금 외	2017.4.
정책보고서 2016-10	2015년 국민연금기금의 성과평가	강대일, 이지연 외	2017.3.
정책보고서 2016-11	해외투자시 동태적 환헤징 전략에 관한 연구	주상철	2017.3.
정책보고서 2016-12	해외 주요 연금의 기금운용부문 개혁 사례와 시사점	박태영, 이정화	2017.3.
정책보고서 2016-13	국민연금의 직접운용과 위탁운용 비교에 관한 연구(비공개)	정문경, 태엄철 외	2017.3.
조사보고서 2016-01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제6차(2015년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IS) 기초분석보고서-	송현주, 임란 외	2017.1.

조사보고서 2016-02	재정목표 및 재정지표의 국제비교 연구	국민연금 연구원 연금제도팀	2017.3.
연차보고서 2016-01	2017년 국민연금기금의 자산배분: ALM분석을 중심으로(비공개)	최영민, 박태영 외	2017.3.
용역보고서 2016-01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위한 거시경제변수 전망	김성태, 권규호 외	2017.5.
요약보고서 2016-01	2016년도 연구분야별 주요 연구결과 요약집		2017.6.
워킹페이퍼 2016-01	국민연금 국내주식의 위탁규모 증가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	정문경, 이정화	2017.4.
연구자료 2016-01	2016년 상반기 국민연금 기금운용성과 평가보고서	황정욱, 태엄철	2017.4.
프로젝트 2016-01	해외 연기금의 책임투자관련 주요 현황	이정화, 원상희	2017.3.
프로젝트 2016-02	통일 대비 효율적인 연금통합 방안 연구	이용하, 이철수 외	2017.4.
프로젝트 2016-03	2016년 기초연금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	최옥금, 이상붕 외	2017.4.
프로젝트 2016-04	국민연금과 국민경제 연구	성명기 편	2017.5.
단기과제 2016-01	단기연구과제1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역할정립 및 연계방안, 국민연금법과 장애인복지법의 장애판정기준 연계방안)	오욱찬, 이재은	2017.4
단기과제 2016-02	단기연구과제2 (공단 내・외부 데이터를 융합한 가치 창출 및 업무 활용방안,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민연금 부정수급 예측모형 개발 방안)	유호선, 왕승현, 이은영	2017.4
단기과제 2016-03	단기연구과제3 (60세 이후 연령대별 필요 생활자금 조사, 노후준비 교육의 체계 및 주제 분류, 내연금 사이트 종합재무설계 내용 개선)	성혜영, 김아람	2017.4

2015년도

연구보고서 2015-01	자녀세대의 부모에 대한 소득이전과 노후준비	송현주, 임란	2016.3.

연구보고서 2015-02	결측치 대체방법 연구 -국민노후보장패널 소득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박주완, 김호진	2016.3.
연구보고서 2015-03	중기 거시경제 전망모형 연구	성명기	2016.3.
연구보고서 2015-04	국민연금이 소비와 저축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성명기, 이준상	2016.3.
연구보고서 2015-05	미국의 경기국면의 예측과 투자전략	손경우, 최영민	2016.3.
연구보고서 2015-06	자산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GIPS®기준의 국민연금 성과평가 적용에 관한 연구	정문경, 이지연 외	2016.3.
연구보고서 2015-07	노인가구의 경제적 가치 수준과 빈곤완화 효과 분석 -한국, 미국, 영국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이상붕, 이은영 외	2016.3.
연구보고서 2015-08	국민연금가입자 중기전망방법 개선 연구	박성민, 송창길	2016.3.
연구보고서 2015-09	기초연금 재정시뮬레이션	신경혜, 김형수	2016.3.
연구보고서 2015-10	국민연금 보험료수입 및 신규수급자의 기본연금액 추계를 위한 소득지수 개선방안 연구	한정림, 송창길	2016.3.
연구보고서 2015-11	사망률 전망 모형의 선택과 전망된 사망률에 기초한 국민연금의 수익비와 재정효과 분석	최장훈, 권미애 외	2016.3.
연구보고서 2015-12	출산율과 사망률 변경에 따른 인구전망	최장훈, 김형수	2016.3.
연구보고서 2015-13	미시모의실험 모형에 의한 국민연금의 세대간·세대내 소득재분배 측정	최기홍, 신승희	2016.3.
연구보고서 2015-14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정책의 평가: OG모형 파레토개선 접근법	최기홍, 신성휘 외	2016.3.
연구보고서 2015-15	재무곤경위험을 고려한 해외주식 포트폴리오 구성전략에 관한 연구 -미국시장을 중심으로	강대일, 조재호 외	2016.3.
연구보고서 2015-16	외부 위탁운용 매니저의 군집투자 행태(herding)와 유인에 관한 연구	이지연, 태엄철	2016.3.
연구보고서 2015-17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전망방법 개선 연구	한정림, 허재준 외	2016.5.
정책보고서 2015-01	기초연금 급여적정수준 유지를 위한 연동방법 검토	최옥금, 한신실 외	2016.3.
정책보고서 2015-02	고령화의 진전과 공사적 연금자산 성장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박태영, 원상희	2016.3.

정책보고서 2015-03	국민연금기금의 통화 오버레이 전략에 관한 연구	주상철, 노상윤	2016.3.
정책보고서 2015-04	국민연금 부동산투자 다각화 방안에 관한 연구	노상윤, 주상철 외	2016.3.
정책보고서 2015-05	CVaR를 사용한 전략적 자산 배분에 관한 연구	최영민, 손경우 외	2016.3.
정책보고서 2015-06	국민연금 국내주식 위탁운용 관리개선에 관한 연구	정문경, 황정욱 외	2016.3.
정책보고서 2015-07	2014년도 국민연금기금의 성과평가	강대일, 정문경 외	2016.3.
정책보고서 2015-08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증가요인분석과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하, 김원섭 외	2016.3.
정책보고서 2015-09	공적연금제도와 고령자 고용정책의 보완적 발전 방안	정인영, 민기채 외	2016.3.
정책보고서 2015-10	생애주기별 소비 및 저축실태 분석에 따른 노후준비 전략	성혜영, 이은영	2016.3.
정책보고서 2015-11	국민연금 목표초과 수익률 산출체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강대일, 정문경 외	2016.3.
정책보고서 2015-12	정년제와 공적연금제도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김헌수, 유현경	2016.5.
조사보고서 2015-01	중·고령자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대처 전략 -국민노후보장패널 5차 부가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송현주, 박주완 외	2016.3.
연차보고서 2015-01	2016년 국민연금기금의 자산배분: ALM분석을 중심으로	최영민, 박태영 외	2016.3.
연차보고서 2015-02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6-2020)	박성민, 신경혜 외	2016.5.
용역보고서 2015-01	싱가포르 공적연금 기금운용의 시사점	이준희	2016.5.
용역보고서 2015-02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	주은선, 김진석 외	2016.5.
용역보고서 2015-03	기금규모 증가에 따른 국민연금의 시장영향력 분석	이재현	2016.5.
워킹페이퍼 2015-01	가입자 및 수급자 추계의 기초율 추정	김진미	2016.3.
연구자료 2015-01	2015년 상반기 국민연금 기금운용성과 평가 보고서	황정욱, 태엄철	2016.5.

프로젝트 2015-01	해외 연기금의 기금관련 주요 현황	이정화, 원상희	2016.3.
프로젝트 2015-02	주요 동유럽 체제전환 국가의 경제사회적 성과 비교 - 동독, 체코, 헝가리, 폴란드를 중심으로	이용하, 민기채 외	2016.5.
프로젝트 2015-03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의 종합적 고찰	이용하, 김원섭 외	2016.5.

2014년도

연구보고서 2014-01	가입기간별 기초율을 적용한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Ⅱ)	박성민	2014.12
연구보고서 2014-02	공적연금 가입자 추계 방법 연구	박주완, 한정림	2014.12
연구보고서 2014-03	국민연금 이력자료에 의한 계층별 특성치의 통계적 추정	최기홍, 신승희	2014.12
연구보고서 2014-04	국민연금제도변수 중기 전망 연구	성명기, 최장훈	2014.12
연구보고서 2014-05	국민연금과 거시경제 모의실험모형 연구	성명기	2014.12
연구보고서 2014-06	국민연금 포트폴리오의 최적공분산 추정에 관한 연구	최영민	2014.12
연구보고서 2014-07	경제적불평등과 노후최저보장제도의 관계 및 시사점 -OECD국가를 중심으로	이상붕, 서대석	2015.3
연구보고서 2014-08	국민연금 기타 대체투자의 수익과 위험에 관한 연구(비공개)	정문경, 최장훈 외	2015.3
연구보고서 2014-09	국민연금의 재정평가 지표에 대한 비교연구	최기홍, 김형수	2015.3
연구보고서 2014-10	남부유럽 연금개혁 연구	권혁창, 정창률 외	2015.3
연구보고서 2014-11	독거노인의 생애노동이력과 이전소득 효과 연구	송현주, 성혜영 외	2015.3
연구보고서 2014-12	부도위험을 고려한 주식 포트폴리오 구성과 거래전략에 관한연구	강대일, 조재호 외	2015.3
연구보고서 2014-13	고연령 사망률 추정과 미래 사망률 전망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최장훈, 김형수	2015.3

연구보고서 2014-14	시간변동성 성과평가지표를 이용한 국민연금기금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정문경, 황정욱 외	2015.3
연구보고서 2014-15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연금소득 추정	한정림, 박주완	2015.3
연구보고서 2014-16	유족연금 및 중복급여 산출방법 개선방안	신경혜, 신승희	2015.3
연구보고서 2014-17	환경, 사회, 지배구조요인(ESG)을 이용한 투자 전략에 관한 연구	손경우, 주상철	2015.3
연구보고서 2014-18	ALM을 사용한 기금운용 통합관리방안(Ⅱ)(비공개)	강대일, 김배호 외	2015.3
정책보고서 2014-01	국민연금 국내부동산 벤치마크 사용자지수 산출에 관한 연구	노상윤, 민성훈 외	2014.12
정책보고서 2014-02	국민연금기금의 액티브 외화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주상철, 손경우	2014.12
정책보고서 2014-03	공적연기금 리스크 관리체계의 국제비교	최영민, 박태영 외	2014.12
정책보고서 2014-04	국민연금 국내 인프라투자 벤치마크 지수 개선방안 연구	노상윤, 유승동 외	2014.12
정책보고서 2014-05	정년연장이 국민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헌수, 김원식 외	2015.3
정책보고서 2014-06	2013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 (공개)	강대일, 정문경 외	2015.3
정책보고서 2014-07	2013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 (비공개)	강대일, 정문경 외	2015.3
정책보고서 2014-08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 개선방안	박태영, 이정화	2015.3
정책보고서 2014-09	국민연금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지역가입자 관리개선 방안연구	정인영, 김경아 외	2015.3
정책보고서 2014-10	노인기초보장제도와 국민연금 간 역할분담관계에 관한연구	이용하, 최옥금 외	2015.3
정책보고서 2014-11	단시간 근로자 실태와 국민연금 적용방안	최옥금, 조영은	2015.3
정책보고서 2014-12	연금교육 활성화를 통한 노후준비 수준 제고 방안	성혜영, 송현주 외	2015.3
정책보고서 2014-13	우리나라 노년층의 노후소득격차 발생요인 분석과 지원방안연구	김경아, 김헌수 외	2015.3

정책보고서 2014-14	우리나라 중 · 고령자들의 노동시장 특성과 국민연금제도 가입확대방안	유호선, 박주완 외	2015.3
조사보고서 2014-01	유족연금제도의 국제비교 연구	유호선, 김경아 외	2015.3
조사보고서 2014-02	장애인 소득보장체계의 국제비교연구	이용하, 정인영 외	2015.3
조사보고서 2014-03	중 · 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실태 -제5차(2013년도)국민노후보장패널(KReIS)분석보고서-	송현주, 이은영 외	2015.3
연차보고서 2014-01	2015년 국민연금기금의 자산배분 -ALM분석을 중심으로(비공개)	기금정책팀	2014.12
연차보고서 2014-02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5~2019)	박성민, 신경혜 외	2015.3
용역보고서 2014-01	최적사회보장과 창조경제 -국민연금기금의 효율적 투자방안을 중심으로	임양택	2014.12
용역보고서 2014-02	1. 독일연금통합의 전개과정 평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2. 북한사회보장과 연금제도 운영실태 분석 (신한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원섭 이철수 외	2015.3
용역보고서 2014-03	국민연금 사각지대 개선방안 연구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재진, 이정우 외	2015.3
용역보고서 2014-04	반납 · 추납 보험료 대여사업 사업타당성 분석 및 수요도 조사(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전승훈	2015.3
용역보고서 2014-05	일반국민과 공무원의 노후보장체계 국제비교 연구	김상호, 배준호 외	2015.6
워킹페이퍼 2014-01	연간 거시경제계량모형 개발	박무환	2015.3
연구자료 2014-01	2014년 상반기 국민연금 기금운용성과 평가보고서	황정욱, 태엄철	2015.3
프로젝트 2014-01	OECD 주요 국가의 기초보장 급여적정성 평가방법	이용하, 최옥금 외	2015.3
단기과제 2014-01	단기과제 Ⅰ	성혜영, 송현주 외	2015.6
단기과제 2014-02	단기과제 Ⅱ	이용하, 유호선 외	2015.6

단기과제 2017-01
단기 연구과제 1

2018년 8월 인쇄
2018년 8월 발행

발행인 : 김 성 주
편집인 : 이 용 하
발행처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만성동)
TEL : 063-713-6778 / FAX : 063-715-6564

ISBN 978-89-6338-421-4